

2025년 자활사업안내 Ⅱ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 I 권 | 2025 자활사업안내

제 II 권 | **2025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제 III 권 | 2025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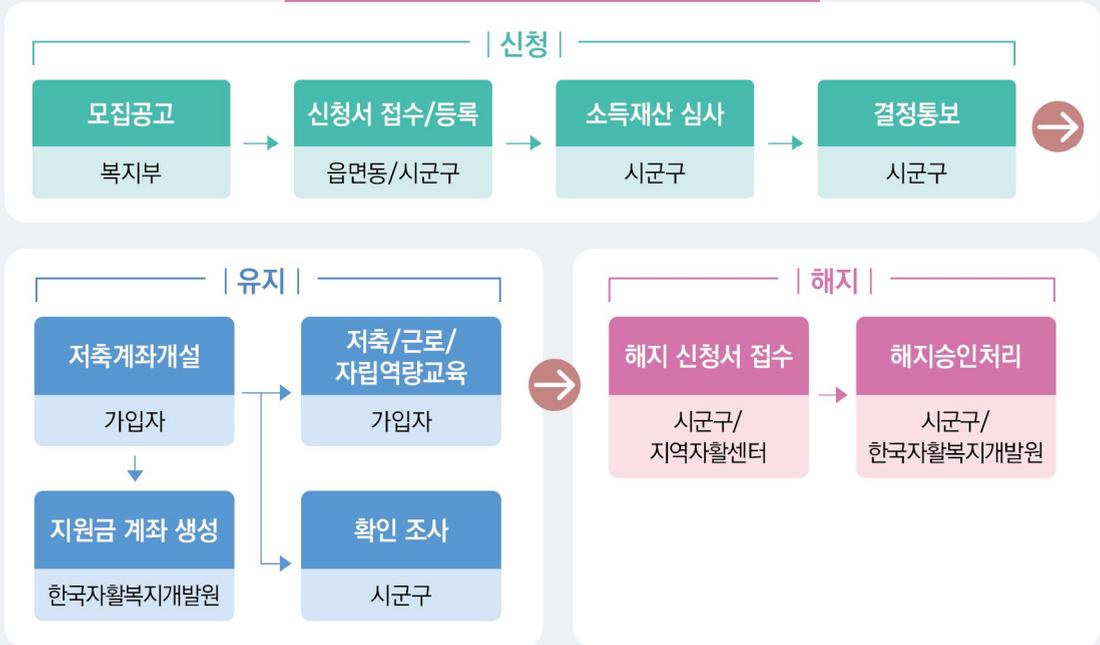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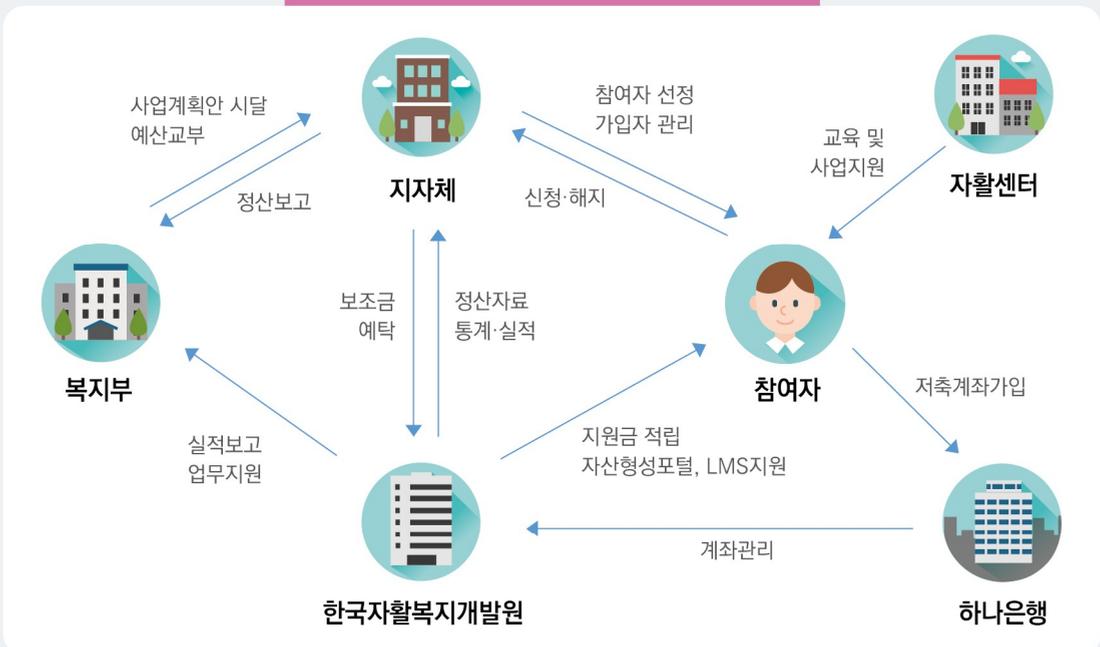


# 알 아 두 기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추진 체계



## 용어정의

용어	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보장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장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보장받는 가구
보장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보장받는 가구의 구성원
신청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자
가입자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을 가입한 자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근로소득이란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이며,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

용어	내용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중 근로관련 급여 중 하나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	산재보험급여 중 근로와 관련된 급여 중 하나로 요양 2년 후 질병 미치유 (중증요양)로 미근로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앙자활자금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일부로 조성된 자금 * (23년) 중앙자산키움펀드 → (24년) 중앙자활자금으로 명칭변경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적립중지	사업 참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신청하여 해당 기간만큼 저축을 중지하는 제도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등에 의한 6개월 적립중지 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휴직에 의한 2년 적립중지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정보·적립·해지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자립역량교육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금융자산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및 재무 교육
사업지원	가입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자립역량향상을 위해 고용, 복지, 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본인적금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가 본인 적금을 납입하는 계좌

용어	내용
지원금적립계좌	본인 저축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는 계좌
예탁계좌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한 지원금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한 계좌
중도 인출	통장 가입 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 저축액에 매칭하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탈수급장려금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되는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되는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사업단 유형에 따라 적립기준 상이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과정, 인턴·근로유지형 제외)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지원)되는 추가지원금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미지급
유지기준-소득하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유지를 위한 월 소득 최소 금액
유지기준-소득상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유지를 위한 월 소득 최대 금액
해지	가입자로부터 지급, 일부지급, 환수 사유 발생 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개발원, 은행 등에서 처리하는 업무
지급	해지유형 중 하나로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인저축액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일부지급	해지유형 중 하나로 지원요건을 일부 충족하여 정부지원금을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
환수	해지유형 중 하나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장려금등 정부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저축액만 수령가능한 경우

용 어	내 용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갱신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적정성 확인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 * 이하 LMS	자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
의료급여 특례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자활급여 특례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 2025년 주요 개정(안)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1	14	<p><b>  중복 참여 불가 사업</b></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사업구분</th> <th>시행기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td> <td>중소벤처기업부</td> </tr> <tr> <td>...</td> <td>(중략)</td> <td>(중략)</td> </tr> <tr> <td>40</td> <td>창원 청년 내일통장</td> <td>경상남도 창원특례시</td> </tr> </tbody> </table> <p>* 이 외에도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참여 불가</p>	번호	사업구분	시행기관	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중략)	(중략)	40	창원 청년 내일통장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p><b>  중복 참여 불가 사업</b></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사업구분</th> <th>시행기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td> <td>중소벤처기업부</td> </tr> <tr> <td>...</td> <td>(중략)</td> <td>(중략)</td> </tr> <tr> <td>40</td> <td>창원 청년 내일통장</td> <td>경상남도 창원특례시</td> </tr> <tr> <td><b>41</b></td> <td><b>청년종자통장</b></td> <td><b>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b></td> </tr> </tbody> </table> <p>* 이 외에도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참여 불가</p>	번호	사업구분	시행기관	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중략)	(중략)	40	창원 청년 내일통장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b>41</b>	<b>청년종자통장</b>	<b>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b>
번호	사업구분	시행기관																												
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중략)	(중략)																												
40	창원 청년 내일통장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번호	사업구분	시행기관																												
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중략)	(중략)																												
40	창원 청년 내일통장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b>41</b>	<b>청년종자통장</b>	<b>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b>																												
2	15	<p><b>4 적립중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적립중지(6개월)</li> </ul> <p>(중략)</p> <p>»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저축 가능(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제외)</li> <li>*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19.6월 이후부터 적용),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입대 및 출산·육아 등 2년 적립 중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사업 안내 참조</li> </ul> <p>&lt;신 설&gt;</p>	<p><b>4 적립중지</b></p> <p><b>1 일반 적립중지(6개월)</b></p> <p>(좌 등)</p> <p>»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저축 가능(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제외)</li> <li>*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입대 및 출산·육아 등 2년 적립 중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사업 안내 참조</li> </ul> <p><b>2 군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li> <li>*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li> <li>** 1회에 한해 신청 및 기간 연장 가능(총 2년 범위 내)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li> </ul>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해당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적금 납입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최대 2년까지)</li> <li>* 해당 사유 발생 시 서류 증빙 필요(입영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li> </ul>
		<p>&lt;신 설&gt;</p>	<p>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 적립중지(2년) 선택사항</p> <p>① 적립중지(2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li> <li>-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li> <li>- '적립중지(2년)' 기간 중 가입자 요청으로 적립중지취소 할 수 있지만 이후 재요청 및 잔여기간 사용 불가</li> </ul> <p>②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적금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희망으로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li> <li>※ 단,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저축 유지하는 대상자는 매월 본인 저축 필수(본인 저축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대상이 되며, 적립중지(2년) 소급적용 불가)</li> </ul>
		<p><b>적립중지 시 필수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가 직접 제출(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 하거나 자선형성포털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e음 미등록 시 적립중지(해제) 설정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 절대 불가</li> <li>- 적립중지 기간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하며 통장만기일자가 연장되지는 않음</li> <li>* 1월 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li> </ul> </li> </ul>	<p><b>적립중지 시 필수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가 직접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적립중지(신청/철회/취소) 신청서를 반드시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신청/철회/취소)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e음 미등록 시 적립중지(해제) 설정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 절대 불가</li> <li>- 적립중지 기간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하며 통장만기일자가 연장되지는 않음</li> <li>* 1월 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li> </ul> </li> </ul>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적립중지 시 필수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적립중지 신청 후 가입자 의사에 따라 적립중지를 철회/취소하는 경우, 가입자는 적립중지 철회/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드시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중지철회) 적립중지를 신청하였으나 적립중지 개시일 전에 철회하는 경우</li> <li>- (적립중지취소) 적립중지를 기간 중이나 당초 신청한 적립중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취소하는 경우</li> </ul> </li> </ul>
3	24, 39, 70	<p>(2) 탈수급장려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li> <li>*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li> </ul>	<p>(2) 탈수급장려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li> <li>* 탈수급 기준은 p.43 “탈수급”요건 준용</li> <li>**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li> </ul>
4	25, 41, 54, 71	<p>(4) 내일키움수익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li> <li>...</li> <li>- 계좌 해지 후에도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가입자 입출금계좌/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 수익금 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li> <li>*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li> </ul> <p style="background-color: #e0f0ff; padding: 5px;"><b>참고</b> 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 → (시군구) 해지확정 →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 시스템 지급액 입력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지급 실행</li> </ul>	<p>(4) 내일키움수익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등)</li> <li>...</li> <li>○ (추가지급/추가환수)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지급)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li> <li>- (추가환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li> <li>* (지자체) 행복e음 ‘해지후정산’ 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li> </ul> </li> <li>② (시군구) 해지 확정</li> <li>③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li> <li>④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li> </ol>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li> <li>- (환수)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입금,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 정산 보고</li> <li>*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의 지자체별 환수계좌</li> <li>*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li> </ul> <p>⑤ (시군구)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업 담당자)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li> <li>- (자활기금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 요청</li> <li>*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참조</li> </ul>																																																																										
5	26, 42, 55, 72,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li> <li>-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li> <li>-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자활기금으로 반납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li> <li>-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li> <li>-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익년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li> </ul>																																																																										
6	35	<p><b>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b> (단위 :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h>7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소득<sup>1)</sup></td> <td>2,228,445</td> <td>3,682,609</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d>7,618,369</td> <td>8,514,994</td> </tr> <tr> <td>가입 및 유지 기준<sup>2)</sup></td> <td>534,827</td> <td>883,826</td> <td>1,131,518</td> <td>1,375,179</td> <td>1,606,976</td> <td>1,828,409</td> <td>2,043,599</td> </tr> <tr> <td>유지 기준<sup>3)</sup>(소득 상한)</td> <td>4,714,657</td> <td>4,714,657</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d>7,618,369</td> <td>8,514,994</td> </tr> </tbody> </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sup>1)</sup>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sup>2)</sup>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 기준 <sup>3)</sup> (소득 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p><b>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b> (단위 :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h>7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소득<sup>1)</sup></td> <td>2,392,013</td> <td>3,932,658</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d>8,988,428</td> </tr> <tr> <td>가입 기준<sup>2)</sup>(기준 중위 소득 40%)</td> <td>956,805</td> <td>1,573,063</td> <td>2,010,141</td> <td>2,439,109</td> <td>2,843,277</td> <td>3,225,922</td> <td>3,595,371</td> </tr> <tr> <td>유지 기준</td> <td> <table border="1"> <tr> <td>소득 하한<sup>3)</sup></td> <td>574,083</td> <td>943,838</td> <td>1,206,085</td> <td>1,463,466</td> <td>1,705,966</td> <td>1,935,553</td> <td>2,157,223</td> </tr> <tr> <td>소득 상한</td> <td>5,025,353</td> <td>5,025,353</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d>8,988,428</td> </tr> </table> </td> </tr> </tbody> </table> <p>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u>923,623원</u>씩 증가</p>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sup>1)</sup>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기준 <sup>2)</sup> (기준 중위 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유지 기준	<table border="1"> <tr> <td>소득 하한<sup>3)</sup></td> <td>574,083</td> <td>943,838</td> <td>1,206,085</td> <td>1,463,466</td> <td>1,705,966</td> <td>1,935,553</td> <td>2,157,223</td> </tr> <tr> <td>소득 상한</td> <td>5,025,353</td> <td>5,025,353</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d>8,988,428</td> </tr> </table>	소득 하한 <sup>3)</sup>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소득 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sup>1)</sup>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sup>2)</sup>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 기준 <sup>3)</sup> (소득 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sup>1)</sup>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기준 <sup>2)</sup> (기준 중위 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유지 기준	<table border="1"> <tr> <td>소득 하한<sup>3)</sup></td> <td>574,083</td> <td>943,838</td> <td>1,206,085</td> <td>1,463,466</td> <td>1,705,966</td> <td>1,935,553</td> <td>2,157,223</td> </tr> <tr> <td>소득 상한</td> <td>5,025,353</td> <td>5,025,353</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d>8,988,428</td> </tr> </table>	소득 하한 <sup>3)</sup>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소득 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소득 하한 <sup>3)</sup>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소득 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2)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3)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까지 지원 가능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가입당시 근로·사업 소득 기준 및 유지 시 소득하한 기준 ○ (소득하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6월 이상 연속 소득하한 미달 시 중도 환수 ○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최근 3월 평균 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 * 단, 탈수급하지 않은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통장 유지 가능																																																																
7	42	(4)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4)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8	45, 58, 75, 88, 100, 114, 127, 141	<b>4 해지 절차</b>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 (중 략) <b>»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b> ○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담당자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이하 생략)	<b>4 해지 절차</b>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중 략) <b>»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b> ○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좌 동)																																																																
9	50	<b>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b> (단위: 원/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h>7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 소득<sup>1)</sup></td> <td>2,228,445</td> <td>3,682,609</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d>7,618,369</td> <td>8,514,994</td> </tr> <tr> <td>가입 기준<sup>2)</sup> (소득 상한)</td> <td>1,114,223</td> <td>1,841,305</td> <td>2,357,329</td> <td>2,864,957</td> <td>3,347,868</td> <td>3,809,185</td> <td>4,257,497</td> </tr> <tr> <td>유지 기준<sup>3)</sup> (소득 상한)</td> <td>4,714,657</td> <td>4,714,657</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d>7,618,369</td> <td>8,514,994</td> </tr> </tbody> </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sup>1)</sup>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기준 <sup>2)</sup> (소득 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 기준 <sup>3)</sup> (소득 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b>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b> (단위: 원/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h>7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 소득<sup>1)</sup></td> <td>2,392,013</td> <td>3,932,658</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d>8,988,428</td> </tr> <tr> <td>가입 기준<sup>2)</sup> (기준 중위 소득 50%)</td> <td>1,196,007</td> <td>1,966,329</td> <td>2,512,677</td> <td>3,048,887</td> <td>3,554,096</td> <td>4,032,403</td> <td>4,494,214</td> </tr> <tr> <td>유지 기준<sup>3)</sup> (소득 상한)</td> <td>5,025,353</td> <td>5,025,353</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d>8,988,428</td> </tr> </tbody> </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sup>1)</sup>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기준 <sup>2)</sup> (기준 중위 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유지 기준 <sup>3)</sup> (소득 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sup>1)</sup>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기준 <sup>2)</sup> (소득 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 기준 <sup>3)</sup> (소득 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sup>1)</sup>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기준 <sup>2)</sup> (기준 중위 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유지 기준 <sup>3)</sup> (소득 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 유지 가능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
10	53	<b>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b>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b>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b> ○ ('22년~'24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가입연차는 계좌 가입월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적용
11	56	○ (중도지급)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자립 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 (재가입 불가) (중 략) • (본인 사망)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가입자 사망 전 자립역량교육 이수 충족 시	○ (중도지급)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자립 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 (재가입 불가) (좌 동) • (본인 사망) 가입자 사망 후 유예기간(1개월) 내 보장가구원 내에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12	62	<b>1 가입대상</b>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b>1 가입대상</b>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p>② 소득기준 (중 략)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인 청년</p> <p>(중 략)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 소득만 인정)</p>	<p>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좌 동)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인 청년</p> <p>(좌 동)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상 소득 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p>																																																								
13	63	<p>  지원대상 기준</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차상위 초과</th> </tr> <tr> <td>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td> <td>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td> </tr> <tr> <td>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td> <td>매월 10만원</td> </tr> </table>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p>  지원대상 기준</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차상위 초과</th> </tr> <tr> <td>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td> <td>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td> </tr> <tr> <td>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td> <td>매월 10만원</td> </tr> </table>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14	63	<p>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h>7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유지 기준<sup>1)</sup> (소득상한)</td> <td>4,714,657</td> <td>4,714,657</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d>7,618,369</td> <td>8,514,999</td> </tr> <tr> <td>차상위 초과</td> <td colspan="7">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td> </tr> </tbody> </table> <p>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p>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유지 기준 <sup>1)</sup>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9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p>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h>7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소득<sup>1)</sup></td> <td>2,392,013</td> <td>3,932,658</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d>8,988,428</td> </tr> <tr> <td>가입기준<sup>2)</sup> (기준 중위소득 100%)</td> <td>2,392,013</td> <td>3,932,658</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d>8,988,428</td> </tr> <tr> <td>유지기준<sup>3)</sup> (소득상한)</td> <td>5,025,353</td> <td>5,025,353</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d>8,988,428</td> </tr> </tbody> </table> <p>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p>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sup>1)</sup>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sup>2)</sup>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 <sup>3)</sup>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유지 기준 <sup>1)</sup>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9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sup>1)</sup>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sup>2)</sup>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 <sup>3)</sup>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15	75	<p><b>해지처리 기관별 역할</b></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기관별 역할</th> </tr> <tr> <th>가입자</th> <th>시군구</th> <th>지역자활센터</th> </tr> </thead> <tbody> <tr> <td>지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자산형성포털에서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및 접수</li> <li>(오프라인)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사용 계획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로 접수</li> <li>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li> <li>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 가입자에게 안내, 가입자 해지신청서 등 검토 후 행복e음상 지급 승인 처리</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기관별 역할			가입자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자산형성포털에서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및 접수</li> <li>(오프라인)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사용 계획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로 접수</li> <li>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li> <li>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 가입자에게 안내, 가입자 해지신청서 등 검토 후 행복e음상 지급 승인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ul>	<p><b>해지처리 기관별 역할</b></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기관별 역할</th> </tr> <tr> <th>가입자</th> <th>시군구</th> <th>지역자활센터</th> <th>광역자활센터</th> </tr> </thead> <tbody> <tr> <td>지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로 접수</li> <li>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 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확인조사 소득 기준 초과 : 확인 조사 최종 결과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 가입자에게 안내, 가입자 해지신청서 등 검토 후 행복e음상 지급 승인 처리</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검토</li> <li>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희망e음으로 발송</li> <li>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검토</li> <li>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공문발송</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기관별 역할				가입자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로 접수</li> <li>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 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확인조사 소득 기준 초과 : 확인 조사 최종 결과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 가입자에게 안내, 가입자 해지신청서 등 검토 후 행복e음상 지급 승인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검토</li> <li>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희망e음으로 발송</li> <li>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검토</li> <li>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공문발송</li> </ul>
구분	기관별 역할																											
	가입자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자산형성포털에서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및 접수</li> <li>(오프라인)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사용 계획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로 접수</li> <li>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li> <li>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 가입자에게 안내, 가입자 해지신청서 등 검토 후 행복e음상 지급 승인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ul>																									
구분	기관별 역할																											
	가입자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로 접수</li> <li>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 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확인조사 소득 기준 초과 : 확인 조사 최종 결과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 가입자에게 안내, 가입자 해지신청서 등 검토 후 행복e음상 지급 승인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검토</li> <li>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희망e음으로 발송</li> <li>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검토</li> <li>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공문발송</li> </ul>																								
16	149	<p><b>2 자립역량교육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망저축계좌II : 집합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li> <li>청년내일저축계좌 : 동영상 교육</li> </ul> </li> </ul>	<p><b>2 자립역량교육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망저축계좌II : 집합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li> <li>청년내일저축계좌 : <u>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u> 또는 동영상 교육</li> </ul> </li> <li>*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광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u>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이수 시 집합교육으로 인정 가능</u></li> </ul>																									
17	154	<p>&lt;신 설&gt;</p>	<p><b>5 청년 금융특화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에정자 우선)</li> <li>(주요내용) 기본 금융 이해력 도모를 위한 기초 자산 교육 강의, 가입자 개별 재무상태 분석을 기반으로 1:1 금융 맞춤 컨설팅(재정상태 분석, 개별 자산활용 계획 수립, 자산운용 설계 지원 등) 상담 제공 등</li> <li>(교육계획) 광역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금융 특화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의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분기 내 복지부 보고</li> </ul>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진행) 광역자활센터는 연간 교육일정을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공유하고, 교육 안내, 강의실 및 강사 섭외 등 교육 관련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상자의 집합교육 참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 강의 개설 권고</li> <li>- 광역자활센터 업무 담당자는 교육 시작 전 교육 일정 및 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교육생에게 충분히 안내(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거부감 최소화 및 집중도 향상)</li> <li>- 광역자활센터는 교육 종료 후 참석자 명단을 <u>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u>을 이용하여 교육이수 등록·관리</li> </ul> </li> </ul>
18	167	<p style="text-align: center;"><b>3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주요 업무</b></p> <p><b>1 지역자활센터(청년내일저축계좌 업무 제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가입·유지 및 해지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 안내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 및 상담을 통해 가입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li> </ul> </li> <li>- 가입자 유지 및 해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복지, 재무 서비스 연계, 자립역량강화 교육 진행 및 일정 안내, 본인적금 지속 납입관리*, 통장 만기 알림, 지침 및 변동 사항 알림 등 지원</li> <li>* 매달 적립일(22일)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저축 독려</li> <li>• 지급/환수 해지안내 및 관련 제출서류(자금사용 계획서 또는 사용용도 증빙서류) 안내·검토</li> <li>*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중 자활참여 이력있는 대상자의 경우 수익금 환수처리 등 해지지원 필요</li> <li>• 장기미저축으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지자체 통보</li> </ul> </li> </ul> </li> <li>- 교육 및 사업지원 관련 이력 관리</li> <li>• 상담 및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결과, 통장사업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한 후 관련 내용을 자활정보 시스템에 등록·관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3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주요 업무</b></p> <p><b>1 지역자활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유지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 안내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 및 상담을 통해 가입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li> </ul> </li> <li>- 가입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복지, 재무 서비스 연계, 본인적금 지속 납입관리*, 통장 만기 알림, 지침 및 변동 사항 알림 등 지원</li> <li>* 매월 적립일(22일)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저축 독려</li> </ul> </li> <li>- 가입자 교육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역량강화 교육 진행 및 일정 안내, 운영, 이수 결과 등 관련 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li> <l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교육 문의 시 광역자활센터로 연계 협조</li> </ul> </li> </ul> </li> <li>○ 가입자 해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저축계좌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환수 해지안내 및 관련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안내·검토,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해지정보 검토 및 확정처리</li> <li>•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로 송부 및 업무지원</li> </ul> </li> </ul> </li> </ul>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가입자가 상담 또는 기타 서비스 자원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 자산형성 포털,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 내 가능한 유관기관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내일저축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환수 관련 오프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 사용계획서) 접수 및 검토 후 지자체 전달(자활정보 시스템 확정처리 불요, 희망e음을 통한 서류 전달)</li> <li>•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중 자활참여 이력있는 대상자는 내일키움수익금 환수처리 등 추가 해지 지원 필요</li> </ul> </li> <li>- 기존사업(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환수 해지안내 및 관련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안내·검토,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해지정보 검토 및 확정처리</li> <li>•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로 송부 및 업무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상담 및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최초 가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가구정보, 통장 가입정보, 근로/재무현황, 사업지원서비스 욕구파악 등</li> <li>• (주요내용) 신규 가입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중간점검지 작성 등</li> <li>* 사업지원 관련 서식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 관리 매뉴얼」 참조</li> </ul> </li> <li>- 기타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실직,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적자 가계재무 구조로 통장 사업 참여 지속이 어려운 가입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요청 시 또는 실시기관 판단에 따라 실시</li> <li>• (주요내용)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및 자격증 정보제공,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다양한 욕구별 복지지원 연계·지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상담 및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최초 가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가구정보, 통장 가입정보, 근로/재무현황, 사업지원서비스 욕구파악 등</li> <li>• (주요내용) 신규 가입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중간점검지 작성 등</li> <li>* 가입자 요청 시 심화사례관리 연계 지원 가능</li> </ul> </li> <li>- 기타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실직,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적자 가계 재무 구조로 통장 사업 참여를 지속하기 어려운 가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지원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실시</li> <li>• (주요내용)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및 자격증 정보제공,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다양한 욕구별 복지지원 연계·지원</li> <li>*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상담 또는 기타 서비스 자원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 자산형성 포털(자산e룸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 내 가능한 유관기관 안내</li> <li>• (기타) 광역 단위 네트워크 참여 및 지역 내 가입자에게 필요한 자원 서비스 연계</li> </ul> </li> </ul> </li> </ul>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p>» 심화 사례관리(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및 주요내용)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정보제공, 자격증 취득교육 교육지원, 욕구별 복지지원,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li> <li>○ (대상) 실직,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적자 가계재무 구조로 통장 사업 참여 지속이 어려운 가입자 등에 대해 사례관리사 1인당 연 15~30가구</li> </ul>	
19	170	<p><b>3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주요 업무</b></p> <p><b>2 광역자활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지원, 민원대응, 가입자 명단 관리 및 유지 관련 지자체 협력 등</li> <li>• 장기미저축으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지자체 통보</li> </ul> </li> <li>- 자산형성포털 내 지역 콘텐츠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li> <li>• 지역 내 재무, 금융, 고용 등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연계</li> <li>•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가입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li> <li>- 특화서비스 계획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형성포털 활용 정보제공</li> <li>• 재무, 금융, 취업, 복지서비스 등 직·간접적 서비스 지원 및 연계</li> </ul> </li> </ul> </li> </ul>	<p><b>3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주요 업무</b></p> <p><b>2 광역자활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및 금융 특화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계획 수립, 분기별 업무 처리 진행 현황 보고 (광역자활센터 → 개발원)</li> </ul> </li> <li>○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 관리) 가입자 명단 관리, 문의 응대, 모바일 알림(미납자 관리, 만기도래자 해지안내 등) 및 계좌 유지 지원 관련 사항 지자체 협력 등</li> <li>• (해지지원)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 송부 및 업무지원, 지급/환수 관련 온라인 접수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 사용계획서 접수 및 검토 후 지자체 전달)자활정보 시스템 확정처리 불요, 제출서류 공문을 통해 시군구로 서류전달)</li> </ul> </li> <li>- 자산형성포털 내 지역 콘텐츠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재무, 금융, 고용 등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연계</li> <li>•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가입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li> </ul> </li> </ul> </li> <li>○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특화서비스 계획 수립 및 운영·제공</li> </ul> </li> </ul>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자산교육, 금융 상담 등 금융 특화서비스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li> <li>•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금융특화서비스 분기별 운영 결과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보고</li> <li>- 기타 서비스 연계·제공</li> <li>•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활용 정보제공</li> <li>• 재무, 금융, 취업, 복지서비스 등 직·간접적 서비스 지원 및 연계</li> <li>- 가입자 교육 이수 관리</li> <li>•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이수 관리, 지자체 협조(필요 시 명단 제공 등)</li> <li>• 청년내일저축계좌 미이수자 교육 안내, 교육 이수 등록, 지급 대상자 해지 신청 전 교육 이수 현황 사전 점검 등 교육 관련 전반적인 업무 실행</li> </ul>
20	23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b>5 결산 및 반납 절차</b></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b>1 예탁금 반납 절차</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개편 이후 통장(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자체별 단일예산으로 보장기관별로 예탁 및 정산(단일 계좌)</li> <li>(중 략)</li> <li>◦ (시도, 시군구(통장사업 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문을 통해 반납예정액 확인</li> <li>② 회계부서를 통해 고지서 발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요청 공문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납계좌 또는 세외수입고지서 첨부(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li> <li>* 예산반납 시 반납예정액과 반납 요청액의 차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입으로 처리</li> </ul> </li> <li>③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반납 받은 국고보조금을 정산보고 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li> </o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b>5 결산 및 반납 절차</b></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b>1 예탁금 반납 절차</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개편 이후 통장(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자체별 단일예산으로 보장기관별로 예탁 및 정산(단일 계좌)</li> <li>(좌 등)</li> <li>◦ (시도, 시군구(통장사업 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문을 통해 반납예정액 확인</li> <li>② 회계부서를 통해 고지서 발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요청 공문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납계좌 또는 세외수입고지서 첨부(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li> <li>* 예산반납 시 반납예정액과 반납 요청액의 차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입으로 처리</li> <li>* 보조금 정산 완료 후 지자체는 반납예정액에 대해 다음연도 3월 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 요청</li> </ul> </li> <li>③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반납 받은 국고보조금을 정산보고 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li> </ol> </li> </ul>

연번	페이지	2024년 지침 내용	2025년 개정(안)
21	236	〈신 설〉	<p><b>2</b> 내일키움수익금 반납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 7. 1.부터 내일키움수익금 환수 발생 시 지자체별 지정계좌(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로 자동 입금 및 정산</li> <li>○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다음연도에 반납예정액(환수금, 이자)을 지자체(시도)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배포</li> </ul> </li> <li>○ (시도, 시군구(통장사업 및 자활기금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문을 통해 정산액 확인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요청 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연도 3월 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 요청</li> <li>*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반납계좌 또는 세외수입 고지서 첨부(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li> <li>* 반납시 반납예정액과 반납요청액의 차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입으로 처리</li> </ul> </li> <li>② 반납금액은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처리</li> </ul> </li> </ul>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Contents.



##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01



##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 사항

09



## 유형별 사업 내용

- |     |              |
|-----|--------------|
| 34  | 1. 희망저축계좌 I  |
| 47  | 2. 희망저축계좌 II |
| 61  | 3. 청년내일저축계좌  |
| 79  | 4. 희망키움통장 I  |
| 93  | 5. 희망키움통장 II |
| 104 | 6. 내일키움통장    |
| 119 | 7. 청년희망키움통장  |
| 134 | 8. 청년저축계좌    |



자립역량교육  
안내

147



사업지원 안내

165

# VI

## 부록

- 174 1. 자산형성지원사업 Q&A
- 227 2.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 232 3.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약 절차 안내
- 238 4. 모집일정
- 240 5. 본인저축 및 적립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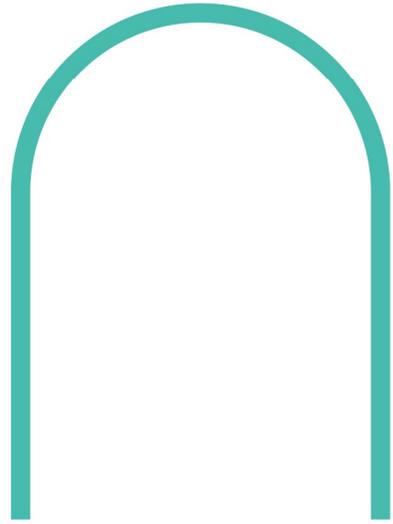
# VII

## 공통서식

- 248 1.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서식
- 269 2. 희망·내일 키움 통장  
관련 서식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 1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2 추진 경과

- 2010.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 2018.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하반기)로 사업 개편

### 3 자산형성지원사업 유형

- 가입대상에 따라 (개편 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개편 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구분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므로 일부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 과거 환수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단, '22년 통장사업 개편 이후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신규참여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 I·II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 부여,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 가입 기회 부여

#### I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 〈개편 후〉

구 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39세)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2장 공통사항의 추가지원금 참조)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희망저축계좌II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개편 전〉

구 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생계·의료 수급 가구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 (만15세~39세)
본인저축	월 5/10만원	월 10만원	월 5/10/20만원	-	월 10만원
정부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 1:1 (월 최대10만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월 30만원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없음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민간매칭금 근로소득공제금	없음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825만원 (최대 3,236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20만원 저축시) 2,268만원 (최대 2,340만원) + 이자	2,088만원 (최대 2,876만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최대 1,440만원+이자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 시장 취·창업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 개요

구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타가구원	가입자	타가구원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희망키움 통장 I (가구)	참여중	×		×		×	
	지급	×		○		○	
	일부지급	○(1회)		○		○	
	환수	○		○		○	
희망키움 통장 II (가구)	참여중	×		×		×	
	지급	○		×		○	
	환수	○		○		○	
내일키움 통장 (개인)	참여중	×		×		×	○
	지급	○		○		○	○
	일부지급	○		○		○	○
	환수	○		○		○	○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참여중	×		×		×	○
	지급	○		○		×	○
	일부지급	○(1회)		○		○	○
	환수	○		○		○	○
청년저축 계좌 (개인)	참여중	×		×		×	○
	지급	○		○		×	○
	환수	○		○		○	○
희망저축 계좌 I (가구)	참여중	×		×		×	○
	지급	×		○		○	○
	일부지급	○(1회)		○		○	○
	환수	○		○		○	○
희망저축 계좌 II (가구)	참여중	×		×		×	○
	지급	○		×		○	○
	환수	○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인)	참여중	×	○	×	○	×	○
	지급	○	○	○	○	×	○
	환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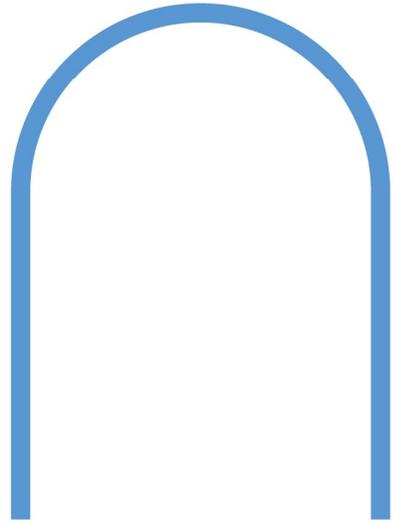
 **참고** 가입가능 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별 중복지원여부 판단
- 희망저축계좌 I·II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예1) 희망저축계좌 I에 참여중인 가입자 외 타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 (예2) 가구 내 청년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보장가구원 내 타가구원의 명의로 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및 가입자 모두 타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예시) 청년저축계좌 신청자: 김자산(본인) 가입자: 김형성(자녀) → 김자산, 김형성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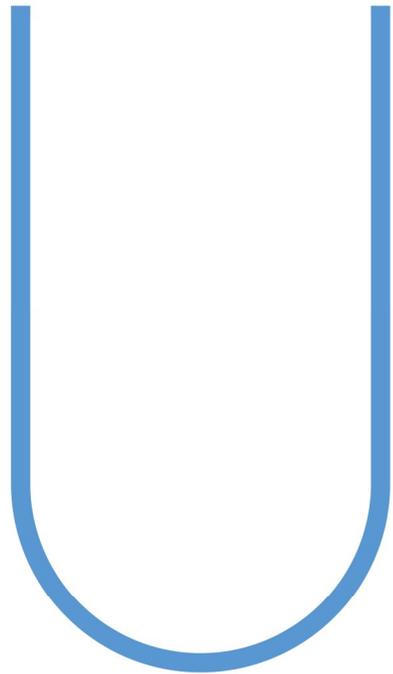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 사항



## 1 지원 대상자

- 각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모집일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자로 선정된 자

###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구 분	지원기준 지자체
희망저축계좌Ⅰ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희망키움통장Ⅰ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내일키움통장	신청자(자활참여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청년)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청년이 속한 지자체)
청년저축계좌	신청자(청년)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입 신청 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 \*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참여 가능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과정, 근로유지형 사업단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는 유지기간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더라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 세부내용 하단의 3. 중복관리 대상사업 참고

### 3 중복관리 대상사업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예정) 한 사실이 있거나 참여(예정) 중인 자(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 (참고: 중복 참여 불가 사업 리스트)
  -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비슷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이나 중복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참고: 중복 참여 가능 사업 리스트)
  -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대상자 선정 이후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즉시 참여 중단 처리되며, 적립된 지원금은 미지급
  -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더라도 지원받은 이력이 없거나 동시 참여 중 타 사업 중단(포기) 시 계속 참여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이력은 중복수혜 관리의 목적으로 지자체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중복참여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시, 해당 사업 운영기관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문의 시 확인 가능

Ⅰ 중복 참여 불가 사업

번호	사업구분	시행기관
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3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통일부
4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특별시
5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서울특별시
6	중증장애인이름통장	서울특별시
7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광역시
8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광역시
9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부산광역시
10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11	드림for청년통장	인천광역시
12	행복씨앗통장(청년발달장애인)	인천광역시
13	청년비상금통장	광주광역시
14	청년13(일+삶)통장	광주광역시
15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행복통장	광주광역시
16	청년희망통장	대전광역시
17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
18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대전광역시
19	세종시 청년 미래적금	세종특별자치시
20	청년 노동자 통장(구.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21	청년연금	경기도
22	청년마이스터통장(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2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24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충청남도
25	반짝자립통장(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충청남도
26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전라남도
27	경북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경상북도
28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특별자치도
29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제주특별자치도

번호	사업구분	시행기관
30	중소기업 장기재직 채형저축	제주특별자치도
31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특별자치도
32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강원특별자치도
33	으뜸관악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34	행복드림통장	경기도 성남시
35	양평애향청년통장	경기도 양평군
36	부안군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37	청년자산형성통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8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전라남도 순천시
39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전라남도 영광군
40	창원 청년 내일통장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41	청년종자통장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이 외에도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참여 불가

### Ⅰ 중복 참여 가능 사업

번호	사업구분	시행기관
1	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부
2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23년 신규가입자부터 가능)
3	꿈나래통장	서울특별시
4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5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6	한부모가정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대한사회복지회
7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신용회복위원회
8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금융과행복네트워크
9	행복더하기(북향민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북한인권정보센터
10	목돈마련응원매칭	금융산업공익재단/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11	청년목돈마련 응원매칭	금융산업공익재단/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 이 외에도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4 적립중지

### 1 일반 적립중지(6개월)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저축 가능(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제외)
  -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입대 등 2년 적립중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사업안내 참조

### 2 군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 1회에 한해 신청 및 기간 연장 가능(총 2년 범위 내)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단, 해당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적금 납입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최대 2년까지)
  - \* 해당 사유 발생 시 서류 증빙 필요(입영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 적립중지(2년) 선택사항

#### ① 적립중지(2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 '적립중지(2년)' 기간 중 가입자 요청으로 적립중지취소 할 수 있지만 이후 재요청 및 잔여기간 사용 불가

#### ②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적금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 본인희망으로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
- ※ 단,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저축 유지하는 대상자는 매월 본인 저축 필수(본인 저축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대상이 되며, 적립중지(2년) 소급적용 불가)

### 적립중지 시 필수 유의사항

- 가입자가 직접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적립중지(신청/철회/취소) 신청서를 반드시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신청/철회/취소) 등록
  - 행복e음 미등록 시 적립중지(해제) 설정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 절대 불가
  - 적립중지 기간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하며 통장만기일자가 연장되지는 않음
  - \* 1월 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적립중지 신청 후 가입자 의사에 따라 적립중지를 철회/취소하는 경우, 가입자는 적립중지 철회/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드시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
  - (적립중지철회) 적립중지를 신청하였으나 적립중지 개시일 전에 철회하는 경우
  - (적립중지취소) 적립중지 기간 중이나 당초 신청한 적립중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취소하는 경우

## 5 계좌 운영

### 1 대상자 선정 후 계좌 개설 순서

#### I 사업주체별 계좌개설 순서 및 내용

<p><b>사군구</b></p>	<p>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입력·확정하면 금융 기관에 대상자를 연계 등록 - 신청·접수 정보 전송 시 사례관리기관 지정 필수</p>	<p>* 확정전송 후 금융기관 정보송신(등록)까지 최대 1시간 소요 * 행복e음 송신결과 반영 1일 소요</p>
<p><b>가입자</b></p>	<p>신규 통장 개설하고 1회 적금액 입금 - 적금 신규 개설 - 적립금 자동이체(1~20일), 해지 시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입출금 계좌 개설</p>	<p>* 지자체 담당자 대리 접수 시 대상자의 은행거래 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대상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 가입월 통장 미개설시 가입자로 인정 불가, <b>신규 개설 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첫 월 미저축시 가입 인정 불가)</b></p>
<p><b>한국자활 복지개발원</b></p>	<p>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지원금 적립계좌 개설요청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자동 관리됨</p>	<p>* 적립계좌는 환수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가입자명 부기)로 개설</p>

## 2 저축 및 지원금 생성·입금

### 1 월간 일정 및 주체별 업무내용

<p><b>가입자</b></p>	<p style="text-align: center;"><b>가입자 저축(전월 23일~당월 22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li> <li>•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li> </ul>
<p><b>시군구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b></p>	<p style="text-align: center;"><b>지원금 생성(매월 23일~27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별 본인적금 입금내역 근거로, 통장별 지원금 생성 기준에 따라 적립금액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 희망저축계좌 I,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전송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은 생성 및 적립 동시진행</li> <li>- 개발원 : 희망저축 II·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본인저축 시 자동매칭) 내일키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생성</li> </ul> </li> </ul>
<p><b>한국자활 복지개발원</b></p>	<p style="text-align: center;"><b>지원금 적립(매월 28일~31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 등에서 개인별 지원금 적립 계좌에 입금</li> </ul>
<p><b>한국자활 복지개발원</b></p>	<p style="text-align: center;"><b>적립정보 제공(익월 1일~10일 이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월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등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광역·지역자활센터에 적립결과 제공</li> </ul>
<p><b>지역자활 센터</b></p>	<p style="text-align: center;"><b>내일키움수익금 입금(익월 1일~15일 이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매분기 매출정산 시 금액 산정하여(자활정보시스템 매출정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에 개별 입금</li> </ul>
<p><b>시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입금여부 점검</li> <li>• 매월 가입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등의 입출금내역을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li> </ul>

### 3 계좌 해지 시 지원금 지원 절차

#### 계좌해지 순서 및 내용

<b>시군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지 대상자 및 해지유형을 결정 후 행복e음을 통해 해지지원금구분, 지급요청금액, 환수요청금액, 해지사유를 등록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li> </ul>
<b>지역 자활센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서류 등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확인 처리</li> <li>*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시스템 처리 생략</li> </ul>
<b>한국자활 복지개발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계좌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수) 입출금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반납 계좌로 입금, 탈수급장려금 등 기타재원은 입출금계좌를 거쳐 해당 지원금별 운영계좌로 입금</li> <li>- (지급) 지원금별 입출금계좌를 거쳐 가입자 입출금계좌로 입금</li> <li>* 해지완료 시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li> </ul> </li> </ul>
<b>은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가입자 적금계좌 해지 처리</li> <li>* 내일키움통장은 내일근로장려금 해지결과 기준</li> </ul>
<b>한국자활 복지개발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li> </ul>

\* 지원금 지원 세부기준은 각 사업안내 참조

###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 시 업무 처리 요령

-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란?
  - ： 가입자가 지원금을 받을 입출금계좌가 해지되는 등 입금이 불가능한 상태
  - 계좌 진위여부 오류 :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해지처리 전 지급입출금계좌에 대해 [진위여부] 버튼 클릭 시 'x'로 표시되는 경우(은행을 통한 결과 회신)
    - \* '-'로 표시되는 경우는 지급금액이 없으므로 진위여부 확인 처리 생략 가능
  - 지급오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최종 해지(지급) 시 입금오류 난 경우
- 지역자활센터 처리방법
  1. 가입자 본인에게 대체계좌\* 제출 통지·접수·확인 후
    - \* 본인의 계좌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명의 계좌 제출가능(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관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보장가구 범위 상 대리인인 경우 지자체 확인공문으로 대체)
  2.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계좌소유 구분, 계좌번호 변경 및 계좌사본과 관련 서류 업로드하여 저장. 지급오류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장사본 첨부하여 공문 발송

**4 참여 주체별 계좌 종류**

가입자	본인적금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자가 본인 적금을 적립하는 계좌</li> <li>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sup>1)</sup> 가능 (개편전 사업 적용 불가)</li> <li>지자체 해지승인, 지역사회활센터 해지확정<sup>2)</sup>,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해지허가 SMS 수신 후 해지·출금 가능</li> </ul>
	본인 입출금계좌 <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계좌</li> </ul>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 생성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이 적립되는 계좌</li> <li>근로소득장려금 외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 시 적립·지원</li> <li>* (희망저축 I)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희망저축 II)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내일저축)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근로소득 공제금 (희망 I)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희망 II) 근로소득장려금 (내일)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청년희망민간매칭금 (청년저축) 근로소득장려금</li> <li>임의출금이 제한되며, 본인적금 만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의 추가지급 등 변경된 금액의 지급처리를 위해 72개월로 개설</li> </ul>
	예탁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별 예탁 받은 근로소득장려금을 관리하는 계좌</li> </ul>
	반납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가 환수될 경우,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계좌(당해 년도) 및 반납계좌(과년도 및 이자 등)로 환수금이 입금됨</li> </ul>
	지원금별 입출금계좌 <sup>4)</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가 해지되어 지급·환수되기 전 적립금이 거쳐 가는 계좌</li> </ul>
지역 자활센터	내일키움 수익금 환수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가 환수 되었을 때 발생한 금액을 이체 받는 계좌</li> </ul>
지자체	근로소득 공제금 환수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가 환수 되었을 때 발생한 금액을 이체 받는 계좌</li> <li>기존 계좌 변경필요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문요청(변경처리 없이 기존 계좌 해지 시 환수금 입금이 불가하므로 사전 변경요청 필요)</li> </ul>

1)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활센터 시스템 처리 생략  
 3) 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이므로 가입자가 지급 전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필요. 지급 전 해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체계좌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입력 등 지급 소요시간 증가  
 4)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의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해지할 경우 근거계좌 사용 필요

## 5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정책대상별 각 추가지원금 지급기준 충족 시 지원

구분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민간매칭금
희망저축계좌I	X	O	O	O	X
희망저축계좌II	X	X	O	O	X
청년내일저축계좌	O	O	O	O	X
희망키움통장I	X	X	X	X	O
희망키움통장II	X	X	X	X	X
내일키움통장	X	X	O	O	X
청년희망키움통장	O	X	X	X	O
청년저축계좌	X	X	X	X	X

### (1)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sup>5)</sup>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sup>6)</sup>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 (공제금 생성)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 생성하여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 당월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월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하한(10만원) 초과 및 본인적립액 저축 시 생성
  - \* 생계급여 미지급, 적립중지 기간, 소득하한(10만원) 이하 또는 본인적립액 미 저축시 공제금 미생성

5)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6)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 (공제금 적립)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공제금 적립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팀에서 처리(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참고)
- (공제금 해지)
  - (지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지원 처리
    -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 (환수) 해지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환수처리(자동입금)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처리 절차**

-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 희망저축계좌I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절차안내 참조
- ③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 매월 통장 사업팀은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 (2)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 탈수급 기준은 p.43 “탈수급”요건 준용
  -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계좌 생성
-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및 지급
  -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 (3)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 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하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생성 및 적립기준은 해당 사업안내 참조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일괄 적립
  -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승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내일키움장려금 생성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 (4)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 I」참고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추가지급/추가환수)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
  - (추가지급)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
  - (추가환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
    - \* (지자체) 행복e음 '해지후정산' 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

### 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

- ①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
  - \*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② (시군구) 해지 확정
- ③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
- ④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
  - (지급)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입금,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 정산 보고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를 지자체별 환수계좌
    - \*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
- ⑤ (시군구)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
  - (통장사업 담당자)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
  - (자활기금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 요청
    -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참조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익년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

#### 자활근로사업 참여중인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는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로 관리되어, 자활근로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하더라도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참여 사실 확인 불가하여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계좌 개설 누락  
 ⇒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징구 및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계좌 생성 필요(미제출 시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지원불가)
- 행정처리절차
  - ① (참여자) 시설수급자는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제출하여 자활근로 여부 알림  
 \* 자활사업안내 I [서식 23]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활용
  - ② (시군구) 자활근로 중인 시설수급자의 참여 이력을 분기별 개발원으로 공문 발송
  - ③ (개발원) 시군구 공문 접수 후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계좌 생성, 장려금 적립 정보 생성
  - ④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중인 시설수급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

### (5) 민간매칭금

- (대상) 희망키움통장 I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외 민간 재원에 의한 추가지원금으로 본인 적금이 납입된 달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의 매칭 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탈수급 해지(지급)시 지급

### (6)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 6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 (대상)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 적립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 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를 지출증빙 서류로 제출
- 증빙자료는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초 사용계획과 해지 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 용도에 해당하면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 지급 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하고 벌칙 부과
    -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 통장가입자/신청자 명의를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토록 하고, 개명한 경우에는 개명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초본 필수 제출

## 증빙서류 예시

### ①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견적서)와 관련된 계약서, 이체확인증(통장사본), 영수증 등
- 국토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환 관련 영수증 등

###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납입확인서
  - \* (특수학교)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 1톤 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 택배용소형차량 등)

### ④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 가입\*,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 가입,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 \* 지역자활센터는 통장 지급 예정자가 ISA 계좌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 확인서(서식 4호활용) 발급. 단, 통장 가입자 및 가구원이 ISA 계좌 상품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사전 확인 필요
  - \*\* 통장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 시까지 유지하고 있는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예금 상품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 단 통장 가입기간 중 만기가 지난 적금상품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 동안 납입한 적금금액 인정 가능
  - \*\*\* 국민연금·고용·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증빙서류 예시

이행계획서 제출 시 ISA 가입 관련 업무 처리 지침안내

- (가입자)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이행계획서 제출 및 ISA 가입 의사 표명
  - (지자체) 해지승인(지급)
  - (지역자활센터) 희망·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급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자활정보시스템에 해지확정 처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해지실행 및 지원금 지급, 해지허가 SMS 발송
  -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 (계좌사본 등) 지역자활센터 제출
  - (지역자활센터)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종료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지자체에 해당내용 보고
  - (지자체)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한 것으로 간주, 지원금 회수 및 벌칙\*부과
-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조)

## 7 기타 운영 사항

### 1 중도 인출

-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하여 만기 이전 본인 적립금액 범위내(최소 10만원 제외) 1회 중도 인출 가능(금융기관 직접 신청)

### 2 임의 입출금 제한

- 적립기간 중 각 계좌(가입자 본인적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일체) 임의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
  - \* 만기 이전 가입자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본인적금 중도 인출 가능
- 지자체의 해지승인 및 지역자활센터 해지확인\* 후 지급정지 등록 해제, 지급처리 가능
  -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시스템 처리 생략
  - 은행 영업점에서 해당 지급정지를 임의 해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제한

### 3 대상자 전출입 발생 시 행정 절차

- (전출 지자체) 행복e음을 통해 매월 전출현황을 파악하여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대상자를 전출처리(매월 15일까지)
  - \* 자활참여자의 경우 지자체에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보고를 포함한 전출사항을 보고하고 전입 지역자활센터에 통지(매월 15일 기준)

- 전출·입 시 대상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송부(전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 전입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 (관련서류) 가입당시 관계서류 사본 보관, 원본을 전입지자체로 송부(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공문 첨부도 가능), 근로소득장려금·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월별 지급 내역(금액, 횟수, 기타 특이사항), 기타 관련서류
  - \* 탈수급장려금, 민간매칭금은 전출 지역자활센터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전입 지역자활센터로 내역 송부
- 자활참여자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관리대장을 정산보고 받아 확인 후 전입할 시군구에 내역 송부, 지역자활센터는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적립

- (전입 지자체)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행복e음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대상자 전입사실을 확인(해당 월에 지자체가 생성해야 할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정보 파악)하고, 사례관리기관 변경 및 변동정보 전송 처리

- \* 전입 발생시, 행복e음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쉽게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기능 제공, 누락되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없도록 관리 지원

» 전출·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적립 절차

(희망저축계좌 I, 희망키움통장 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한함)

- 대상자 전출·입 시, 전출등록 전(前)월 입금분까지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생성
- 전출 지자체의 행복e음 전출등록이 완료된 이후의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전입 지자체에서 판단
  -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생성은 하였으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제 계좌적립 전 가입자의 전출을 실행했다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전출 지자체가 승인한 내역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의 예약금을 집행

**4 통장이율 및 연계제도**

-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이율 적용
  - \* 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5%(상품별 우대 요건 및 이율 상이, 약관 참조)
- 희망저축계좌 I, II 및 희망키움통장 I, II 가입자 대상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는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유지확인서 발급
    - \* 국토교통부 '25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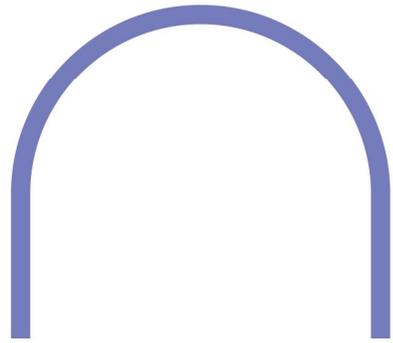
-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 (지원내용)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금리) 연 1.3%(우대형)·연 1.8%(일반형)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 (취급은행) 우리은행(문의처: 1599-0800), 신한은행(문의처: 1599-8000), KB국민은행(문의처: 1599-1771), NH농협(문의처: 1588-2100), KEB하나은행(문의처: 1599-1111)
- (기타) 제도 변경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참고

**5 압류방지 불가**

-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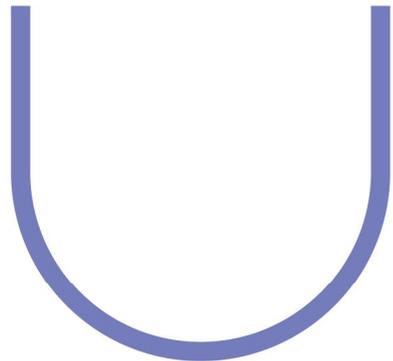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유형별 사업 내용

1. 희망저축계좌 I
2. 희망저축계좌 II
3. 청년내일저축계좌
4. 희망키움통장 I
5. 희망키움통장 II
6. 내일키움통장
7. 청년희망키움통장
8. 청년저축계좌



# 01

# 희망저축계좌 I

## 1 추진 배경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 필요
-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 I 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 2 추진 체계



## 3 지원대상 및 내용

### 1 가입대상기준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근로·사업소득)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 구진축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수급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시 가입 가능
- [소득기준특례]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수급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는 경우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수급권 신청 및 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가구원 수로 적용
  - 예) 4인 가구에서 1명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가 생계급여는 분리(3명)보장받고, 의료급여는 함께(4명) 보장받는 경우 4인으로 적용

### 2 가입 및 유지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sup>1)</sup>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기준 <sup>2)</sup> (기준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유지 기준	소득하한 <sup>3)</sup>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가입당시 근로·사업소득 기준 및 유지 시 소득하한 기준

- (소득하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6월 이상 연속 소득하한 미달 시 중도 환수
-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최근 3월 평균 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

\* 단, 탈수급하지 않은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통장 유지 가능

### 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①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③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4 가입 및 지원 절차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신청	생계·의료 수급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저축계좌 I 자가진단표’ 작성</li> <li>•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li> <li>② 희망저축계좌 I 자가진단표</li> <li>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li> <li>④ 기타 필요서류</li> </ol> </li> </ul>
가입안내 및 접수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저축계좌 I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li> </ul> </li> <li>•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li> <li>•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취·창업 등의 사유로 지급 후 희망저축계좌 I 을 가입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가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책정되어 희망키움통장II 를 환수하고 희망저축계좌 I 을 가입하는 경우 등</li> </ul> </li> </ul>
신청자 자격 확인	읍면동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li> <li>* 신청인의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중복가입 이력 확인 등</li> </ul>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li> <li>•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li> <li>•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즉시 통보하여 지연통보(계좌개설 기한 이후 참여 결정통지서 송달 등)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li> </ul> </li> </ul>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비대면(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계좌 개설 가능</li> <li>•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최소 1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li> </ul>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가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li> <li>•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li> </ul>
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li> </ul>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지원 금액 생성 후 적립정보 전송 * 가입자 본인적립금 미적립 등 지원조건 미충족 시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li> <li>•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적립실행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li> </ul>
해지 처리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해지승인</li> <li>• (지역자활센터) 해지서류 안내 및 제출된 해지 서류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li>•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처리 및 SMS(문자)를 통해 해지 결과를 통보</li> </ul>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일정은 7장. 부록 참고

## 5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 1 본인적립금

- (본인적립)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립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 » 미저축자 관리 등 유의사항

- 당월 22일 경과 후 저축 시 익월 저축액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되지 않으므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입금 마감일 전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저축 독려
- 가입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안내 또는 미저축자 관리 시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요건) 10만원 이상 저축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소득하한) 이상 발생 시
  -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당월 소득 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1)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 탈수급 기준은 p.43 “탈수급”요건 준용
  -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계좌 생성
-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및 지급
  -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 (2)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 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일괄 적립
  -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승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내일키움장려금 생성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 (3)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 I」참고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추가지급/추가환수)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
  - (추가지급)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
  - (추가환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
    - \* (지자체) 행복e음 '해지후정산'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

#### 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

- ①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
  - \*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② (시군구) 해지 확정
- ③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
- ④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
  - (지급)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입금,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 정산 보고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의 지자체별 환수계좌
    - \*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
- ⑤ (시군구)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
  - (통장사업 담당자)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
  - (자활기금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 요청
    -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참조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익년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

#### (4)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 6 지급 및 환수 기준

### 1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만기지급)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본인적립금 납입, 탈수급 시
  - (근로·사업소득)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선(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적립 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단, 자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저축계좌 I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저축계좌 I 지급요건 충족
    -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
    - 지급을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
-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 탈수급 시 확인사항

-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유예기간을 두고 6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
- 탈수급자 소득조사 시,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 (임시·일용·자영업자, 통장사본 등 급여이체내역 반드시 첨부)를 3월마다(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 2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만기성공금) + 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지급
  - 유예기간(6개월) 이내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탈수급이 어렵거나 가입자 요청의 경우, 일부지급 진행 가능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 만기성공금(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은 1회에 한하여 지급

## 3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만기환수)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중도환수)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중 1개 이상 발생한 경우

##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만기		• 최초 약정이율 *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중도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향후 재가입 불가	• 최초 약정이율
일부지급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 본인적립금 + 이자 + 근로 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환수	만기		• 최초 약정이율
	중도	•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안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4 해지 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해지처리 기관별 역할] 확인하여 즉시처리

### »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 Ⅰ 해지처리 시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별 역할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탈수급 확인 후 행복e음 상 지급 승인 처리</li> <li>• (만기 전 탈수급) 자격정보 변동(수급자→탈수급 변경) 시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접수 및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li>•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 계좌 확인) 안내</li> </ul>
일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 후 6개월 경과 후에도 탈수급 하지 못했을 경우(행복 e음 자격 알림 확인) 행복e음 상 일부 지급 승인 처리</li> <li>* 만기성공금 수령 후 재가입자는 환수 처리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에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 처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접수 및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li>•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 계좌 확인) 안내</li> </ul>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li> <li>•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의 환수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 승인처리 요청</li> <li>• 시군구의 환수 승인 후, 해당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 접수 및 검토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li>•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li> <li>*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자체 통보 및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하여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li> </ul>

### 5 사후관리

-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가 탈수급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은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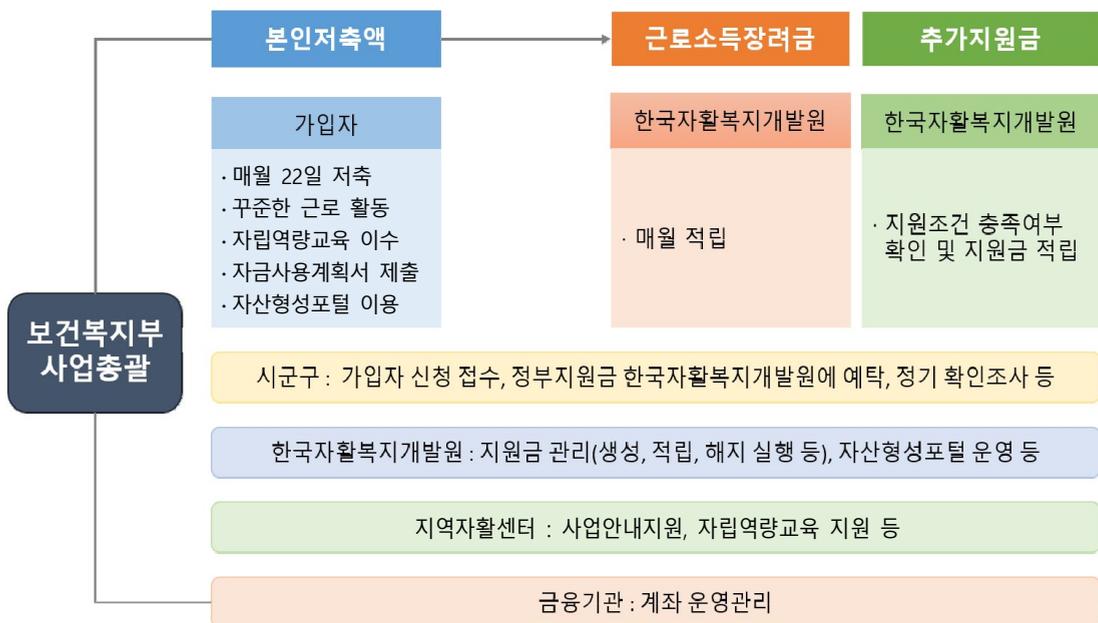
## 02

## 희망저축계좌II

## 1 추진 배경

-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 2 추진 체계



## 3 지원대상 및 내용

### 1 가입대상기준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는 사업참여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 (선정절차)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 내역 등 대조)
- (사업소득)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 2 가입 및 유지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sup>1)</sup>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sup>2)</sup>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유지기준 <sup>3)</sup>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

## 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①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4 가입 및 지원 절차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저축계좌II 자가진단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li> </ul> </li> <li>•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li> <li>② 희망저축계좌II 자가진단표</li> <li>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li> <li>④ 기타 필요서류</li> </ol> </li> </ul>
가입안내 및 접수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저축계좌II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li> </ul> </li> <li>•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li> <li>•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취·창업 등의 사유로 지급 후 희망저축계좌II를 가입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가 탈수급 후 희망키움통장 I을 지급받고 희망저축계좌II를 가입하는 경우 등</li> </ul> </li> </ul>
신청자 자격 확인	읍면동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중복가입 이력 등</li> </ul> </li> <li>•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사업이해도, 자립성공 가능성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 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li> </ul> </li> </ul>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li> <li>•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li> <li>• 7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즉시 통보하여 지연통보(계좌개설 기한 이후 참여 결정통지서 송달 등)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li> </ul> </li> </ul>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비대면(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계좌 개설 가능</li> <li>•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최소1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li> </ul>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가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li> <li>•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li> </ul>
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li> <li>• 지원금액 생성* 및 적립, 행복e음 전송(시군구에서 확인가능) * 가입자의 전출입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전출입 정보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적립기준 지자체 변경</li> <li>•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li> </ul>
확인조사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1회 이상 실시 및 자활정보시스템에 결과 전송</li> <li>•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 또는 환수 안내</li> </ul>
해지 처리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해지승인</li> <li>• (지역자활센터) 해지서류 안내 및 제출된 해지 서류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li>•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처리 및 SMS(문자)를 통해 해지 결과를 통보</li> </ul>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일정은 7장 부록 참조

## 5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 1 본인적립금

- (본인적립)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립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 » 미저축자 관리 등 유의사항

- 당월 22일 경과 후 저축 시 익월 저축액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되지 않으므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입금 마감일 전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저축 독려
- 가입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안내 또는 미저축자 관리 시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22년~'24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 가입연차는 계좌 가입월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적용

###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1)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일괄 적립
  -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승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내일키움장려금 생성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 (2)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 I」참고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추가지급/추가환수)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
  - (추가지급)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

- (추가환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

\* (지자체) 행복e음 '해지후정산' 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

### 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

- ①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
  - \*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② (시군구) 해지 확정
- ③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
- ④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
  - (지급)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입금,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 정산 보고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의 지자체별 환수계좌
  - \*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
- ⑤ (시군구)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
  - (통장사업 담당자)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
  - (자활기금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 요청
  -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참조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익년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

### (3)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 6 지급 및 환수 기준

### 1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만기지급)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가입자는 지급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환수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 \* 자립역량교육 상세 기준은 Ⅳ. 자립역량교육 안내 참조
- (중도지급)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재가입 불가)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소득초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본인 사망) 가입자 사망 후 유예기간(1개월) 내 보장가구원 내에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2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통장가입 기간동안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시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 지자체(시·군·구)는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자금사용계획서**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향후 재가입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약정이율</li> <li>* 만기 1월 후까지 적용</li> </ul>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초과 시</li> <li>•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li> <li>•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시 (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li> </ul>
환수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적립금+이자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약정이율</li> </ul>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li> <li>•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li> <li>•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li> <li>• 압류, 가압류 시</li> <li>•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li> <li>•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 시</li> <li>• 만기 전 본인 요청 시</li> <li>•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li> </ul>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3 해지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 해지 사유 발생시 기관별 역할에 따라 즉시 처리

### »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 Ⅰ 해지처리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별 역할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지급)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확인하여 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 승인 처리</li> <li>• (중도지급) 중도지급 발생 사유 확인하여 가입자(가구)에 통보하고, 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 승인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확인조사 최종 결과 확인</li> <li>- (본인 사망 시) 교육 이수 충족 확인</li> <li>-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시) 교육 이수 기준 충족 확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li>•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 계좌 확인) 안내</li> </ul>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 사유 확인</li> <li>•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의 환수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 승인처리 요청</li> <li>• 시군구의 환수 승인 후,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4] 해지 신청서 접수</li> <li>•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li>•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li> <li>*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자체 통보 및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하여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li> </ul>

## 7 확인조사

- 시군구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가입 후 3개월 내 제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 및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근로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 판정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 정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가입자 관리

- **(지급)**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경우(단,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근로소득 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 승인
- **(환수)**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며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 확인조사 절차

-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확인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 등록하고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존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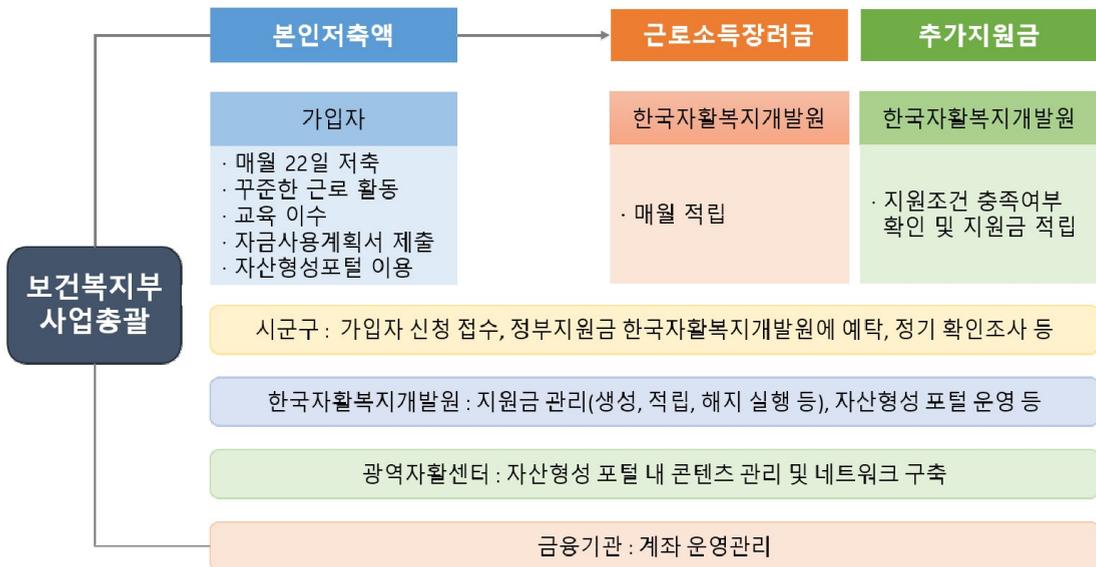
# 03

# 청년내일저축계좌

## 1 추진 배경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2 추진 체계



## 3 지원대상 및 내용

### 1 가입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 지원대상 기준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산출 기준

구분	산출 기준
가구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li> <li>산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 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li> <li>② 보장이 없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원가구인 부모, 형제, 자매 등 재산조사 미실시)</li> </ul> </li> </ul> </li> </ul>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li> <li>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일명 "세전")</li> </ul>

## 2 가입 및 유지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sup>1)</sup>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sup>2)</sup>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 <sup>3)</sup>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 (사업소득)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이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증인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 가능
- 희망저축계좌 I·II에 참여 증인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 적립중지(2년) 선택사항

#### ① 적립중지(2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 '적립중지(2년)' 기간 중 가입자 요청에 의해 적립중지 해제가능하나, 이후 적립중지 신청 불가

#### ②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적금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 본인희망으로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
- 저축 유지를 선택한 대상자는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하여야 하며,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 대상
  - ※ 누적 12개월 미납으로 해지사유 발생 후 적립중지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 불가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 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② 자립역량교육(총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최대 3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4 가입 및 지원 절차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신청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p>〈신청방법: 본인직접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li> <li>-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li> <li>•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li> <li>•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li> <li>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li> <li>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li> <li>④ 기타 필요서류 (‘참고’ 제출서류 목록 참조)</li> </ul> </li> </ul>
가입안내 및 접수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li> <li>• (온라인신청) 신청 접수</li> <li>•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li> </ul>
신청자 자격 확인	읍면동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li> <li>*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중복가입 이력 등</li> <li>•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 실시</li> <li>*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사업이해도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li> </ul>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li> <li>•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li> <li>• 7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등) 안내</li> <li>* 선정 즉시 통보하여 지연통보(계좌개설 기한 이후 참여 결정통지서 송달 등)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li> </ul>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비대면(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계좌 개설 가능</li> <li>•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최소1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li> </ul>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가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li> <li>•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li> </ul>
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li> <li>• 지원금액 생성* 및 적립, 행복e음 전송(시군구에서 확인가능) * 가입자의 전출입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전출입 정보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적립기준 지자체 변경</li> <li>•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li> </ul>
확인조사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1회 이상 실시 및 자활정보시스템에 결과 전송</li> <li>•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환수</li> </ul>
해지 처리	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li> <li>•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처리 및 SMS(문자)를 통해 해지승인을 통보</li> </ul>

## 5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 1 본인적립금

-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 시 10만원/30만원 매칭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1)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sup>7)</sup>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sup>8)</sup>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7)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 (공제금 생성)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 생성하여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 당월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월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10만원) 초과 및 본인적립액 저축 시 생성
    - \* 생계급여 미지급, 적립중지 기간, 소득하한(10만원) 이하 또는 본인적립액 미 저축시 공제금 미생성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공제금 적립)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공제금 적립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팀에서 처리(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참고)
- (공제금 해지)
  - (지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지원 처리
    -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 (환수) 해지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환수처리(자동입금)

8)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 희망저축계좌 I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절차안내 참조
- ③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 매월 통장 사업팀은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 (2)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 탈수급 기준은 p.43 “탈수급”요건 준용
  -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계좌 생성
-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 (3)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자활 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일괄 적립
  -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승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내일키움장려금 생성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 (4)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 I」참고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추가지급/추가환수)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
  - (추가지급)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
  - (추가환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
    - \* (지자체) 행복e음 '해지후정산' 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

### 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

- ①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
  - \*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② (시군구) 해지 확정
- ③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
- ④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
  - (지급)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입금,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 정산 보고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의 지자체별 환수계좌
  - \*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
- ⑤ (시군구)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
  - (통장사업 담당자)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
  - (자활기금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 요청
  -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참조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익년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

#### (5)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 6 지급 및 환수 기준

### 1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지급

- (만기지급)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 2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이 원칙이나, 시군구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중도 환수 처리 필요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자금사용계획서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Ⅱ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구 분	해지사유	지 급 액	적용 금리
지급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li> <li>* 향후 재가입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약정이율</li> <li>* 만기 1월 후까지 적용</li> </ul>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li> </ul>
환수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li> <li>* 향후 재가입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약정이율</li> </ul>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li> <li>•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li> <li>•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li> <li>• 압류, 가압류 시</li> <li>• 본인 사망</li> <li>• 본인 요청 시</li> <li>•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li> </ul>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필요

### 3 해지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 해지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서는 '해지처리 시 기관별 역할'을 참고하여 즉시 처리

#### »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①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②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 | 해지처리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별 역할			
	가입자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로 접수</li> <li>• 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 → 가입자에게 안내, 가입자 해지신청서등 검토 후 행복e음상 지급 승인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검토</li> <li>• 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희망e음으로 발송</li> <li>•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검토</li> <li>• 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공문발송</li> </ul>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 4] 해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로 접수</li> <li>• 해지 알림 문자 수신 후 본인 적금 해지(금융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li> <li>•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대상 안내</li> <li>*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처리</li> </ul>	

## 7 확인조사

- 시군구에서는 연 1회 이상 현 유지자 대상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가입 후 3개월내 제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와 함께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근로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 판정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 정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가입자 관리

- **(지급)**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경우(단,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 승인
- **(환수)**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며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 ○ 확인조사 절차

-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 등록하고 자활정보 시스템으로 전송
  -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 ③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기존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b>참고</b>	<b>필수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목록</b>
-----------	---------------------------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서류	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 직접작성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농림 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인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 하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어업소득	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⑱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⑲ 수협이 어가별 위판기록	-
		⑳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만 제출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한부모 가정: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저축지속 가능성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 04

## 희망키움통장 I

## 1 추진 배경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 필요
-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I 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 2 추진 체계



## 3 지원대상 및 기준

### 1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수급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시 가입 가능
- [소득기준특례]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
-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수급권 신청 및 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가구원수로 적용
  - 예) 4인 가구에서 1명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분리되었더라도 생계급여는 분리(3명)보장 받고, 의료급여는 함께(4명) 보장받는 경우 장려금은 4인으로 적용
- 이행급여특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15.7월 이후 신규 진입이 불가하게 되어 '17년7월 최종 종료되어 희망키움통장 I 신규 진입가구 없음. 기존 이행급여특례 상태에서 가입한 대상의 경우 기본 희망키움통장 I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지가능

## 2 가구별 지원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선 기준 및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 (소득상한)***		2,828,794	2,828,794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본인적립금 10만원	303,000	501,000	641,000	779,000	779,000	779,000	779,000
	본인적립금 5만원	153,000	253,000	324,000	394,000	394,000	394,000	394,000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까지 지원 가능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

## 3 지원개요

- (지원요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최대 3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① 매월 본인 저축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중 선택)

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③ 유예기간(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4 본인적립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 1 본인적립금

- (본인적립)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 \* 자동이체한 경우 적립 시행일 이전 통장잔고 확인 안내
  - 가입당시 월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액 선택
  - 저축액이 5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만원 적금으로 변경가능

#### 본인 저축액 변경 처리절차

- (가입자) 본인 저축액 변경 의사 표명, 희망키움통장I 적금금액변경신청서(서식 6) 제출
- (지자체) 신청서 접수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을 통해 변경요청
  - \* 공문내용 : 연도, 기수, 성명,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내 저축액 변경 등록, 금융기관에 전송(공문접수 후 7일 이내)
- (금융기관) 본인 저축액 변경처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자체에 유선으로 변경완료 통보
- (지자체) 가입자에게 변경완료 안내 (자동이체 금액 설정변경 필요안내)
- (가입자) 은행에 가서 변경된 본인 저축액으로 자동이체 금액 변경신청

###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1 5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3(장려율)
  - 2 10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 \*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 시에는 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 \*\* 백원 단위 근로소득장려금은 천원으로 적립
- (예)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 생성 → (반올림 시) 12,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 (최소금액) 1,000원
- \*\*\* 근로소득장려금 입금 시 소득,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에 따름

- (근로소득장려금) 가입가구의 총 사업·근로소득에 장려율(정부 매칭 비율)만큼 정부가 추가로 통장에 지원하는 금액
- (근로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소득이 소득하한에 미달하는 동안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장려율) 본인적립금 5만원은 0.43, 10만원은 0.85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 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13년 가입 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임
  - 다만, 1·2·3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됨
  - (예1) '24년 본인적립금 10만원 적금상품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891,378 - (891,378 \times 0.6)] \times 0.85 = 303,069\text{원}$  → (반올림 시) 303,000원
  - (예2) '24년 본인적립금 5만원 적금상품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891,378 - (891,378 \times 0.6)] \times 0.43 = 153,317\text{원}$  → (반올림 시) 153,000원
- 지자체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한 추가매칭 가능
  - \* 단, 이 경우 가입자 및 매칭금 관리는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필요

### 3 민간매칭금

- (지원금액) '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시 월 2만원 정액 매칭
- (지원방법) 본인 적립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월 지원금계좌로 매칭 적립하며, 지급 시 지원
- (적립일정) 매 적립월 말일\*

\* 상세일정은 본인저축 및 지원금 적립일정 확인

\*\* '24년 기준, 민간매칭금은 재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Ⅰ 지원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본인적립금 5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20.1 + 월 민간매칭금 2 = 월 27.1만원 ⇒ 3년간 약 976만원
	4인 가구 (월소득 200만원)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26.9 + 월 민간매칭금 2 = 월 33.9만원 ⇒ 3년간 약 1,220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32.4 + 월 민간매칭금 2 = 월 51.8만원 ⇒ 3년간 약 1,418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39.4 + 월 민간매칭금 2 = 월 46.4만원 ⇒ 3년간 약 1,670만원

〈 본인적립금 10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9.8 + 월 민간매칭금 2 = 월 51.8만원 ⇒ 3년간 약 1,865만원
	4인 가구 (월소득 20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3.1 + 월 민간매칭금 2 = 월 65.1만원 ⇒ 3년간 약 2,344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64.1 + 월 민간매칭금 2 = 월 76.1만원 ⇒ 3년간 약 2,74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77.9 + 월 민간매칭금 2 = 월 89.9만원 ⇒ 3년간 약 3,236만원

## 5 지원기준

### 1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민간매칭금 + 이자

- (지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① (근로사업활동 지속)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다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 (소득상한 초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② (적립 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 ③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 단,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
    - \*\*\* (자립지원 별도가구)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
    - \*\*\*\* 지급을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는 탈수급 인정 불가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
- 탈수급자 소득조사 시,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 (임시·일용·자영업자, 통장사본 등 급여이체내역 반드시 첨부)를 3월마다 (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하지 여부 결정

## 2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만기성공금)\* + 이자

- ①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급 ('15년 가입자부터 적용)

\* 유예기간(3개월) 이내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탈수급이 어렵거나 가입자 요청의 경우, 일부지급 진행 가능

- ②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 못한 경우

- ③ 만기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1년까지 희망키움통장 I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 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 1회에 한하여 지급.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증빙서류 불필요

## 3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제외)

- (만기환수) ①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② '15년 이후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③ 사용용도를 미증빙한 경우
- (중도환수) 통장 유지중 ①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②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③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④ 압류, 가압류, ⑤ 본인 요청 시, ⑥ 사용용도 미증빙 중 1개 이상이 발생한 경우

##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 만기 후 탈수급 시(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이자 포함) + 근로소득장려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약정이율</li> <li>* 만기 1월 후까지 적용</li> </ul>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li> <li>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li> <li>탈수급 후 6월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li> <li>탈수급 후 본인 사망</li> <li>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 요청 시(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약정이율</li> </ul>
일부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 성공금)</li> <li>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 못한 경우 (1회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증빙서류 불필요)</li> <li>-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향후 재가입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약정이율</li> </ul>
환수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li> <li>'15년 이후 가입자 중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li> <li>사용용도 미증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 매칭금은 국고환수</li> <li>* 향후 재가입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약정이율</li> </ul>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li> <li>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li> <li>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li> <li>압류, 가압류</li> <li>본인 요청 시</li> <li>사용용도 미증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li> </ul>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4 해지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확인하여 즉시처리
- 해지신청자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활센터 판단 하에 6개월 연장(1회 한정) 또는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 중 택일 가능 (단, 6개월 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실행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6개월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민간매칭금을 지급



#### 이행계획서 제출 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요령

-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자활정보시스템((B)자산형성지원)<(B)가입자관리><(B)해지관리>에서 대상자의 [이행계획서] 부분을 ‘제출대상(증빙미제출)’로 선택해 처리
-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대상은 [이행계획서]부분을 ‘제출대상(증빙제출완료)’로 변경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장려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근로소득장려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 »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 5 사후관리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받은 경우,
  -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참조)

## 6 지원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 1 (시군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및 적립

-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지원금액 생성 후 적립정보 전송(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27일)
  - \* 근로소득장려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모집 및 적립일정 참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지원금액 생성한 달의 말일까지)
  - \* 매월 업무가능일 현황에 따라 생성 종료일, 적립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 2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 신청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 일부지급(만기성공) 및 환수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구분	해지사유	해지절차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1. 통장 만기 후 3월까지 탈수급 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탈수급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이면 행복e음 상 지급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2. 통장 만기 전 탈수급 한 경우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만기일 이전 자격정보 변동(수급자→탈수급 변경)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 ※ 시군구는 만기일 이전 탈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의사 확인 전에 지급 승인 처리 하지 않도록 유의 1) 탈수급 후 만기까지 통장유지 원하는 경우 - 시군구가 지급 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지역자활센터에서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에 공문으로 지급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는 자격정보(탈수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 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는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해지신청서, [서식 3] 적립금지급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 만기전 탈수급 하여 유지하다가 소득상한 초과 전 가입자 요청으로 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여 사업 종료해야 하는 경우, 탈수급 후 본인 사망하거나 본인 사망후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한 경우 "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에 따라 처리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만기성공금)	1. 통장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만기일 이후 3월 경과하여도 탈수급 하지 못했을 경우 행복e음 상 일부지급 승인 처리 * 만기시점 지나면 3월 유예기간 내에서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 처리 가능 ** 단 만기성공금 수령한 재가입자의 경우, 환수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일부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만기성공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 15년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구 분	해지사유	해 지 절 차
환수 (본인적립금)	1.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 사업소득 미달 2.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 적금 미납 3. 본인사망 후 가구 원 환수 요청 시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4. 본인포기 5. 압류/가압류 6. 사용용도 미증빙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 승인 처리 요청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

## 05

## 희망키움통장Ⅱ

## 1 추진 배경

- 생계·의료수급가구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 2 추진 체계



## 3 지원대상 및 내용

### 1 지원대상

-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 2 가구별 유지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3,300,260	3,300,260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5,960,496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까지 지원 가능

##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 3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①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②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4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으로 720만원 (+이자) 지원
  
-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 4 지원기준

### 1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만기지급)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 ※ 자립역량 교육 상세 기준은 「자립역량교육 안내」 참조
-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본인 사망 시(가입자 사망 전,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 2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제외)

- ①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사용용도 미증빙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②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시

- ③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④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 지자체(시·군·구)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환수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통장유지, 교육(총4회) 이수 및 사례관리(총 6회)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약정이율(만기 1월 후 까지 적용)</li> </ul>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시 해지 하며, 교육 총 1~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li> <li>•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가입자 사망 전,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약정이율</li> </ul>
환수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시</li> <li>• 사용용도 미증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적립금 + 이자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약정이율</li> </ul>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 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li> <li>•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li> <li>•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li> <li>• 압류, 가압류 시</li> <li>•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li> <li>• 만기 전 본인 요청 시</li> <li>• 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li> <li>• 사용용도 미증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이율</li> </ul>

### 3 해지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 시군구는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를 독려하고, 미제출 시 해지 결정 처리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이행 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등) 제출 필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지원금 수령 후 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 »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 5 지원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및 적립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말일)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적립내역 확인 가능
  -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 2 (시군구) 적립중지

-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징구,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해제) 등록
  -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신청 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 3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와 함께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근로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 판정

○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지급(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행복e음 확인조사관리 메뉴에서 자격상태 'Y' & 확인조사결과 'N'인 대상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안내 (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행복e음에 소명자 결과 및 미제출자 최종 중지(부적격) 등록(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적격·부적격)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 등록하고 자활정보 시스템으로 전송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③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 4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확인조사결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해지 확인처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구분	해지사유	해지절차
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 장려금)	1. 3년 만기 2. 확인조사 소득기준초과 3. 본인 사망(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 충족)	① (시군구) - 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확인 -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확인 - 본인 사망한 경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충족 확인 → 행복e음 상 지급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철회) 신청서,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환수 (본인적립금)	1.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 없음 확인(소명자료 미 제출) 2.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립 6개월 연속 미납 3. 본인사망 4.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5. 사용용도 미증빙 6.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 매 9월마다 1회추가 7. 압류/가압류 8.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 승인 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

# 06

## 내일키움통장

### 1 추진 배경

-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활성화를 위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도입(10년 4월~)
  - 근로 능력 있는 빈곤층에게 탈수급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지원 방식은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희망키움통장 확대·개선 추진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도입(13년~)

### 2 추진 체계



### 3 지원 대상

- ① (자활근로 참여)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 (성실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병가, 월차 등 제외)

\* 성실참여 판단은 자활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반영

- ②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③ 자활참여기간 총 60개월 이내에서만 통장참여 가능

- '19년 6월까지 가입한 참여자의 경우 최대 3년(통장 만기일 기준)까지 인정

※ 자활근로사업단 세부 내용은 자활사업안내 I 참고

## 4 지원 내용

### 1 지원개요

- (지원요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저축 +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사업단 성실 참여 + 통장 가입기간 내 지급요건 충족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자활성실참여) 본인 저축을 적립한 월의 전월에 실제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이고,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저축한 달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모두 적립  
(예시1) 3월 본인 저축하고 2월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실제 20일 근무한 경우 3월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3월에도 해당 유형의 사업단 참여이력이 있어야 함)  
(예시2) 8일 근무하고, 그 외 병가인 경우 → 실제 근무일수가 12일 미만으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적립 불가
  - (매출발생 사업단 참여) 통장 가입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인턴·도우미형, 일부 사회서비스형\*) 참여 달에는 내일근로장려금만 지원하며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미지원
    - \* 시군구가 비수익형으로 승인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 \*\* 단, 매출미발생 사업단(비수익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참여자에게 센터 규정에 따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 적금상품)

2 매월 내일근로장려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인저축액의 1:1 매칭 지급(매월 적립 단, 20만원 저축 시 10만원 매칭 지원)  
(적립 당월 내일키움통장 가입가능 사업단 참여 및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 시)

3 내일키움장려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지급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일괄 정산·지급

4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역자활센터/사업단별 차등 지급, 최대 월 15만원)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

※ 내일키움장려금에 대한 이자 없음

## 2 본인적립금

- (본인적립) 가입당시 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 적립(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 \* 자동이체한 경우 적립 시행일 이전 통장잔고 확인 안내
  - \* 가입기간 중 월 불입액 변경 불가

## 3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적립금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5/10만원), 1:0.5(20만원) 매칭지원

- ①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 및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시 본인저축액에 1:1(5/10만원), 1:0.5(20만원) 매칭하여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본인 저축액 납입월에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포함), 인턴·도우미형) 참여(배정)이력이 있어야함
- ② 지자체는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매월 금액을 생성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내일근로장려금 적립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근로장려금 전액 적립

## 4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적립금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 ① 중앙자활자금으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활자금으로 조성)
- ② 지자체는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현월 참여이력(사업단배정)이 있는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비수익형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에 맞춰 금액을 생성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 사유 발생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일괄적립·지급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금액 생성

## 5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70%(지역자활자금) 중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배분

- 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지급
- ② 지역자활센터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 \*\* (해지 사유 발생 시)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시군구 보고 → 시군구는 해지 확정 → 지역자활센터 금액입력 및 증빙확인 확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급 실행
- ③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 매출정산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 I」 참고



### 내일키움수익금 처리 방법

» 분기별 정산 시(매분기 적립이체)

-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만기 도래로 인해 적립이체 불가 시, 해지 사유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환수계좌로 개별 이체

\* (지자체) 행복e음 '해지후정산' 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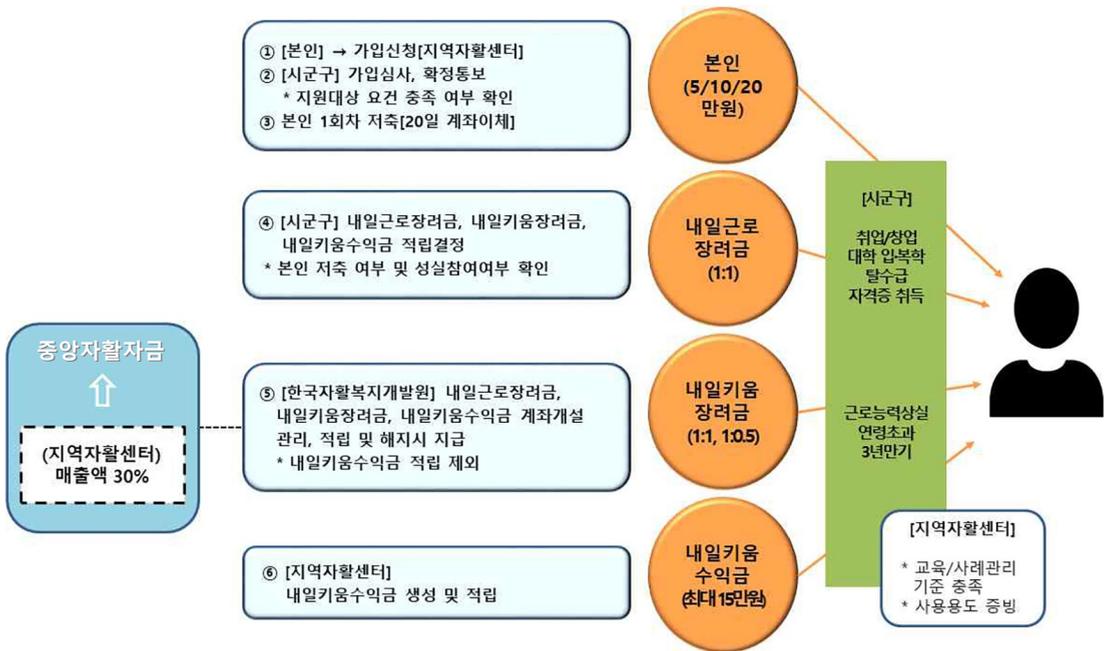
### 내일키움수익금

- 매출액 중 중앙자활자금으로 적립한 금액 이외의 70%(지역자활자금)에서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 분기별 정산 시 해당 금액의 100%를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적립
  - ☞ 최대 지급액수는 내일키움수익금 월15만원
    - ※ 수익금 정산 방법은 자활사업안내(I) 참조

6 지원 내역(시장진입형 참여자, 예시)

〈월 20만원 상품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① 최대 지원액	본인지족 20 + 월 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5 + 내일키움장려금 20 = 월 65만원 ⇒ 3년간 약 2,340만원
② 평균 지원액	본인지족 20 + 월 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3 + 내일키움장려금 20 = 월 63만원 ⇒ 3년간 약 2,268만원

내일키움통장 흐름도



## 5 지원기준

### 1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이자

- (지급)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 자활사업 종결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 가입 기간(3년) 경과 후에도 6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지급요건 충족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지급 요건

#####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직업의 종류는 불문)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경우 ('24년 기준 주 20시간 이상, 월 1,035,300원 이상 충족)

(예) 주 25시간 1,291,660원, 30시간 1,548,020원, 35시간 1,804,380원 등

- \* 사행성 산업, 유흥업소 등 사업취지에 벗어난 업종 및 단기일자리 등 제외
- \* 투잡, 쓰리잡 등 복수취업의 경우, 임금을 통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것은 제외(즉, 메인 직업 1개에 대해서만 인정)
- \* 격주근무,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월 평균 근무시간 8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자격 및 시험을 통해 입사한 경우 취업 인정
- \*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3개월 이상 유지)

- 증빙서류 예시 : 최저임금 이상 급여명세서+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취업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창업) 월 소득이 최저임금액('24년 기준 주 20시간 이상, 월 1,035,350원 이상 충족) 이상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 등록한 경우

- \* (개인창업) 해당 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재료비, 세금 등)를 제외한 금액, 본인 인건비는 수익에 포함
- \* (공동창업) 해당 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재료비, 세금 등)를 제외한 금액 ÷ 인원 수
- \* 창업 3개월 평균 월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 특수고용직 창업의 경우 소득세 납세 증명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최저임금 이상 소득과 소속 증명

## 지급 요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제 1항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범위에 해당하는자 13개 직종(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원,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출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및 기타 26개 직종
- 증빙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표 증명서 또는 매출·매입 목록 및 계산서 및 통장 내역 등 매출·매입 소득근거 서류)

## 나. 대학교 입·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시

- 증빙서류 예시 : 재학증명서

## 다. 생계·의료수급자가 탈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종료 시

- (탈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가입했으나 근로·사업 소득 증가 및 가구원 변동 등으로 자활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지급요건 충족

## 라.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자격증 등)을 취득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시

- \*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3년) 이내 및 가입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제외, 자격증 리스트는 큐넷 또는 사례관리 매뉴얼 참조
- 증빙서류 예시 : 자격증 사본

## 2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 이자

- (일부지급) 근로능력판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상실 및 연령초과로 자활에 참여할 수 없거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요건(탈수급 또는 취·창업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활사업을 종결한 경우, 내일근로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은 미지급하고 내일키움 수익금만 지급(차상위 포함\*)
  - ① (만기) 통장 만기 후 유예기간(6월) 내 지급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자활사업 종결 시,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일부지급
  - ② (근로능력상실)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으로 인한 자활근로 종료 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 충족,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일부지급
    - \* 차상위 자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등에 의한 근로 능력판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제출한 병·의원 진단서를 근거로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에서 판단하며,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지침에 준하여 적용
  - ③ (연령초과) 가입 중 만 65세 이상이 도래한 경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 충족,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일부지급
    - \* 연령초과(만 65세 이상)는 일부지급 대상이나,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로 자활근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 가능. 본인 자활 사업 미 참여 시 일부지급 처리

### 3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제외)

- ① 적립기간 중 자활근로사업에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미참여하거나 본인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 시
- ②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연2회(총6회) 미만 참여
- ③ 자활근로사업단 종료 후 일정기간(6개월) 해지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④ 3년 만기 시 6개월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해지신청을 받아 환수를 하여야 함(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유형	상세 유형	지 급 액	적용 금리
지급*	취업 및 창업	•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본인적립금만 최초 약정 이율 적용 이자 지급
	탈수급(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취득		
일부지급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 일부지급(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연령 초과(만 65세 이상)**		
	3년 만기 후 지급요건 미충족		
환수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본인적립금 해당기간별 중도해지이율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가입기간 3년 이내 지원요건 충족 또는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이내 지원 요건 충족(취·창업, 탈수급,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 취득)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연령 초과(만 65세 이상)은 일부지급 대상이나,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 희망 참여 시, 통장 유지 가능, 본인 자활사업 미 참여 시 일부지급 처리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지자체로 통보. 이 때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요청

#### 4 해지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시군구는 취·창업 등 해지사유 증빙서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접수 및 승인
  - 지역자활센터는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적립목적에 맞는 사용용도 지출증빙 영수증 접수 및 확인
  - 해지(철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바로 증빙서류 제출(취·창업 등 (일부)지급요건 충족 후)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단, 6개월 내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지급실행 시점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내일근로장려금(정부지원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내일키움장려금을 지급



#### 이행계획서 제출 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요령

-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자활정보시스템((B)자산형성지원)(B)가입자관리)(B)해지관리)에서 대상자의 [이행계획서] 부분을 '제출대상(증빙미제출)'로 선택해 처리
  -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대상은 [이행계획서]부분을 '제출대상(증빙제출완료)'로 변경
- 통장 해지자가 장려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내일근로장려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 »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 5 해지 지원금 반납

- 내일키움통장의 지원을 받은 자가 (일부)지급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 자활 근로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전액 반납, 3월 초과~6월 이내 복귀하는 경우 지원금의 50% 반납

## 6 지원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 1 (시·군·구/한국자활복지개발원/지역자활센터)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생성 및 적립

- 시군구는 행복e음에서 당월 본인적금을 입금한 참여자의 자활급여 지급 기준에 따른 전월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실근무 12일 이상) 여부 확인 생성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전송(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27일\*)
  -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여부는 내일키움장려금 금액 생성여부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자동판단 (수익형사업단만 가능하나 비수익형의 경우 수익금 지급 시 수기처리 필요)
  - \* 내일근로장려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모집 및 적립일정 참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지원금액 생성한 달의 말일까지\*)
  - \* 매월 업무가능일 현황에 따라 생성 종료일, 적립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월에는 본인적금 1회차 입금자에 대해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지원금별 적립계좌생성
  -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 지역자활센터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여부 내용을 반영하여 분기마다 발생된 금액을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에 적립
  -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 \* 내일키움납입관리, 내일키움수익금관리 등 세부내용은 자활정보시스템 매뉴얼 참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교육자료' 또는 '자활정보시스템>이용안내>자료정보>자료실' 참고)

### 2 (시·군·구) 적립중지

- ① 시군구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해제) 등록
- ②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신청 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 3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 ①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의 해지사유\* 발생 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해지유형, 내일키움수익금 해지정산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 \*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및 본인포기 등 본인의사가 반영되어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
  - \*\* 취·창업 증빙서류, 대학교 입/복학 재학증명서 등
- ②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보고받은 해지사유를 검토해 행복e음에서 해지승인 처리
- ③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급금액 변경내용이 있을 시 지자체에 추가보고
- ④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구 분	해 지 사 유	해 지 절 차
지급 (본인적립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1. 취업 2. 창업 3. 생계·의료 탈수급 후 자활근로 사업종료 4. 대학교 입/복학 5. 자격증 취득	① (지역자활센터) 지급 및 일부지급 사유 발생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내역을 첨부해 공문으로 시군구에 (일부)지급 승인 처리 요청 (탈수급, 연령초과의 경우 증명서류 제외)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지급 또는 일부지급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일부)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내일키움수익금)	1.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2. 연령 초과(만 65세 이상) 3. 만기 후 지급요건 미충족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환수 (본인적립금)	1. 본인적금 6월 연속미납 2. 본인사망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구분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환수 (본인적립금)	1. 적립중지 없이 자활근로 사업 6월 연속 미참여 2. 본인포기 3. 압류/가압류 4.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5. 사용용도 미증빙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 승인 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

#### 4 (시·군·구/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관리

##### ① 금액정산(자활근로사업단별)

\* 성실참여 = 당월 본인적립 납입+전월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1월 최대 15만원 적립 가능

##### ② 적립방법

- 매분기 정산 후 내일키움수익금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100% 이체

\* 매출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을 적립해야함(1·4·7·10월)

-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 후 이체 필요시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 계좌/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 ③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일부)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익년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

# 07

# 청년희망키움통장

## 1 추진 배경

-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 일반 근로빈곤층 보다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
-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 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 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필요
-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 2 추진 체계



## 3 지원대상 및 기준

### 1 지원대상

- ①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근로활동)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② 희망키움통장I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해야함\*

\*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I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희망키움통장I 전환가입자 처리절차 참고)

- ③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 가입,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임

\*\* 실제 지원기간은 36개월

### 2 지원개요

- (지원요건)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4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 1 근로소득공제금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sup>9)</sup>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sup>10)</sup>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 2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text{근로소득장려금} = \text{청년 총 소득} \times 45\%(\text{장려율})$$

- (근로소득) 소득은 생계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 (장려율) 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으로 청년 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마다 장려금 4.5만원 증가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724,000원\*
  - \*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1,608,113원) × 45%

9)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10)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탈수급 후 참여 가능 소득상한 기준)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2025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5,025,353원의 60%=3,015,212원)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기준 적용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지원금 적립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 ①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의 신청 청년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②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 근로소득 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 \* 지역자활센터에 해지관련 서류 제출
- ③ (가입자) 은행에서 지원금 인출

### 3 민간매칭금

- (지원금액) '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1,000원 이상 본인적립금 적립 시 최대 2만원까지 1:1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
- (지원방법) 본인 적립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월 지원금계좌로 매칭 적립하며, 지급 시 지급
- (적립일정) 매 적립월의 익월 1일~3일\*
  - \* 상세일정은 본인저축 및 지원금 적립일정 확인
  - \*\* '24년 기준, 민간매칭금은 재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역(예시)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00만원* *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5 + 월 민간매칭금 2 = 월 57만원 ⇒ 3년간 약 2,052만원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60만원 이상* * 최대 지원 금액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67.9 + 월 민간매칭금 2 = 월 79.9만원 ⇒ 3년간 약 2,876만원

#### 4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군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19.6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 군입대 적립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
-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군입대 예정자는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 지자체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 적립중지 필수사항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중지 안내 필요

## 5 지원기준

### 1 지급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생계급여 탈수급
  - (근로·사업활동 지속)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탈수급) 만기시점\*에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단, 전환가입자는 36회차 장려금 생성 종료일
    -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 \*\*\*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생계급여 연속 3개월 이상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하며,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했을 경우는 '연속 3개월 이상' 조건 없이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 통장 5년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립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되는 날부터 지급 가능하며,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 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 (만기 전 지급) 탈수급 후 만기 전 본인요청 있을 경우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지원금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 2025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5,025,353원의 60%=3,015,212원)
    -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기준 적용

#### 탈수급 후 장려금생성 및 해지를 위한 자격확인 절차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
-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상한기준 확인하여 해지 여부 결정

**2** 일부지급

- (지급액)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만기성공금) 전액\*

\* 사용용도 증빙 불필요

- (일부지급 요건)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및 만기 후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환수 처리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1년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 I 재참여 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3** 환수

- (지급액) 지급요건 미충족 시 또는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적립 기간 중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중도환수 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 없음

### Ⅰ 해지 사유 및 지급액

구분		해 지 사유	지 급 액
지급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li> <li>•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된 전액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li> <li>※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 포함 5년 만기</li> </ul> </li> </ul>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li> <li>• 만기 이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li> <li>•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li> <li>•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li> <li>•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시</li> </ul>	
일부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li> <li>•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 못한 경우</li> <li>•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 하는 경우</li> <li>※ 1회에 한하여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증빙서류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li> <li>- 향후 재가입 가능</li> <li>※ 전환 가입자의 경우, 전환가입 전 누적된 희망 I 근로소득장려금의 5%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지급</li> </ul> </li> </ul>
환수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못했을 경우</li> <li>•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 충족 시</li> <li>• 사용용도 미증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li> <li>- 향후 재가입 가능</li> </ul> </li> </ul>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발생*</li> <li>• 본인 사망 시*</li> <li>• 압류, 가압류**</li> <li>• 본인 요청 시</li> <li>• 사용용도 미증빙</li> </ul>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정보송신.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환수 요청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적립금이 있을 경우에만 본인적립금 저축에 따른 이자 지급하며, 이율 및 적용 내용은 희망 I·II, 내일키움통장과 동일

#### 4 해지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사유별 시스템 처리 절차] 확인하여 처리
- 해지신청자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활센터 판단 하에 6개월 연장(1회 한정) 또는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 중 택일 가능 (단, 6개월 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실행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6개월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근로소득장려금, 청년희망 민간매칭금을 지급
  - \*\* 단, 만기도래 이후에 이행계획서 작성하고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선지급한 근로소득공제금은 만기성공금으로 지급 (단, 기존에 만기성공금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재가입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근로소득공제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조치 실시 필요
  -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 이행계획서 제출 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요령

-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자활정보시스템((B)자산형성지원)(B)가입자관리)(B)해지관리)에서 대상자의 [이행계획서] 부분을 '제출대상(증빙미제출)'로 선택해 처리
-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대상은 [이행계획서]부분을 '제출대상(증빙제출완료)'로 변경

###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정산 절차

#### ○ 근로소득공제금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 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절차안내 참조

#### »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 6 업무처리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 1 지원금 생성 및 적립

- (가입자) 매월 근로·사업 활동
- (시군구 통장 사업팀) 매월 21일부터 3일간 행복e음을 통해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 ①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 하한(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
- 당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미생성
  -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 ②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과 별개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장려금 정보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전송
  - \* 근로소득장려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천원으로 적립  
(예)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 생성 → (반올림 시) 12,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 (최소금액) 1,000원
-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 미발생 또는 적립중지 기간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시 소득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 따름
- 적립기간 중 생계수급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은 미적립되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 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 팀에서 처리(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참고)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생성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에서 해당 지역 개인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에 입금(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익월 20일 이내 전월 말 기준으로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적립액, 총 적립액 등 정보 제공
- (금융기관) 가입자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매월 규칙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안내
  - \* 개인(대상자) 본인적금통장에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내역 인자 등 적립현황 제공 등
-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통장 사업팀은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 2 해지

-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환수 금액 등록 등 해지승인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 환수 및 일부지급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 처리하며, 처리 완료 후 SMS (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지원금 지급 시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별 입출금 계좌를 거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 지원금 환수 시
  - (근로소득공제금)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자의 경우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로 입금\*
    - \* 단 만기성공금 수령하는 일부지급 대상자의 경우,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은 가입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계좌로 입금
-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가입자가 은행 방문 시 본인적금 계좌 해지 가능하도록 처리

### 3 사후관리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근로소득공제금·민간매칭금) 받은 경우,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참조)

Ⅱ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사유별 시스템 처리 절차

구 분	해지사유	시스템 처리절차
지급 (근로소득 공제금 + 근로소득 장려금)	1. 통장 만기 후 3월까지 탈수급 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탈수급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이면 행복e음 상 지급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의 지급 승인을 확인하고, 가입자로부터 지급 관련 서류* 접수 * [서식 2] 해지 신청서,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2. 통장 만기 전 탈수급 한 경우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만기일 이전 자격정보 변동(수급자 → 탈수급 변경)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 ※ 시군구는 만기일 이전 탈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의사 확인 전에 지급 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① 탈수급 후 만기까지 통장유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시군구가 해지 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시군구에 공문으로 가입자의 통장유지의사 전달 ②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부터 지급 관련 서류 접수·검토 후, 시군구에 공문으로 지급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 자격정보(탈수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 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지급 승인을 확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 만기 전 탈수급 하여 유지하다가 소득상한 초과 전 가입자 요청으로 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여 사업 종료해야 하는 경우, 탈수급 후 본인 사망한 경우 "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에 따라 처리
	3. 이행계획서 제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완료한 경우	①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의 지급 승인 확인하고,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접수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제출대상(증빙미제출)'으로 선택하여 저장 ② (가입자) 이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지역자활센터로 제출 ③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부터 관련서류 접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제출대상 (증빙제출완료)'로 변경하고 처리 여부 'Y'로 선택하여 저장
일부지급 (근로소득 공제금)	1. 3년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2.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하여 행복e음 상 일부 지급 승인 처리 * 만기시점 지나면 3월 유예기간 내에서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 처리 가능, 단 만기성공금 수령한 재가입자의 경우, 환수 처리

구 분	해지사유	시스템 처리절차
	<p>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p> <p>3.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하고 군입대하는 경우</p>	<p>②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상 시군구의 일부지급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접수</p> <p>-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p>
환수	<p>1.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 소득 미발생</p> <p>2. 탈수급 전 본인사망</p>	<p>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에서 환수 승인 처리</p> <p>②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p> <p>-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p> <p>*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p>
	<p>3. 본인포기</p> <p>4. 압류/가압류</p> <p>5. 사용용도 미증빙</p>	<p>①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받아 공문으로 시군구에 환수 승인처리 요청</p> <p>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p> <p>-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p>
	<p>6. 이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 증빙서류 미제출</p>	<p>①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용도 증빙서류 최종 미제출하여 환수 대상자가 되었음을 안내</p> <p>- 시군구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이행계획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환수 변경처리 알림' 공문 발송</p> <p>* 공문 내용: 가입상품, 가입기수/연도, 이름, 생년월일, 해지유형, 환수금액</p> <p>-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제출대상(증빙미제출)'로 변경 선택하여 저장</p> <p>* '제출대상(증빙미제출)'로 변경하면 지급요청금액이 환수요청 금액으로 변경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시 지자체모계좌로 환수됨</p> <p>② (시군구) 장려금 계좌 해지결과 정보 확인 후 [해지 후 정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 후 정산 처리</p> <p>- 해지사유는 '(환수)(공통)사용용도 미증빙' 선택</p> <p>- 해지지원금 정보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의 최종지원금액과 환수금액은 '0원'</li> <li>* 장려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행계획서 미제출로 변경 시 환수하였으므로 시스템 상에서는 최종지원금액과 환수금액을 '0원'으로 입력</li> <li>• 공제금의 최종지원금액은 '0원', 환수금액은 해당금액 입력 후 [저장 후 전송] 버튼 클릭</li> </ul>

\* 통장 가입 시 개설한 본인적립금 계좌에 저축하였을 경우는 본인적립금과 이자 지급(은행 별도 처리)

# 08

# 청년저축계좌

## 1 추진 배경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2 추진 체계



## 3 지원대상 및 내용

### 1 지원대상

-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2 가구별 유지기준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sup>1)</sup>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 <sup>2)</sup> (소득상한)	3,517,747	3,517,747	3,517,747	4,268,441	4,975,734	5,645,364	6,291,900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까지 지원 가능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반드시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③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④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군입대 적립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

### 3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②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 \* 온라인교육으로 3회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

### 4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 1,440만원+α
-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 4 지원기준

### 1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만기지급)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지급
  - \*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 가능하며,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단, 1~3인은 3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 2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제외)

-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② 사전 적립증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 시
-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④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 시
-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⑥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 \* 지자체(시·군·구)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의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환수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 ⑦ 지급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 시
  - \* (지급 사유) 3년 만기, 소득기준 초과 등
- ⑧ 사용용도 미증빙 시

Ⅰ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통장유지</li> <li>-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취득</li> <li>- 교육 (연 1회/총 3회)</li> <li>-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완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약정이율(만기 1월 후 까지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li> <li>-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취득</li> <li>- 교육(연 1회/총 3회)</li> <li>-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완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약정이율</li> </ul>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이수 기준 미달</li> <li>-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미취득시</li> <li>- 사용용도 미증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약정이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li> <li>•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li> <li>• 교육이수 기준 미달</li> <li>•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미취득 시</li> <li>• 압류, 가압류 시</li> <li>• 본인 사망</li> <li>• 본인 요청 시</li> <li>• 사용용도 미증빙</li> <li>•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li> </ul>

### 3 해지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해지 결정 처리하고,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독려
- 해지(철회) 신청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이행 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등) 제출 필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지원금 수령 후 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 »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 5 지원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및 적립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말일)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적립내역 확인 가능
  -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 2 (시·군·구)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본인적립 만기 연장 후 변경 불가
-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군입대 예정자는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 적립중지 필수사항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실업급여 등)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중지 안내 필요

### 3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지급(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
    -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 행복e음 확인조사관리 메뉴에서 자격상태 'Y' & 확인조사결과 'N'인 대상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안내 (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 행복e음에 소명자 결과 및 미제출자 최종 중지(부적격) 등록(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적격·부적격)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등록하고 자활정보 시스템으로 전송
  -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③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4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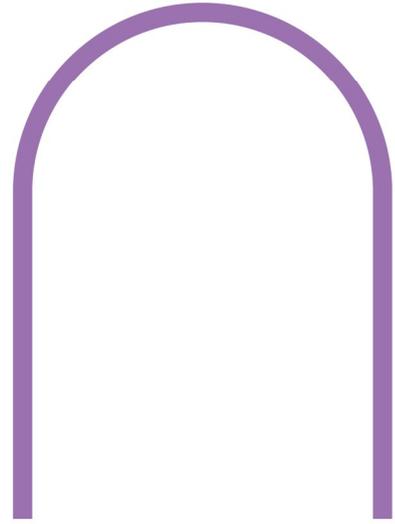
-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확인조사결과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 신청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해지 확인처리
  - \* 환수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의 입출금 계좌를 거쳐 가입자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
  - (지원금 환수 시) 지원금의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 계좌로 입금

##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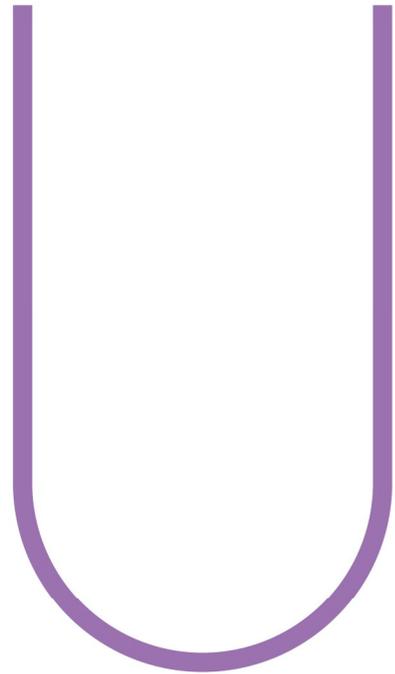
구 분	해지사유	해지절차
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1. 3년 만기 2. 확인조사 소득기준초과	<p>①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여부 확인</li> <li>-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li> <li>→ 행복e음 상 지급 승인 처리</li> </ul> <p>② (지역자활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li> <li>-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li>-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li> </ul>
환수 (본인적립금)	1.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 없음 확인(소명자료 미제출) 2.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3. 본인사망 4.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p>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p> <p>② (지역자활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li> <li>-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li>-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li> </ul>
	5. 사용용도 미증빙 6. 교육 이수 기준 미달 7.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8. 압류/가압류 9.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p>① (지역자활센터) 환수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 승인 처리 요청</p> <p>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p> <p>③ (지역자활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li> <li>-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li> <li>-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li> </ul> <p>*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p>

# IV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자립역량교육 안내



## 1 추진목적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재무교육 등 실시

## 2 자립역량교육 개요

- (의무대상) 희망저축계좌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 희망저축계좌Ⅰ 참여자는 자립역량교육 의무 없으나 희망 시 교육 이수 가능
- (주요내용) 금융 및 재무, 자산관리, 재테크 등 자산형성 관련 및 채무조정, 생애설계, 노후준비,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주거 등 청년 주요 관심 주제
- (이수시간)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 Ⅰ 유지기간별 자립역량교육 이수 시간 안내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교육 이수가 가능하나, 중도지급 사유 발생 시 위의 기준을 지급조건으로 적용

○ (이수방법)

- 희망저축계좌Ⅱ: 집합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
  -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광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이수 시 집합교육으로 인정 가능

» 희망·내일키움통장

- (의무대상)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 \*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는 자립역량교육 의무 없으나 본인 희망 시 교육 이수 가능
- (이수횟수)

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누적횟수)

가입 9개월 이내	9개월 이상 ~ 1년 6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상 ~ 2년 3개월 이내	2년 3개월 이상
총 1회	총 2회	총 3회	총 4회

청년저축계좌

(누적횟수)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총 1회	총 2회	총 3회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교육 이수가 가능하나, 중도지급 사유 발생 시 위의 기준을 지급조건으로 적용

- (이수방법) 집합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
  - 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총 4회 중 2회에 한해 동영상 교육 인정 가능
  - 청년저축계좌: 총 3회 모두 동영상 교육 인정 가능

### 3 집합교육(지자체)

- (교육대상) 희망저축계좌Ⅱ
- (교육계획)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연간 자립역량교육 계획 수립 → 시·도는 시군구의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복지부 보고
- (교육진행) 시·군·구는 연간 교육일정을 지역자활센터에 공유하고, 교육 안내, 강의실 및 강사 섭외 등 교육 관련 준비
  - \*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해 위탁 운영 가능
-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의 강사 활용
  - 자립지원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의한 통장 참여자 대상 재무관리 및 자립의지 향상 교육 이수 인정(참여자별 1회 한정)
    - \* 한국자활연수원 과정으로, 기존 “자립지원 재무상담사 2급/1급”에서 19년 자격 재등록으로 “자립지원 금융복지상담사(단일등급)”으로 변경
- 교육대상자의 집합교육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강의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연금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사전 협조
- 시·군·구는 교육 시작 전 교육일정 및 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교육생에게 충분히 안내(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거부감 최소화 및 집중도 향상)
- 시·군·구는 교육 종료 후 참석자 명단을 지역자활센터에 제공, 지역자활센터는 해당 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등록
- 집합교육 실시 직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영상 교육을 이어서 실시한 경우 두 가지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노년층 등 개별적으로 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상에게 활용)
-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도 자립역량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시·군·구 판단하에 실시 가능

자립역량교육 추진 체계

절 차	추진주체	비 고
교육계획 수립	지자체(시군구) ↓ 지자체(시도) ↓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2월까지 자립역량교육 계획 수립 및 보고</li> </ul>
교육장소, 강사섭외 및 일자 확정	지자체(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중 야간 및 주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권장</li> <li>• 지역자활센터에 일정 안내</li> </ul>
참여자에게 교육안내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일시 및 장소 안내, 참여 독려</li> </ul>
신청자 관리 (교육당일)	지자체(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상자 교육 만족도 설문지 작성</li> <li>• 설문결과는 교육실시 기관에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종료 후 직접 전달, 등기 우편 등 전달방법 무방</li> </ul> </li> </ul>
결과보고	지자체(시군구) ↓ 지자체(시도) ↓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11월 말까지 교육실시 결과보고</li> </ul>

외부 유관기관 집합교육 과정 참고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과정

- [교육내용] 재무설계,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신용관리, 부채관리, 금융사기예방 및 위험관리, 서민금융 지원제도 등
- [교육신청]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 방문교육 > 신청
  - ※ 교육을 원하는 날로부터 2주 전 신청
  - ※ 참석인원 20명 이상 신청 가능
- [교육시간] 1~2시간
- [교육비용] 무료

» 신용회복위원회 교육과정

- [교육내용] 신용관리방법, 합리적 소비와 저축, 채무자구제제도,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방법 등
- [교육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https://educredit.or.kr>) > 찾아가는 신용교육 > 교육신청
- [교육시간] 1~2시간
- [교육비용] 무료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 세부내용 별첨1 참고

## 4 동영상 교육

- (교육대상)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 (이수방법)

사업명	이수방법
희망저축계좌Ⅱ, 청년저축계좌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외 외부 동영상 교육 인정 불가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정보 자동 연동
- 자산형성포털,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 교육 이수증 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자 확인 후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등록 필수
- (교육목록)

동영상 수강방법 및 인정시간 안내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교육

- [수강방법1] (회원)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수강방법2] (비회원)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 자료실 > 교육자료 검색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회원 이수 필수
  - \* 비회원 교육 이수 시, 수강 확인증 작성 후 지역자활센터 제출 필수
- [인정시간] 각 교육과정별 명시된 교육 시간으로 인정

※ 유의사항

- 자산형성포털 회원가입 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시 자동으로 자활정보시스템 아이디 생성
- 미동의 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별도로 회원가입하여야 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https://lms.welfareinfo.or.kr/main/main.do>

»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2), [복지부] 청년저축계좌(12)
- [인정시간] 각 교육과정별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 시간으로 인정

»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https://educredit.or.kr>) > 온라인교육 > 협력기관 교육 > 희망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인정시간] 각 교육과정별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 시간으로 인정

» 소상공인지식진흥공단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소상공인지식배움터(<https://edu.sbiz.or.kr>) > 온라인교육 > 가입자가 희망하는 교육 과정 수강
- [인정시간] 각 교육과정별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 시간으로 인정

## 5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 (교육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예정자 우선)
- (주요내용) 기본 금융 이해력 도모를 위한 기초 자산 교육 강의, 가입자 개별 재무상태 분석을 기반으로 1:1 금융 맞춤 컨설팅(재정상태 분석, 개별 자산활용 계획 수립, 자산운용 설계 지원 등) 상담 제공 등
- (교육계획) 광역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금융 특화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의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분기 내 복지부 보고
- (교육진행) 광역자활센터는 연간 교육일정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공유하고, 교육 안내, 강의실 및 강사 섭외 등 교육 관련 준비
  - 교육대상자의 집합교육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 강의 개설 권고
  - 광역자활센터 업무 담당자는 교육 시작 전 교육일정 및 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교육생에게 충분히 안내(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거부감 최소화 및 집중도 향상)
  - 광역자활센터는 교육 종료 후 참석자 명단을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이수 등록·관리

## 6 기타사항

-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 사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신속히 보완(유예 기간 내 교육 이수 등)할 경우 지급 조건 충족으로 인정
  - \* 불가피한 경우, 가입자가 소속된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수료증, 참석확인증, 참석명단 등)로 확인
- 지정된 교육 외 유관기관에서 동영상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사전 협의 필요

별첨 1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 개요

#### ○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 ① 전문상담 : 종합진단지 활용을 통한 노후준비 4대 영역 진단·상담 및 실천과제 제시
  - ※ 상담 횟수 : 1회 이상
  - ※ 소요 시간 : 평균 30~40분
  - ※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
    - 종합진단지 :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측정하여 전 국민 평균과 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지
    - 노후준비 4대 영역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 ② 종합재무설계 :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재무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 상담 횟수 : 1회 이상
  - ※ 소요 시간 : 1회당 평균 60~120분
  - ※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

### □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희망 지사 또는 관할 지사로 직접 전화 신청
- (신청서 제출) 교육 후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국민연금 전문 강사에게 제출

\* 신청서는 [참고1] 참조

□ 인정시간

- 상담 1회는 희망저축계좌Ⅱ 집합교육 1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 전문상담, 종합재무설계 각 최대 1회(1시간) 인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지역자활센터로 제출
    - \* 확인서는 [참고2] 참조

□ 교육 후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교육 대상자 중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신청서 인계	국민연금 전문강사가 신청서 취합 후 해당 지사로 인계
상담일시 예약	신청서를 인수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가 신청서 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일시 예약 * 교육 미실시 지역에 상담이 일시적으로 폭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상황 확인
상담	예약 상담일에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내방 또는 비대면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 상담

□ 업무 담당자

- 전문상담 및 종합재무설계 : 40개 거점지사에 배치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
- 국민연금 전문상담사는 40개 지사에만 배치되어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으나,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함
  - 〈참고〉 전문상담사 배치(40개) 지사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서구, 고양시, 남양주시, 인천 남동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처인구, 안양시, 성남시 분당구, 부천시, 춘천시, 강릉시, 세종시, 대전 서구, 대전 대덕구, 청주시, 천안시, 충남 예산군, 광주 광산구, 전주시, 익산시, 목포시, 순천시, 제주시,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구미시, 포항시, 부산 연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참고 1

##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서

( 앞 면 )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시·군·구 까지만 기재)	연락처
신 청 사 항		
상담 희망일	희망 지사	희망 상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문상담 <input type="checkbox"/> 종합재무설계
* ‘희망 지사’는 <뒷면> 국민연금 거점지사 정보 참조 * 상담서비스 종류		
전문상담	· 노후준비 4대 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전체에 대한 진단 및 상담 · 1회 이상 개별 상담이 필요하고 평균 30~40분 정도 소요되나, 상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무료)	
종합재무 설계	· 재무상태 점검 후, 재무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제시 · 1회 이상 개별 상담이 필요하고 1회당 60분~120분 정도 소요되나, 상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 귀하		

( 뒷 면 )

###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주소 및 연락처

광역시도	지사명	주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36, 총정로사옥 9층, 13층 (총정로3가)	02-2176-9935
	동대문중앙지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 경복빌딩6층(신설동)	02-920-0536
	도봉노원지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61,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동10층(창동)	02-2112-2808
	서울남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1층~3층(논현동)	02-3416-6119
	송파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6층	02-3433-5875
	관악지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인현동) 4층	02-6934-2096
	구로금천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2층(가산동)	02-2085-1515
	강서지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3층	02-2086-7160
인천광역시	남동연수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20, 3층(구월동)	032-451-0706
경기도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3층, 4층, 6층, 9층(인계동)	031-229-4120
	고양일산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마두동)	031-920-5460
	처인기흥지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번길 9-21(역북동 748)	031-288-1307
	안양과천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20층 (호계동)	031-420-2099
	분당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야탑동)	031-778-0201
	부천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 13층 (중1동, 한화생명빌딩)	032-610-2367
	남양주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36번길 21-6(다산동) 트윈타워A동 3층, 4층	031-523-63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춘로 20, 5층, 6층 (퇴계동)	033-259-7774
	강릉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포남동)	033-640-9305

광역시도	지사명	주소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지역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50(아름동)	044-715-1860
대전광역시	서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4층(탄방동)	042-480-4907
	북대전지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4층	042-670-1065
충청북도	동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136
충청남도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청당동)	041-550-8996
	예산홍성지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37(신축사옥)	041-630-8172
광주광역시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우산동), 3층	062-958-20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3층 (서신동)	063-270-5369
	익산군산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12길 42(주현동)	063-850-0392
전라남도	목포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 6층(호남동)	061-240-3371
	순천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 (연향동)	061-729-3045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이곡동) 2층	053-589-4546
	대구수성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범어동, KB손해보험 대구빌딩)	053-750-9150
경상북도	구미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송정동)	054-450-8571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KT 8층(대도동)	054-280-0811
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연산동)	051-797-7223
	동부산지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우동)	051-610-6327
울산광역시	남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4층(신정동)	052-226-2190
경상남도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4, 1층(신월동)	055-278-9093
	김해밀양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4층(부원동)	055-320-8410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439-5)	055-760-06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3길 11-1(도남동)	064-720-4145

참고 2

###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상담대상자			
성 명	주 소 (시·군·구 까지만 기재)	연락처	
상담정보			
상담일	상담지사	상담직원 (연락처)	상담종류
. . . . .		(       )	<input type="checkbox"/> 전문상담 <input type="checkbox"/> 종합재무설계 (    회)
상담내용			
※ 상담직원 작성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 인 일 :        년        월        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 (직인)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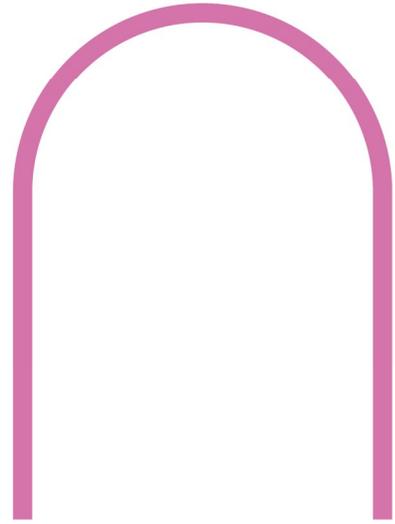
### 국민연금 노후준비 교육서비스 수행 지사

지역	해당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서울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42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9
	송파지사	02-3433-5869
인천	남동연수지사	032-451-0702
경기	경인지역본부	031-229-4114
	남양주지사	031-523-6371
강원	춘천지사	033-259-7772
대전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044-715-1860
	동청주지사	043-251-5139
광주	광주지역본부	062-958-2124
전라	전주완주지사	063-270-5366
제주	제주지사	064-720-4145
대구	대구지역본부	053-589-4556
경북	구미지사	054-450-8571
부산	부산지역본부	051-797-7212
경남	창원지사	055-278-9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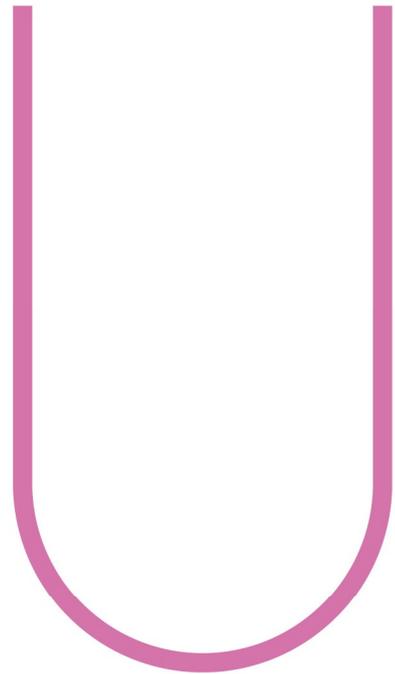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사업지원 안내



## 1 추진목적

- 통장사업 가입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복합적 자립방해요소를 지닌 근로빈곤층의 자립역량향상을 위해 고용, 복지, 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 2 사업 개요

구분	사업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 I·II,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업 가입·유지 및 해지 관리 지원</li> <li>• 통장가입자 욕구파악 등 상담 및 사업지원 후 결과 내용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li> <li>•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 변화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통장 유지 방해 요소를 발견하고 완화 또는 제거 지원</li> <li>• 광역-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 구성 및 기타 서비스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는 사례관리 연2회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사례관리, 심화사례관리 등 상담 및 자원연계 결과 내용 포함하여 자활정보시스템의 상담지 작성 완료했을 경우에만 사례관리 횟수로 인정</li> </ul> </li> <li>•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 변화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통장 유지 방해 요소를 발견하고 완화 또는 제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정보시스템에 사례관리 내용 등록 필수</li> </ul> </li> </ul>
실시기관 및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 담당자</li> <li>• 담당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자활사업, 사회복지사업, 금융복지, 직업상담, 교육 기획 및 운영 등 관련 경력자로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가 주말 및 야간 교육·상담 업무 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출퇴근 시간조정, 대체휴가, 시간외 수당 등 적용</li> <li>* 전담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활센터 내 전담 통장 사례관리사 및 실무자</li> </ul>

### 3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주요 업무

#### 1 지역자활센터

- 가입·유지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제외)
  - 가입자 안내 및 상담
    - 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 및 상담을 통해 가입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
  - 가입자 관리
    - 통장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복지, 재무서비스 연계, 본인적금 지속 납입관리\*, 통장 만기 알림, 지침 및 변동 사항 알림 등 지원
    - \* 매월 적립일(22일)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저축 독려
  - 가입자 교육관리
    - 자립역량강화 교육 진행 및 일정 안내, 운영, 이수 결과 등 관련 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교육 문의 시 광역자활센터로 연계 협조 요청
- 가입자 해지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I
    - 지급/환수 해지안내 및 관련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안내·검토,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해지정보 검토 및 확정처리
    -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로 송부 및 업무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급/환수 관련 오프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접수 및 검토 후 지자체 전달(자활정보시스템 확정처리 불요, 희망e음을 통한 서류 전달)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중 자활참여 이력있는 대상자는 내일키움수익금 환수처리 등 추가 해지 지원 필요

- 기존사업(5종)

- 지급/환수 해지안내 및 관련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안내·검토,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해지정보 검토 및 확정처리
-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로 송부 및 업무지원

○ 사업지원

- 기초 상담 및 중간점검

- (목표) 최초 가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가구정보, 통장 가입정보, 근로/재무현황, 사업지원서비스 욕구파악 등
- (주요내용) 신규 가입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중간점검지 작성 등
  - \* 가입자 요청 시 심화사례관리 연계 지원 가능

- 기타 서비스 지원

- (대상) 실직,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적자 가계 재무 구조로 통장 사업 참여를 지속하기 어려운 가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지원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실시
- (주요내용)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및 자격증 정보제공,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다양한 욕구별 복지자원 연계·지원
  -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상담 또는 기타 서비스 자원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 내 가능한 유관기관 안내
- (기타) 광역 단위 네트워크 참여 및 지역 내 가입자에게 필요한 자원 서비스 연계

서비스 추진 절차

구 분	주 요 활 동 내 용	비 고
대상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욕구 조사</li> <li>* 설문 및 면담을 통한 욕구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립역량 교육시 기타 서비스 제공 안내</li> </ul>
기초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기본정보파악</li> <li>신뢰관계형성(rapport), 서비스 지원 동의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li> </ul>
사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상담지 내용 외 상담에 필요한 부채현황 및 가계재무현황</li> <li>대상자 세부 욕구파악</li> <li>우선순위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확정 후 4주 이내 실행</li> </ul>
ISP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제공계획 수립</li> </ul>	
실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 교육, 내·외부 자원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월 서비스 제공목표의 달성 정도 파악</li> </ul>
점 검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P 목표달성률 점검에 따라 재사정 또는 계속 진행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사정</li> </ul>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P 목표 달성률 파악</li> <li>대상자 서비스 만족 수준 파악</li> <li>합의된 욕구의 해결정도 및 가입자의 문제상황 변화도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종료월 기준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조정 : 부채탕감금액</li> <li>- 재무상담 : 적자 해소금액</li> <li>- 기타 서비스 제공 내역</li> </ul> </li> <li>서비스 만족도 조사</li> </ul>
종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합의에 의한 서비스 종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서비스 지원 종결</li> </ul>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자원연계, 모니터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가입 해지일 기준</li> </ul>

## 2 광역자활센터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및 금융특화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계획 수립, 분기별 업무 처리 진행 현황 보고 (광역자활센터 → 개발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관리
    - (가입자 관리) 가입자 명단 관리, 문의 응대, 모바일 알림(미납자 관리, 만기도래자 해지안내 등) 및 계좌 유지 지원 관련 사항 지자체 협력 등
    - (해지지원)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 송부 및 업무지원, 지급/환수 관련 온라인 접수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접수 및 검토 후 지자체 전달(자활정보시스템 확정처리 불요, 제출서류 공문을 통해 시군구로 서류전달)
  - 자산형성포털 내 지역 콘텐츠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재무, 금융, 고용 등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가입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운영
  - 금융특화서비스 계획 수립 및 운영·제공
    - 기초 자산교육, 금융 상담 등 금융 특화서비스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금융특화서비스 분기별 운영 결과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보고
  - 기타 서비스 연계·제공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활용 정보제공
    - 재무, 금융, 취업, 복지서비스 등 직·간접적 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입자 교육 이수 관리
  -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이수 관리, 지자체 협조(필요 시 명단 제공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미이수자 교육 안내, 교육 이수 등록, 지급 대상자 해지 신청 전 교육 이수 현황 사전 점검 등 교육 관련 전반적인 업무 실행

## 4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사업비 지원

### 1 지역자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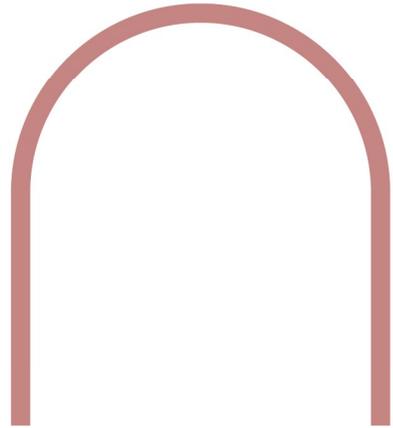
- 기존 배치된 지역자활센터와 통장사업 참여자 수가 많은 지역자활센터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배치
  -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배치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의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기관운영비 예산 내에서 지급 가능
    - \* 인력 미배치 지역자활센터에 통장 유지자 별 사업비(1년) 지원  
: 70~99명 → 2,056천원, 100~199명 → 4,626천원, 200명 이상 → 7,196천원
    - \*\* 유지자수 계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제외하되 그 중 자활참여자는 포함
- 시도·시군구는 통장사업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원활한 통장 사업지원 수행을 위해 자활기금 등 적극 활용·지원

### 2 광역자활센터

- 신규 사업 배치로 인한 광역자활센터별 해당 업무 전담을 위한 인력 1명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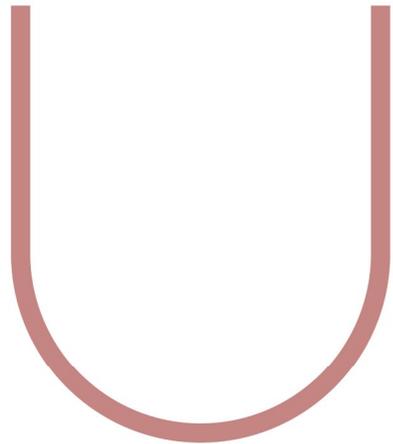


2025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부록

1. 자산형성지원사업 Q&A
2.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3.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4. 모집일정
5. 본인저축 및 적립일정



# 01

# 자산형성지원사업 Q&A

## 1 공통사항

### 1 가입관련



자격요건의 제외업종(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Q1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kssc.kostat.go.kr:8443](http://kssc.kostat.go.kr:8443))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증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 지원사업과 같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 유사 질의응답

**?** 복권판매업도 사행성 업종에 해당되는지?

**!** 해당됩니다.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르면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하위 업종에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복권 판매소



## 유사 질의응답

## ? 콜라텍은 제외업종에 포함되는지?

!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치성·향락업체는 일반 유흥 주점업(접객시설과 함께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각종 형태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업(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 주점)이 해당됩니다.

제외 업종	가능 업종
요정, 한국식 접객 주점, 료살롱, 바(접객 서비스 딸린), 서양식 접객 주점, 비어홀(접객 서비스 딸린),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클럽, 나이트 클럽 등	일반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 오락장 운영업 등



## Q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이란?



-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단, 공무원 임용, 시·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는 참여 가능합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근로빈곤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 이탈주민 등)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으로 자치단체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금 직접 지원)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 저소득층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은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나,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ex. 공립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및 상담센터 등 운영을 위한 인력채용 등) 등은 직접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중앙정부·지자체에서 다양한 직접일자리사업이 운영되므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조



### 유사 질의응답

**?** 가입자가 재취업이 어려워 잠시 공공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해지해야 하는지?

**!** 가입자가 유지기간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근로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유지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근로장학금 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교내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 대학교 자체 내 아르바이트(교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학금의 근로장학금 등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Q3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중복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4



희망저축계좌 I(또는 II)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가구분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 희망저축계좌 I(또는 II) 가입가구의 청년은 지원요건 충족 시 가구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희망저축계좌 I(또는 II) 가입 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는 청년의 명의로 가입하였을 때, 동일한 명의로 두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므로 신청·접수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시〉 가입자명 예시

\* 희망저축계좌 I : 김자산 / 청년내일저축계좌: 김자산 → 동일명의로므로 신청 불가

\* 희망저축계좌 I : 김자산 / 청년내일저축계좌: 김형성 → 동일명의 아니므로 신청 가능



## 유사 질의응답

? 희망키움통장 I(또는 II) 가입 가구의 청년이 가구 분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지?

! 희망키움통장 I(또는 II)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서 분리된 경우, 기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해당 통장 참여 중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구분리된 자녀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지급 또는 환수 처리한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Q5



과거 통장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1인 가구로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 중인데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 신청 가능한지?



-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는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나,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근로소득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단,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희망저축계좌 I 신청 가능하며, 차상위 자활근로에 참여 중인 대상자는 희망저축계좌 I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질의응답

? 가구원 중 1인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가구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인정 범위는?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원의 소득을 포함하여 해당 가구의 가입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Q6



Gateway 과정 참여자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과정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단, Gateway 과정 참여로 인해 가입한 대상자는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미지원되며 자활근로사업단 배정 후 1개월 이후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Q7



(현장접수) 주소지 시군구 외 타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신청자는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인의 구비서류를 스캔 및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전부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 참고.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업무처리 절차

##### 1. 목적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2. 주소지 관할·비관할 시·군·구의 역할

###### 가. 주소지 비관할 시·군·구의 역할

- 안내 및 상담
  - 안내 가능한 사업내용 및 수급자 선정 관련 일반적인 상담 진행 신청
  - 민원인의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 전부를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서류의 이송
  -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은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전부를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 서류의 보완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요구 가능
  -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스캔 등록 가능

###### 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역할

- 접수
  - 타 주소지에서 신청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접수처리
  -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은 이송받은 문서(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급여신청의 접수 및 보완 여부 결정
- 접수처리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흠결이 없을 시 접수 처리하며 이때 접수일자는 민원처리 산정의 기준일이 됨
  - ※ 급여지급기준일은 신청일이 되므로 혼선되지 않도록 유의
- 서류보완
  - 주소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신청서류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완이 안 될 경우는 반려 처리
  - 서류의 보완 요청 시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주소지 지자체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비관할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가능함을 안내
  - \* 신청인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보완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 후 구비 서류 제출 가능
- 보장결정
  -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보장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사업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지
  - \* 통지의 방법, 통지기일, 통지의 내용 등

## Q8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 명의로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방법은?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시 주소득자는 신청자로 가입자는 자녀로 작성하며 가입대상자로 선정 후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 단, 통장 가입기간동안 신청인과 가입자는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명의로만 신청 및 통장 개설 가능(신청인=가입자)



### 유사 질의응답

**?** 가입대상자 선정 후 적격 대상자가 압류 위험으로 인해 자녀 명의로 통장 개설할 수 있는지?

- !** 대상자가 통장 개설 이전이라면 행복e음에서 가입자 변경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구원 수 산정 시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일가구 기준을 준용합니다.

**?** 가입자가 유지 중 압류 우려가 있어 가입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자 변경 절차는?

- !** 가입자 변경은 통장 개설 전에만 가능하므로 유지기간 중 변경을 희망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통장 개설 후 명의변경은 불가하며 개설 후 변경 요청 시 해지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Q9



가입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자유적립식 적금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50만원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예시. 본인저축액에 따른 장려금 생성 여부**

- ✔ 본인저축액 9만원 입금 → 장려금 생성 기준 미달
- ✔ 본인저축액 15만원 입금 → 장려금 생성 기준 충족



**유사 질의응답**

**?** 적금을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입자가 매월 금액을 다르게 입금하고 싶은 경우 행복e음에 등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행복e음 시스템에 10만원~50만원 사이의 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등록하여도 가입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단, 만원 단위)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에 따른 자율저축 인정기간은?

**!** 가입자는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저축을 해야하며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저축이 가능합니다.

- (자율저축액)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만원 단위 저축 가능)
- (저축인정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사례1. 입금마감일(22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	사례2. 입금마감일(22일)이 휴일이라 익영업일까지 적금 가능한 경우
<p><b>예시 1-1</b> '24년 11월 6일(10만원 입금), '24년 11월 22일(30만원 입금) 시 ⇒ 11월 40만원 입금처리</p> <p><b>예시 1-2</b> '24년 11월 6일(10만원 입금), '24년 11월 23일(20만원 입금) 시 ⇒ 11월 10만원, 12월 20만원 입금처리</p>	<p><b>예시 2-1</b> '24년 9월 12일(10만원 입금), '24년 9월 25일(20만원 입금) 시 ⇒ 9월 10만원, 10월 20만원 입금처리</p> <p><b>예시 2-2</b> '24년 9월 12일(10만원 입금), '24년 9월 23일(20만원 입금) 시 ⇒ 9월 30만원 입금처리</p> <p>'24년 9월은 22일이 휴일이었으므로 익영업일인 23일까지 9월분으로 처리</p>

# Q10



##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지?



-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자산형성(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이 압류방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통장압류 진행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그간, 법원 판결에 의한 통장압류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와 같이 최저생계를 위한 지급형 금액이 아닌 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압류를 금지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지원금 계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이므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 유사 질의응답



금융기관에서 법원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가입자가 연락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압류, 가압류는 환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온 경우 가입자와 상담하여 확인 후 환수 등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 판단 하에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직권해지는 환수 사유 발생한 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문자, 전화, 우편 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안내한 이력은 상담내역 등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 2 유지 관련

### Q1



통장명의자인 자녀가 군입대를 할 경우 유지 가능한지?



- 의무복무에 따른 병사월급은 국가보조금의 성격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구 단위 통장인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은 자녀가 군입대를 하더라도 동일 가구원 내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유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 직업군인과 사회복지요원이 수급(권)자와 동일 보장 가구원이 될 수 있는지?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는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

- 그러나 직업군인과 사회복지요원은 월급을 받고 가정 등에서 출퇴근하는 등 현역군인과 다르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보장 가구원도 될 수 있고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 부양의무자로도 될 수 있음

\* 장기하사(직업군인),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등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군인이 아니라 직업군인임

구분	보장가구 포함여부	비고
현역군인	X	의료급여 특례 有
직업군인	✓	
사회복지요원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일체의 비용 국가 부담 학교 재학생	X	

## Q2



매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을 지원받으려면 본인 적금을 납입해야 하는지?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매월 본인적금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② 각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Q3



(희망저축 I, 청년내일) 자활급여특례자는 탈수급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지?



-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자활급여특례자는 탈수급으로 인정합니다.
  - 자활사업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특례 수급이 되어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인 경우 탈수급으로 간주하고 탈수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특례수급자(의료, 자활)로 가입 후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탈수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탈수급장려금 지급기준은 희망저축계좌 I 탈수급 기준에 따름(지침 p.43 준용)

## Q4



본인적립금을 미입금(미납)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 본인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유사 질의응답

**?** 가입자의 적립금이 잔액부족 사유로 25일에 입금되었는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적립 가능한지?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전월 23일~당월22일) 이내에 입금한 가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하므로 가입자가 기간 내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22일이 휴일로 가입자가 은행 방문이 불가하여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못했는데, 23일 월요일에 입금해도 되는지?

**!** 22일이 휴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입금 가능합니다.

- (예시) 2025년은 2월 2.24(월), 3월 3.24(월), 6월 6.23(월), 11월 11.24(월)까지 입금 가능

구분	본인저축 납입	구분	본인저축 납입
1월	'24.12.23(월)~'25.1.22(수)	7월	6.24(화)~7.22(화)
2월	1.23(목)~2.24(월)	8월	7.23(수)~8.22(금)
3월	2.25(화)~3.24(월)	9월	8.23(토)~9.22(월)
4월	3.25(화)~4.22(화)	10월	9.23(화)~10.22(수)
5월	4.23(수)~5.22(목)	11월	10.23(목)~11.24(월)
6월	5.23(금)~6.23(월)	12월	11.25(화)~12.22(월)

## Q5



자활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되는지?



- 자활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유사 질의응답



내일키움장려금은 사회서비스형 비수익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사회서비스형 비수익형도 내일키움장려금 지원 대상입니다.

## Q6



3월 본인 저축한 가입자가 2월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실제 20일 근무한 경우 3월에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적립되는지?



- 3월에 해당 유형의 사업단 참여 이력이 있을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이 가능하며, 3월에 해당 유형의 사업단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은 불가하며, 내일키움장려금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 (내일키움수익금)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현월 근무 시 생성

## Q7



참여 자활사업단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이 불가한지?



- 원칙적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적립되지 않으나 센터 규정에 의하여 정산방식에 따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내일키움수익금의 하한 기준은 없으며 상한액은 월 15만원입니다.



## 참고.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주는 지원금으로, 통장 가입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Gateway 과정) 참여 월에는 근로소득장려금만 지원하며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미지원합니다.

\* 단, 매출미발생 사업단(비수익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참여자에게 센터 규정에 따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Q8



자활사업단의 매출이 없다가 4분기에 발생한 매출로 인하여 수익금 발생 시 적립하지 못한 1~3분기 내일키움수익금을 소급하여 적립할 수 있는지?



- 매출정산이 완료된 전분기 내일키움수익금은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습니다.
  - 매 분기별 매출은 100% 정산하여야 합니다.(자활사업안내 I ‘매출정산’ 참조)
  - 해당 분기별 정산 절차를 통해 가입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해당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 Q9



내일키움수익금을 해당 분기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미적립분의 적립 방법은?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는 입금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해당 분기에 적립을 못하여도 분기별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 다만 내일키움수익금은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적립이체가 원칙이므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지역자활센터는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정산 시 참여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 유사 질의응답



1분기 매출 정산 후 4월에 가입자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이체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 Q10



월 중간에 가입자가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유형이 변경된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어느 사업단에서 지급하는지?



- 내일키움수익금은 가입자가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월 중간에 자활근로사업단 유형이 변경될 경우 12일 이상 참여한 사업단에서 수익금을 적립합니다.
  - 다만 유형 변경이 이루어진 해당 월의 총 근무 일수가 12일 이상이나 각각의 사업단만 보았을 때 12일이 안되는 경우(ex. A사업단 8일 → B사업단 6일), 근무 일수가 더 많은 사업단(ex. A사업단)에서 수익금을 적립하고,
  - 만약 각각의 사업단의 참여일수가 동일한 경우(ex. A사업단 6일 → B사업단 6일) 변경된 사업단(ex. B사업단)에서 적립합니다.



## 유사 질의응답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1월 내 A자활근로사업단에서 5일 근무하고, B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0일 근무한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어느 사업단에서 지급하는지?

! B자활근로사업단에서 내일키움수익금을 지급합니다.

### 3 적립중지

#### Q1



가입자가 적립중지 신청 시 업무처리 절차는?



- 자자체는 가입자가 적립중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및 가입자 정보 확인 후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하여야 적립중지가 설정됩니다.
  - 적립중지를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으면 중지기간이 설정되지 않으며,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 ※ 적립중지 등록 시 개인정보(동명이인, 생년월일) 및 요청기간 등 명확하게 확인 후 등록 및 전송 필수

#### Q2



가입자가 군입대 예정인 경우 군입대 적립중지가 가능한지?



- 군입대 적립중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다만, 희망저축계좌 I·II의 경우 가구단위 사업이므로 군입대를 한 자녀를 제외하고 보장가구원 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 Q3



일반 적립중지 신청 시 적립중지 기간만큼 통장 만기일이 연장되는지?



-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으로 만기는 연장되지 않으며, 적립중지 기간에는 본인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원금도 당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또는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됩니다.



## 유사 질의응답

? 군입대 적립중지(2년) 중인 가입자가 전역 후 적립중지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적립중지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취소 가능한지?

! 군입대 적립중지(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전역 후 적립중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가입자에게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행복e음에 적립중지취소를 등록합니다.

## Q4



가입자의 적립중지 해제일이 통장 입금 마감일 이전(~22일)일 때 본인 적금을 필수로 입금해야 하는지?



• 적립중지는 일자 기준으로 등록/해제되기 때문에 적립월 1개월 적용기준 내 적립중지가 해제되었을 경우 당월 분을 입금하여야 미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예시. 적립중지 해제 후 본인 적금 입금

☑ (적립중지 해제일) '25. 5. 13.

☑ (본인적금 입금일) '25. 5. 14. ~ '25. 5. 22.까지 5월분 입금

\* 적립월 1개월 적용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유사 질의응답

❓ 가입자의 적립중지 기간 중 지자체 집합교육이 개설되는 경우 해당 가입자가 참석하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지?

❗ 적립중지 기간도 가입자의 통장 유지기간에 포함되므로 적립중지 기간동안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단, 희망저축계좌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희망 시 교육이수가 가능하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정해진 온라인 교육 및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에 한하여 교육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4 교육

### Q1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등록된 교육 수료 방법 외에 기존 통장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외부 유관기관 교육을 이수하여도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되는지?



- 희망저축계좌 I·II는 외부 유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의 교육을 이수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교육 인정은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통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 희망저축계좌II 가입자의 경우, 외부 유관기관 교육을 이수한 내역을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받아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등록해야 합니다.



#### 유사 질의응답

**?**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지침에 명시된 유관기관 교육 외에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등록된 교육을 이수해도 인정이 되는지?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II·내일키움통장 대상자의 경우 2회에 한하여 동영상 교육이 인정되며, 집합교육 2회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Q2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자립역량교육 수강하는 방법은?



- 가입자는 [자산형성포털 > 교육관리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 내 보여지는 강의 목록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이후 수강하기를 클릭하는 경우 강의실로 이동되며, 해당 강의를 수료할 경우 이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회원가입 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연동 관련 개인정보활용 동의 필요



### 유사 질의응답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온라인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비회원으로 교육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은?

**!** [자산형성포털 > 알림 > 자료실] 내 [교육자료] 과정으로 회원가입 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교육 이수 후 수강확인증을 다운로드 및 작성한 자료를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반드시 정해진 온라인 교육만 이수가 가능하므로 자산형성포털 회원가입 후 연동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5 해지관련

### Q1



가입자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의 부분 인출 신청 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지?



- 통장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적절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0만원 제외) 출금이 가능하도록 '중도 인출(분할해지)'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해지 승인 없이 가입자가 금융기관(은행)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유사 질의응답

**?** 가입자가 중도 인출(분할해지) 중 전액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 중도 인출(분할해지)은 1회 납입분인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설정이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가입기간 10개월, 본인저축액 10만원씩 저축하여 총 100만원 일 때,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 중도인출 가능(단, 중도 인출은 참여기간 중 1회만 가능함을 유의)

### Q2



중도지급 대상이나 가입자 본인이 36개월 유지를 원한다면, 만기 시점에 지급액을 수령해도 되는지?



- 중도지급 대상이 된 시점에 전월까지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대상자별 상이)을 지급하고 해지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도지급 처리가 된 이후에도 가입자 본인 적금계좌는 36개월 간 저축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매칭되지 않습니다.

### Q3



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통장 사업별 해지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서식 4]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지급	공통서류	[서식 4]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추가서류	-	[서식 9] 자금사용계획서

**유사 질의응답**

**?** 중도환수 후 재가입 시 기존 적금 계좌도 해지해야 하는지?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1인 1계좌 사업이므로 기존 적금 계좌 해지 완료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Q4



가입자가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입출금통장을 해지한 경우, 가입자가 추후 해지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가입자가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입출금통장을 해지할 경우,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가입자 해지 실행시(지원금 지급 시) 지급오류가 발생되어 지원금 지급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입출금통장을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가 이미 입출금통장을 해지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가 지원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동일은행 또는 타은행 계좌도 가능)을 제출받아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 입력하면 해지 일정에 맞춰 제출한 대체계좌로 지급처리됩니다.
  - 업무 처리 필요 시 지자체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5



지급 대상자가 적금 해지 시 본인 적립금만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지원금은 같이 지급되지 않는지?



- 가입자는 가입 시 입출금계좌(정부지원금 적립 계좌)와 적금계좌(본인적립금 입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 따라서 최종 해지승인 후 정부지원금은 입출금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본인적립금계좌는 별도로 직접 해지 하여야 합니다.



## 유사 질의응답

**?** 가입자가 본인적립금 계좌를 해지하려면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지?

**!** 적금해지는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 뱅킹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신분증 및 통장(입출금 통장, 적금통장)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해지 신청 후 본인적립금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알 수 있는지?

**!** 해지승인 완료 시 가입자가 가입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로 해지 알림 문자가 발송 됩니다.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사전에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변경된 연락처를 알릴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 (참고) 자산형성포털에 가입한 가입자는 직접 연락처 변경 가능

## 6 예탁 및 반납

### Q1



예산 사업코드를 1개로 편성 및 집행할 경우, 예탁금도 1개의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지?



- 예산 사업코드와 예탁금 입금계좌는 별개로 희망저축계좌 I, II,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개의 단일(통합)계좌로 예탁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존사업	계좌	신규사업	계좌
희망키움 I	A 계좌	희망저축 I · 희망저축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F 계좌 (단일계좌)
희망키움 II	B 계좌		
내일키움	C 계좌		
청년희망키움	D 계좌		
청년저축	E 계좌		

## Q2



근로소득장려금 예탁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되는지?



- 지자체에서는 예탁금 입금과 더불어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탁금 입금 및 예탁 알림 공문이 확인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입 처리 후 해당 지자체 예탁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 유사 질의응답

? 예탁금 입금과 공문 발송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 예탁금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매월 말 지원금 생성 기간 전까지 예탁 필수이며, 공문도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5년 예탁금 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본인저축 납입	예탁금 접수 마감일
1월	'24.12.23(월)~'25.1.22(수)	'25.1.22(수)
2월	1.23(목)~2.24(월)	2.24(월)
3월	2.25(화)~3.24(월)	3.24(월)
4월	3.25(화)~4.22(화)	4.22(화)
5월	4.23(수)~5.22(목)	5.22(목)
6월	5.23(금)~6.23(월)	6.23(월)
7월	6.24(화)~7.22(화)	7.22(화)
8월	7.23(수)~8.22(금)	8.22(금)
9월	8.23(토)~9.22(월)	9.22(월)
10월	9.23(화)~10.22(수)	10.22(수)
11월	10.23(목)~11.24(월)	11.24(월)
12월	11.25(화)~12.22(월)	12.22(월)

### Q3



근로소득장려금 예탁이 늦어져 미적립된 경우 처리방법은?



- 예탁이 늦어져 당월 예탁금 잔액부족으로 미적립된 경우, 예탁금 수입결의 후 적립대상 지원금만큼 예탁금 잔액이 충분함을 확인한 후 익월 지원금 적립 기간에 소급 적립됩니다.



#### 예시. 예탁금 잔액에 따른 적립 기준

##### ☞ (사례1)

- (3월 예탁금 잔액) 500,000원 / (3월 적립 예정액) 3,000,000원  
→ 3월 예탁금 잔액 부족으로 인해 3월 전부 미적립

##### ☞ (사례2)

- (4월 예탁금 잔액) 6,000,000원
- (3월 적립 예정액) 3,000,000원 / (4월 적립 예정액) 4,500,000원  
→ 소급적립이 필요한 3월부터 우선 적립, 4월 예탁금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적립

##### ☞ (사례3)

- (4월 예탁금 잔액) 12,000,000원
- (3월 적립 예정액) 3,000,000원 / (4월 적립 예정액) 4,500,000원 / (5월 적립 예정액) 2,500,000원  
→ 예탁금 잔액이 충분하므로 3~5월 전부 적립

## Q4



근로소득장려금 오류예탁(과예탁, 타 계좌이체 등) 시 처리 방법은?



- 과예탁으로 예탁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탁반환요청 공문을, 타 계좌로 예탁금액을 오이체한 경우에는 타계좌로 옮기는 전환 요청 공문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반환 및 전환요청 시 업무처리 기간은 약 5일 정도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공문상 필요내용 누락 등 문제 발생 시 업무처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Q5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 I, II,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이 가능한지?



-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 I, II,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지자체별 단일예산으로 단일계좌에 보장기관별로 예탁 및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이 불가하며, 예탁된 사업비는 사업 구분없이 적립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사업별 예산을 구분하여 정산은 불가합니다.
  - 다만, 사업별 집행실적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실적 및 정산보고로 확인 가능합니다.

## Q6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집행잔액, 이자 및 환수액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반납 요청 방법은?



- 차년도 1월말까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시·도로 보고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 정산(또는 결산) 보고로 확인 가능합니다.
  -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해의 차년도 내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사업비 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진행합니다. 반납요청 시에는 공문에 반납 계좌 또는 세외수입 고지서(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불가)를 첨부합니다.

## Q7



자산형성지원 사업비 잔액 반납요청 시, 반납 요청 금액의 원단위 처리방법은?



- 원단위 절사 여부는 각 지자체의 행정사무 처리에 따라 신청합니다.
  - 다만 원단위를 절사하여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 반납 대상 금액(반납 예정액)과 반납 요청금액의 차이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 2 희망저축계좌 I

### 1 가입 관련

#### Q1



신청자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생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희망저축계좌 I 신청할 수 있는지?



• 희망저축계좌 I 은 생계, 의료급여 중 한가지 보장이라도 수급받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동일 주소지에 3인 가구 중 자녀(1인)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이 되어 남은 가구원(2인)이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가구원 수는?

- 통장 가입자는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가구원(2인)이며, 자립지원 별도가구인 자녀(1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이 중지된 상태임



•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보장을 받는 가구의 보장 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는 최대 가구원 수로 적용하므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원 수인 2인으로 산정합니다.



#### 유사 질의응답

**?** 가입자인 자녀가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경우 유지할 수 있는지?

**!** 가입자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되는 경우 탈수급으로 간주하며, 유지기준(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사업유지 또는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유지 관련

### Q1



5인 가구이며 자녀 명의로 가입하였을 때, 해당 자녀가 해외로 간 경우에도 통장 유지가 가능한지? 또 근로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희망저축계좌 I 은 가구단위 지원사업으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해외 체류 중인 자녀를 제외한 4인 가구로 관리합니다.



#### 참고. 수급자격 유지 및 변동 시

- ✔ 4인 가구에서 수급 자격 변동 유무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급 자격 유지 시) 해외로 간 자녀를 제외한 4인 가구로 관리 및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생성
  - (수급 자격 변동 시) 탈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유지 및 지급 선택 가능
    - ②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 Q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생성이 누락된 경우 소급하여 생성할 수 있는지?



-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장려금이 미생성 된 경우, 다음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간에 누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질의응답

**?** 당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금액을 생성해야 하는지?

**!** 월별 이력관리를 위해 '0원'으로 생성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당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생성 대상자이나 0원으로 생성하여 전송하였을 경우 금액 수정 또는 반려할 수 있는지?

**!** 이미 행복e음 상 근로소득장려금을 생성하여 전송완료한 경우 수정 및 반려가 불가합니다.

-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당월 미지급된 장려금을 포함하여 익월 지원금 정보 생성 기간에 소급하여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 3 해지 관련

#### Q1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지?



- 가입자 사망 시 해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탈수급 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 환수처리 하여야 하나 가구원이 6개월 내 탈수급하여 가구원이 지급 요청할 경우 적립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탈수급 시점 이후 사망 시 중도지급 처리합니다.

#### Q2



희망키움통장 I, 청년희망키움통장 일부지급으로 만기성공금을 수령받은 대상자가 희망저축계좌 I에 가입 후 3년 만기 후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일부지급이 가능한지?



- 희망키움통장 I, 청년희망키움통장 만기성공금을 수령한 경우 희망저축계좌 I 만기 성공금 재수령은 불가하여 환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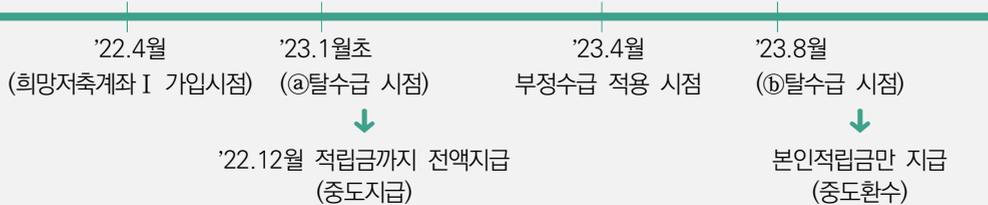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가입한 가입자가 소득은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자로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에 대하여 적합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지?



- 부정수급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 부정수급 적용 시점이 통장 가입자가 탈수급 이전인 경우 중도환수 처리하여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용 시점이 탈수급 이후인 경우 중도지급 처리하고 탈수급 시점까지 적합한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 참고. 부정수급 예시



## Q4



희망저축계좌 I 가입가구가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탈수급으로 간주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동 사업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취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가입 후 3년 이내 소득,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인해 탈수급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합니다.

## Q5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상태에서 적립을 계속하다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통장 해지를 원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 중도지급으로 처리합니다.
  -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므로 본인적립금과 누적된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 Q6



희망저축계좌 I 유지 중 탈수급하였으나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본인적립금을 12개월 누적 미납한 경우 환수 대상인지?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은 중도환수 사유에 해당하지만, 탈수급 후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도지급으로 처리하여 중도해지사유 발생 전 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 단,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미납 안내를 고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희망저축계좌 II

### 1 가입 관련

#### Q1



신청자가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희망저축계좌II 신청할 수 있는지?



- 희망저축계좌II는 생계,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받고 있는 가구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 의료수급을 받는 대상자는 희망저축계좌 I 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질의응답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데 희망저축계좌II를 신청할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희망저축계좌II를 가입한 가구의 가구원이 이혼, 이사 등으로 인하여 보장가구에서 분리된 경우, 분리된 가구원이 희망저축계좌II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저축계좌II는 가구단위 지원 사업으로 중도에 가구원이 분리되더라도 신청 당시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Q3



모(母)와 자녀(청년) 2인 가구로 자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으로 모(母)가 희망저축계좌Ⅱ를 가입하고, 자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 신청 가구의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모(母)의 소득이 없더라도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모(母)의 명의로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한 경우 자녀는 자녀의 소득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4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타 가구원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 주거급여 보장을 받고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사 질의응답



2인 가구가 주거를 달리하고 있지만 타보장에서 동일가구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을 경우, 2인 가구로 보장가구를 산정하여 지원하면 되는지?



타보장에서 2인으로 보장가구 산정하여 지원할 경우, 통장 사업에서도 동일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 Q5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무엇인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유사 질의응답



희망저축계좌Ⅱ 유지자의 확인조사의 경우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기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타보장에 의해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의 경우 타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등록된 자료(신고자료 포함)를 활용합니다.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서비스를 단독으로 신청한 신규가입자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소득 자료 보정이 가능합니다.

## 2 유지 관련

### Q1



가입자가 직접 자립역량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동일 가구 내 타 가구원이 이수해도 인정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단위 지원 사업으로 동일 가구 내 타 가구원이 이수하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 ※ 단, 보장가구원 확인 절차 필요



#### 유사 질의응답



지금 요건 중 자립역량교육 이수 조건이 있는데 가입자가 아닌 신청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도 되는지?



희망저축계좌Ⅱ는 개인 통장이 아닌 가구 단위 통장입니다. 따라서 가입자 및 신청자 외에도 보장 가구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3 해지 관련

#### Q1



3년 만기 전이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적금을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는지?



- 만기 전 중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만기 전이라도 가입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입자 본인 사망,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의 경우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만기 이전 1회에 한하여 본인 적금을 중도 인출(분할해지) 가능하니, 중도 인출을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2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 책정 시 가입자가 중도지급 또는 환수 중 선택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나, 해지 통보 받기 전 지급 필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도지급 후 희망저축계좌II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 유사 질의응답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한지?



교육 이수는 지급의 필수요건이므로 유지기간에 맞는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 '25년 완화된 기준으로 가입자 사망 후 1개월 내 보장가구원 내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 청년내일저축계좌

### 1 가입 관련



**Q1**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의 해당하는 청년 중 타보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소득재산조사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34세~만 39세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연령으로 인하여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Q2**

군입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한지?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소득세법」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인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병역특례연구원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 급여는 가구의 소득(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가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요원의 급여는 현역병에 준하는 급여로 출퇴근 여비나 중식비 등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사회복지요원이 급여 외 군복무 중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소득 반영여부	비고
현역병 급여	X	
방위산업체 급여	✓	30% 소득 공제
사회복지요원 급여	X	개인소득(30% 소득 공제) *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

### Q3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가 타가구원의 명의로 가입하여 지급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여 타가구원의 명의로 가입하였더라도 신청자가 동일함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 Q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조사 범위는?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소득재산조사 범위는 청년가구만 해당  
→ 원가구(부모·형제자매) 소득재산조사 불필요  
※ 원가구(부모, 형제·자매) 소득재산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조사)

- ① 혼인(이혼) \*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② 미혼부·모
  - ③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교표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30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청년(가구)만 보장가구 구성	좌동
30세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활동	원가구를 포함하여 보장가구 구성	<b>청년(가구)만 보장가구 구성</b>

- 단,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①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②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③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④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⑤ 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참고. 보장가구 구성 확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 타 보장의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

(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①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개별가구 보장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보장기준 적용

예)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의 청년이 생계급여 3인으로 보장받고, 의료급여는 4인으로 보장받는 경우, 보장가구는 최대 가구원 수로 적용

②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적용된 청년의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전체가구 기준을 적용

예) 3인 가구에서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로 부모만 별도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3인 가구로 적용

**※ 위 사항 외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준용**

## Q5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산출기준은?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입 기준	산출 기준
가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 이하)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li> <li>(차상위 초과)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li> <li>* 산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li> </ul>
개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 이하)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li> <li>(차상위 초과)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일명 "세전")</li> <li>※ 근로·사업소득 반영시점</li> <li>① 공적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 우선 반영이 원칙</li> <li>- 공적자료 반영 시점 차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전월소득 증빙 후 반영 가능</li> </ul> </li> <li>② 공적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월소득 반영 원칙(전월소득이 없는 경우 이변차 수 신청 불가)</li> <li>→ 임시일용근로소득의 경우 3개월 평균소득이 아닌 전월 소득으로 적용</li> <li>ex1) 4월에 첫 일용근로 100만원, 5월 신청 → 4월 소득 100만원 적용으로 신청 가능</li> <li>ex2) 2월 100만원, 3월 100만원, 4월 300만원 → 4월 소득 300만원 적용으로 신청 불가</li> <li>ex3) 5월 신규취업하여 공적자료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전월 소득 없으므로 5월 신청 불가</li> </ul> </li> </ul>

## Q6



신청자가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 확인 기준은?



-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
- 기타 사업소득은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인정하며, ④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자체 직권으로 소득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인정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Q7



B지역에서 타보장(주거급여 등) 지원 중이나 신청자는 A지역, 부모 및 타 가구원은 B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어느 지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자(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 참여가 가능하나, 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에서 신청합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을 경우 B지역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Q8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변동시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소득재산조사 기간 중 전출 등으로 인하여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가구원 변동시점에 소득재산조사를 재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요청 시점의 가구원 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결정처리 심사 시 가구원에 대한 기준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요청 시점 기준으로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접수 후 가입자의 전출이 발생할 경우 전입지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통합조사표 책정처리 및 전송을 진행하고, 전출지에서 심사를 진행, 결정처리 및 적합 여부 통보를 처리합니다.
  - 다만, 신청상태이며 소득재산조사 접수 전이라면 전출기관에서는 즉시(또는 수시) 전입기관으로 자료 이관(공문시행\*)하여 전입지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결정처리를 합니다.
  - \* 공문시행 및 관리행정동 변경 전 반드시 전입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린 후 처리 필요, 알림없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서 누락 및 기간 내 접수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신청자 상태 값에 따른 행복e음 관리행정동 변경 절차

- (접수 전) 관리행정동 변경된 기관(전입기관)에서 소득재산조사 진행
  - \* 온라인 신청 건의 경우 접수대기일 경우에만 변경 가능
- (접수 후) 접수기관에서 소득재산조사/결정처리 및 적합 여부 통보 완료 후 전출처리
  - \* 접수 후 행복e음에서 관리행정동 변경 불가

## Q9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후 동점자 발생 시 어떤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 〈최우선 적용 사항〉

- 원칙상 [참고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 기준에 따라 동점일 경우 ①기준 중위소득, ②가구특성, ③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하지만, 지자체 예산상황 및 모집인원 초과 시 연령이 도래되는 대상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가급적 사업신청가능 연령이 신청월 기준 1년 미만으로 남은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합니다.



### 예시1. 점수가 동일하나 모집인원 초과로 1명의 대상자만 선정해야 하는 경우

- 아래의 예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점수가 높은 만 31세가 선정되어야 하지만,
-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고려하여 신청 월에 만 35세(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

평가기준	만 31세	만 35세가 되는 자
총점	70점	70점
기준 중위소득	35점	30점
가구특성	0점	0점
저축지속 가능성	25점	20점
대상연령	10점	10점

※ 위 예시는 담당자의 이해를 위해 작성된 예시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에 따른 가입연령이 상이하므로 상황에 따른 판단 필요

- 최우선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동점자 처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 (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에 따라 동점일 경우 ① 기준 중위소득, ② 가구특성, ③ 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예시2. 심사항목의 점수가 전부 동일한 대상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여 30점을 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만 25세를 선정

평가기준	만 25세	만 27세
총점	60점	60점
기준 중위소득	30점	30점
가구특성	0점	0점
저축지속 가능성	25점	25점
대상연령	5점	5점
참고사항	기준 중위소득 52%	기준 중위소득 60%

※ 위 예시는 담당자의 이해를 위해 작성된 예시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에 따른 기준은 상이하므로 상황에 따른 판단 필요

## 2 유지 관련

### Q1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거급여 수급자였으나, 유지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지원할 수 있는지?



• 근로소득공제금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인 경우 지원됩니다. 가입 이후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더라도 근로소득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사 질의응답



가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으로 가입하였으나, 유지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지원금 기준으로 지급 요청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 이하 ↔ 중위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용 기준은 유지됩니다.

- 따라서 중위50% 이하의 지원금 기준으로 변경 희망 시 환수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Q2



가입 당시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근로기준 상 소득하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유지 시에도 차상위 이하(10만원 이상)/차상위 초과(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기준으로 발생하여야 유지할 수 있는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시 소득하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차상위 이하(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공제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하여야 지급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3



가입 이후 정기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타보장에 의해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의 경우 타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등록된 자료(신고자료 포함)를 활용하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단독으로 신청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의거하여 소득자료 보정이 가능합니다.

### 3 적립중지

## Q1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군입대할 경우 다음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 적립중지 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②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적금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 본인희망으로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



#### 유사 질의응답

**?** 군입대 적립중지를 희망하는 가입자가 적립중지 신청없이 입대한 경우 지자체에서 입대사실 확인(예: 입영통지서 등)되면 직권으로 소급하여 중지신청 가능한지?

**!** 직권으로 중지신청은 불가합니다. 가입자는 군입대 전 자격 확정을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로 적립중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행복e음에 적립중지 등록하여야 적립중지가 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군입대 기간동안 적립중지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군입대 도중 적립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립중지를 설정하지 못한 기간은 소급 설정이 불가하며, 신청한 일자로부터 적립중지가 적용됩니다.

**?**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가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저축하지 않고 유지만 해도 되는지?

**!**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유지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저축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적립중지 신청없이 저축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 누적 12개월 미납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

## Q2



가입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적립증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육아휴직,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발급처)를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자)**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 인터넷 발급 가능)
  - **(임신·출산 인한 퇴사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이력서(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중 택1, 임신확인서(병원) 또는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유사 질의응답

**?** 육아휴직 신청은 남성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남성 가입자도 육아휴직 적립증지 신청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적립증지는 여성, 남성 가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 시 적립증지는 여성 가입자만 적용되며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근거) 고용보험-고용보험 제도-개인혜택-육아휴직(부부동시)

## 4 해지 관련

### Q1



유지 중에 만 34세(만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 하는지?



- 신청 당시 만 34세(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Q2



확인조사와 동시에 통장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처리하는 시점에 유지기준(소득상한) 초과로 인한 부적격 대상으로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유지기준(소득상한) 초과로 확인되었을 경우 중도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며,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 단,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 유사 질의응답



소득초과로 인해 중도지급 대상자이나 소득초과 발생 전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하였을 경우 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중도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라도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초과 이전 환수 사유가 발생한 사례로 환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02

##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 1 산정 기준 개요

-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재산 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각 가구소득 기준에 부합함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하 소득공제, 재산·소득 반영 예외, 자동차 반영기준 내역 외의 사항 및 기준은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산정·처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2 소득 및 금융재산 공제

대분류	소분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산형성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금융재산공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보상금	0	0	0	0	X
소득공제	자활근로소득	0	0	0	0	X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0	0	X	X	X
	이자소득공제	0	0	0	0	X
	자활공동체참여소득	0	0	0	0	X
	자립적립금(시설수급자)	0	0	0	0	X
	(맞춤형)만24세 이하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29세	0	0	0	0	X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X	X	X	X	0
	만18세미만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X	X	X	X	0
	장애수당	0	0	0	0	X
	장애아동수당	0	0	0	0	X
	고엽체후유증 중 중증장애인수당	0	0	0	0	X
	소년소녀가정지원금	0	0	0	0	X
	아동양육비(한부모)	0	0	0	0	X
	입양아동양육수당	0	0	0	0	X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0	0	0	0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0	0	0	0	X
	장애인연금	0	0	0	0	X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0	0	0	0	X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0	0	0	0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0	0	0	0	X
	국제경기대회 입상 장애인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0	0	0	0	X
	참전명예수당(1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이하)	0	0	0	0	X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0	0	0	0	X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0	0	0	0	X	
기본형공익직불금-1ha미만	0	0	0	0	X	

※ 0 : 해당 재산·소득은 공제 대상에 포함, X : 해당 재산·소득은 공제 대상에 미포함

### 3 소득 및 재산 산정

대분류	소분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산형성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일반재산	가축	0	0	0	0	X
	종묘	0	0	0	0	X
	기계,기구류	0	0	0	0	X
	기타	0	0	0	0	X
	리스자동차 보증금(국기초, 차상위)	0	0	0	0	X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0	0	0	0	X
	무료임차료(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0	0	0	0	X
	외국인 배우자 소득	0	0	0	0	X
	국가유공자급여(간호수당)	0	0	0	0	X
	국가유공자급여(무공영예수당)	0	0	0	0	X
	참전명예수당	0	0	0	0	X
	고엽제후유의증수당	0	0	0	0	X
	장애수당	0	0	0	0	X
	장애아동수당	0	0	0	0	X
	소년소녀가정지원금	0	0	0	0	X
	아동양육비(한부모)	0	0	0	0	X
	입양아동양육수당	0	0	0	0	X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0	0	0	0	X
	지자체지원(이·통장직책수당)	0	0	0	0	X
	지자체지원(출산·고령화관련수당)	0	0	0	0	X
	지자체지원(교통수당)	0	0	0	0	X
	지자체지원(보훈대상자추가지원)	0	0	0	0	X
	지자체지원(복지대상자추가지원)	0	0	0	0	X
	직업훈련수당	0	0	0	0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0	0	0	0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0	0	0	0	X

대분류	소분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산형성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애인연금	0	0	0	0	X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0	0	0	0	X
	진폐위로금	0	0	0	0	X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0	0	0	0	X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0	0	0	0	X
	경기력향상연구연금(국민체육진흥공단)	0	0	0	0	X
	국가유공자급여(부양가족수당)	0	0	0	0	X
	국가유공자급여(중상이부가수당)	0	0	0	0	X
	대일항쟁기피해자(희생자)의료지원금	0	0	0	0	X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0	0	0	0	X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0	0	0	0	X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0	0	0	0	X
	체육유공자연금수당	0	0	0	0	X
	기본형공익직불금	0	0	0	0	X
	공적이전(기타지원)	0	0	0	0	X
	국외기타소득	0	0	0	0	X
	보장기관 확인소득	0	0	0	0	X
	구직촉진수당	X	0	0	0	X
부채	신용카드 연체금	0	0	0	0	X
	자동차 리스 및 할부 잔액	0	0	0	0	X

※ O : 해당 재산·소득·부채는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소득·부채에 포함, X : 해당 재산·소득·부채는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소득·부채에 미포함

## 4 자동차 반영 기준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 적용 자동차 기준

분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자산형성, 청년자산형성지원
승용	• <u>1,600cc 미만</u> 소형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백만원 미만	• <u>2,000cc 미만</u> 소형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u>1,600cc 미만</u> 소형자동차 중 질병·부상에 의한 거동 불편 등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u>2,000cc 미만</u> 소형자동차 중 질병·부상에 의한 거동 불편 등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u>2,500cc 미만</u> 소형자동차 중 <u>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u>	• <u>2,500cc 미만</u> 소형자동차 중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u>2,000cc 미만</u> 소형자동차 중 <u>섬·벽지수급가구,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u>	• (별도기준 없음 → 일반기준 준용) <u>2,000cc 미만</u> 소형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승합	• <u>1,000cc 미만</u> , 승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백만원 미만	• (별도기준 없음 → 일반기준 준용) <u>1,000cc 미만</u> 승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백만원 미만
	• <u>1,000cc 미만</u> 경형승합차 중 <u>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u>	• <u>1,000cc 미만</u> 경형승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소형승합차 중 <u>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u>	•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소형승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화물차	• <u>1,000cc 미만</u> 의 경형(일반형) 화물차 중 <u>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u>	• <u>1,000cc 미만</u> 의 경형(일반형) 화물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백만원 미만
	• <u>250cc 미만</u> 의 경형(초소형) 화물차 중 <u>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u>	• <u>250cc 미만</u> 의 경형(초소형) 화물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백만원 미만
	• 적재량 <u>1,000kg 미만</u> 의 소형 화물차 중 <u>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u>	• 적재량 <u>1,000kg 미만</u> 의 소형 화물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03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 1 위·수탁 개요

-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 및 만기·중도 해지금 지급 등 업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은 시도별로 계약절차를 준수하여 체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참조)

#### 예탁의 근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③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 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위·예탁 절차

- (보건복지부)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분기별 교부
- (시·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시·도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 (시·군·구)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근로소득장려금을 e호조를 이용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정계좌에 이체 및 예탁금 내역 공문으로 통보
  -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탁 시기 준수 필요
    - ※ 해당 지자체의 통장별 계좌번호 확인. 타 지자체 계좌로 잘못 입금하지 않게 주의, 예탁금은 보장기관별 지정계좌에 이체(기존사업 사업별 각 1개 계좌, 신규사업 1개 단일 계좌)

- 각 사업별 지정계좌에 입금 후 사업명, 입금액(국비, 지방비 구분하여 명시 필요) 등 기입
  - \* 신규사업은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이 불가하며, 예탁된 사업비는 사업 구분없이 적립 재원으로 사용(사업별 예산 구분 적립 불가)
- 분기별 예탁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원금 생성 기간 전까지 예탁 필수

### I 통장별 입금 주체

사업명		사업주체
신규	희망저축계좌 I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희망키움통장 I	시·군·구(안양, 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희망키움통장 II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내일키움통장	시·군·구
	청년희망키움통장	시·군·구(안양, 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청년저축계좌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입금내역 확인 및 예탁계좌 운영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 현황 지자체에 통보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결과 지자체에 통보



#### 예탁 사업 관리 철저

- 예탁금 부족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소요 예상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지자체 사전 통보
  - 지자체는 신규 모집 인원 변경 등 예탁금 부족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사전 통보하여 예탁금 조정
  - ※ 입금기간 내 예탁금 부족 시 해당 지자체 가입자에 대한 적립보류되며, 추후 예탁금 입금 시 소급 지급

### 3 오류 예약 시 등 처리요령

- 동일 시·군·구 내 타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잘못 예약하였거나, 통장 간 예산변경 필요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문으로 변경 및 정정 요청
  - \* (예약반환) 오류예약 및 과예약시 요청: 반환요청사유, 기예약금액, 반환요청금액, 반환계좌번호 (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 은행, 예금주 기입
  - \* (예산전환) 자산형성지원사업 내 예산변경 시 요청: 전환요청 사유, 기존 사업명, 변경 사업명, 변경금액 기입

### 4 환수(환수금) 시 정산 방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①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②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③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약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④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5 결산 및 반납 절차

### 1 예탁금 반납 절차

- '22년 개편 이후 통장(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자체별 단일예산으로 보장기관별로 예탁 및 정산(단일 계좌)
  - 예탁계좌, 반납계좌 별도 운용(행복e음 연계 잔액 조회 가능)
  - 보장기관(지자체)별 반납계좌에서 과년도 환수금 등 반납예정액을 확인하도록 함



#### 예탁계좌, 반납계좌 별도 운용

- 예탁계좌 - 당해연도 지자체 예탁금, 당해연도 환수금 입금(당해연도 잔액 확인 가능)
- 반납계좌 - 과년도 환수금, 타지자체 지원금 입금 (차년도에 집행잔액,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예정액 확인 가능)

- '22년 개편 전 통장은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현행 유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반납예정액(당해연도 잔액, 연도별 과년도 원금, 발생 이자로 구분)을 지자체(시도)에 보고
  -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배포
- (시도, 시군구(통장사업 담당자))
  - ① 공문을 통해 반납예정액 확인
  - ② 회계부서를 통해 고지서 발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요청 공문발송
    - \* 반납계좌 또는 세외수입고지서 첨부(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
    - \* 예산반납 시 반납예정액과 반납 요청액의 차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입으로 처리
    - \* 보조금 정산 완료 후 지자체는 반납예정액에 대해 다음연도 3월 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 요청
  - ③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반납 받은 국고보조금을 정산보고 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 2 내일키움수익금 반납 절차

- '24. 7. 1.부터 내일키움수익금 환수 발생 시 지자체별 지정계좌(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로 자동 입금 및 정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다음연도에 반납예정액(환수금, 이자)을 지자체(시도)에 보고
  -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배포
- (시도, 시군구(통장사업 및 자활기금 담당자))
  - ① 공문을 통해 정산액 확인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요청 공문 발송
    - \* 다음연도 3월 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 요청
    - \*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반납계좌 또는 세외수입고지서 첨부(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
    - \* 반납시 반납예정액과 반납요청액의 차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입으로 처리
  - ② 반납금액은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처리

## 예탁 및 정산 절차 예시

- (예시) 총사업비 10,000(국비 80%, 도비 18%, 시비 2%)

주체	수행업무	예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8,000(국비)	
시·도	국비+시·도비 교부	8,000(국비)+1,800(도비)	
시·군·구	국비+시·도비+시·군·구비 교부	8,000(국비)+1,800(도비)+200(시비)	
개발원	사업수행	10,000(예탁수입) 8,000(적립)	
	사업의 실적 보고 (기한: 다음연도 1월 말)	당해연도	2,000(집행잔액) 200(이자수입)
		과년도	2,000(환수금)
		차년도	4,200(반납금액)
시·도	시·군·구 배포		
시·군·구	반납요청		
개발원	반납	4,200(반납금액) : 시 반납	
시·군·구	시·군·구비 세입처리 및 국비 반납	84(시비) : 세입처리, 4,116(국·도비) : 도 반납	
시·도	국비 반납	756(도비) : 세입처리, 3,360(국비) : 복지부 반납	
보건복지부	국비 세입처리	3,360(국비) : 세입처리	

\* 예시참고, 보장기관별 비율에 따라 처리

# 04

## 모집일정

### 1 희망저축계좌 I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등록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금 생성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 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금융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1차(3월)	3.4(화) ~3.14(금)	3.4(화) ~3.18(화)	3.4(화) ~3.20(목)	3.4(화) ~3.24(일)	3.25(화)	3.26(수) ~3.27(목)	3.28(금) ~3.31(일)
2차(6월)	6.2(월) ~6.13(금)	6.2(월) ~6.17(화)	6.2(월) ~6.18(수)	6.2(월) ~6.23(일)	6.24(화)	6.25(수) ~6.26(목)	6.27(금) ~6.30(일)
3차(9월)	9.1(월) ~9.12(금)	9.1(월) ~9.16(화)	9.1(월) ~9.18(목)	9.1(월) ~9.22(일)	9.23(화) ~9.24(수)	9.25(목) ~9.26(금)	9.29(일) ~9.30(화)
4차(11월)	11.3(월) ~11.14(금)	11.3(월) ~11.18(화)	11.3(월) ~11.20(목)	11.3(월) ~11.24(일)	11.25(화)	11.26(수) ~11.27(목)	11.28(금) ~12.1(일)

## 2 희망저축계좌 II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 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처리 및 전승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 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금융기관)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1차(4월)	4.1(화) ~4.22(화)	4.1(화) ~4.25(금)	4.1(화) ~5.30(금)	6.2(월) ~6.13(금)	6.2(월) ~6.23(월)	6.24(화) ~6.25(수)	6.26(목) ~6.30(월)
2차(7월)	7.1(화) ~7.22(화)	7.1(화) ~7.25(금)	7.1(화) ~8.29(금)	9.1(월) ~9.12(금)	9.1(월) ~9.22(월)	9.23(화) ~9.24(수)	9.25(목) ~9.30(화)
3차(10월)	10.1(수) ~10.24(금)	10.1(수) ~10.29(수)	10.1(수) ~11.28(금)	12.1(월) ~12.12(금)	12.1(월) ~12.22(월)	12.23(화)	12.24(수) ~12.26(금)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수	신규모집	신청정보 확인·접수/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 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처리 및 전승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공 제금 생성 및 적립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 읍면동 (복지로/ 행복e음)	읍면동/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금융기관)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1차(5월)	5.2(금) ~5.16(금)	5.2(금) ~5.30(금)	5.2(금) ~7.31(목)	8.1(금) ~8.14(목)	8.1(금) ~8.22(금)	8.25(월) ~8.26(화)	8.27(수) ~8.29(금)	8.27(수) ~8.29(금)

# 05

## 본인저축 및 적립일정

### 1 희망저축계좌 I

구분	본인저축 납입	지원금 정보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가입자 (금융기관)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4.12.24(화)~'25.1.22(수)	1.23(목)~1.31(금)	2.3(월)~2.5(수)
2월	1.23(목)~2.24(월)	2.25(화)~2.27(목)	2.28(금)~3.5(수)
3월	2.25(화)~3.24(월)	3.26(수)~3.27(목)	3.28(금)~3.31(월)
4월	3.25(화)~4.22(화)	4.23(수)~4.25(금)	4.28(월)~4.30(수)
5월	4.23(수)~5.22(목)	5.23(금)~5.27(화)	5.28(수)~5.30(금)
6월	5.23(금)~6.23(월)	6.25(수)~6.26(목)	6.27(금)~6.30(월)
7월	6.24(화)~7.22(화)	7.23(수)~7.28(월)	7.29(화)~7.31(목)
8월	7.23(수)~8.22(금)	8.25(월)~8.27(수)	8.28(목)~8.29(금)
9월	8.23(토)~9.22(월)	9.25(목)~9.26(금)	9.29(월)~9.30(화)
10월	9.23(화)~10.22(수)	10.23(목)~10.28(화)	10.29(수)~10.31(금)
11월	10.23(목)~11.24(월)	11.26(수)~11.27(목)	11.28(금)~12.1(월)
12월	11.25(화)~12.22(월)	12.23(화)~12.24(수)	12.26(금)~12.29(월)

## 2 희망저축계좌 II

구분	본인저축 납입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가입자 (금융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4.12.24(화)~'25.1.22(수)	1.23(목)~1.31(금)
2월	1.23(목)~2.24(월)	2.25(화)~2.28(금)
3월	2.25(화)~3.24(월)	3.25(화)~3.31(월)
4월	3.25(화)~4.22(화)	4.23(수)~4.30(수)
5월	4.23(수)~5.22(목)	5.23(금)~5.30(금)
6월	5.23(금)~6.23(월)	6.26(목)~6.30(월)
7월	6.24(화)~7.22(화)	7.23(수)~7.31(목)
8월	7.23(수)~8.22(금)	8.25(월)~8.29(금)
9월	8.23(토)~9.22(월)	9.25(목)~9.30(화)
10월	9.23(화)~10.22(수)	10.23(목)~10.31(금)
11월	10.23(목)~11.24(월)	11.25(화)~11.28(금)
12월	11.25(화)~12.22(월)	12.24(수)~12.26(금)

### 3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본인저축 납입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가입자 (금융기관)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4.12.24(화)~'25.1.22(수)	1.23(목)~1.31(금)	1.23(목)~1.31(금)
2월	1.23(목)~2.24(월)	2.25(화)~2.28(금)	2.25(화)~2.28(금)
3월	2.25(화)~3.24(월)	3.25(화)~3.31(월)	3.25(화)~3.31(월)
4월	3.25(화)~4.22(화)	4.23(수)~4.30(수)	4.23(수)~4.30(수)
5월	4.23(수)~5.22(목)	5.23(금)~5.30(금)	5.23(금)~5.30(금)
6월	5.23(금)~6.23(월)	6.24(화)~6.30(월)	6.24(화)~6.30(월)
7월	6.24(화)~7.22(화)	7.23(수)~7.31(목)	7.23(수)~7.31(목)
8월	7.23(수)~8.22(금)	8.27(수)~8.29(금)	8.27(수)~8.29(금)
9월	8.23(토)~9.22(월)	9.23(화)~9.30(화)	9.23(화)~9.30(화)
10월	9.23(화)~10.22(수)	10.23(목)~10.31(금)	10.23(목)~10.31(금)
11월	10.23(목)~11.24(월)	11.25(화)~11.28(금)	11.25(화)~11.28(금)
12월	11.25(화)~12.22(월)	12.23(화)~12.29(월)	12.23(화)~12.29(월)

## 4 청년희망키움통장

※ 본인저축납입일: 매월 1일~말일

차수	근로소득공제금 및 장려금 정보 생성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민간매칭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시군구 통장담당자 (행복e음)	시군구 생계급여담당자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1.23(목)~1.27(월)	1.31(금)~2.3(월)		2.4(화)~2.5(수)
2월	2.25(화)~2.27(목)	2.28(금)~3.4(화)		3.5(수)~3.6(목)
3월	3.25(화)~3.26(수)	3.27(수)~3.28(목)		4.1(화)~4.2(수)
4월	4.23(수)~4.25(금)	4.28(월)~4.30(수)		5.1(목)~5.7(수)
5월	5.23(금)~5.27(화)	5.28(수)~5.30(금)		6.2(월)~6.4(수)
6월	6.24(화)~6.26(목)	6.27(금)~6.30(월)		7.1(화)~7.3(목)
7월	7.23(수)~7.28(월)	7.29(화)~7.31(목)		8.1(금)~8.5(화)
8월	8.25(월)~8.27(수)	8.28(목)~8.29(금)		9.1(월)~9.3(수)
9월	9.23(화)~9.25(목)	9.26(금)~9.30(화)		10.1(수)~10.10(금)
10월	10.23(목)~10.27(월)	10.28(화)~10.31(금)		11.3(월)~11.5(수)
11월	11.25(화)~11.27(목)	11.28(금)~12.2(화)		12.3(수)~12.5(금)
12월	12.23(화)~12.26(금)	12.29(월)~12.30(화)		'25.1.2(금)~1.4(월)

## 5 청년저축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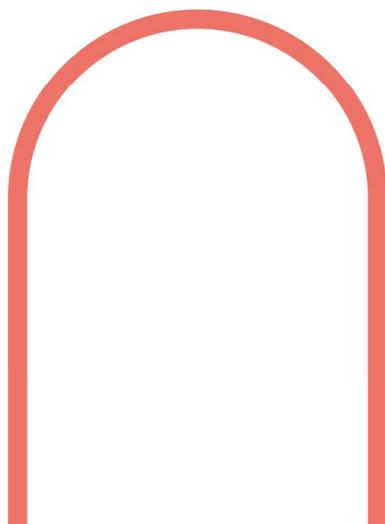
구분	본인저축 납입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가입자 (금융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4.12.24(화)~'25.1.22(수)	1.23(목)~1.31(금)
2월	1.23(목)~2.24(월)	2.25(화)~2.28(금)
3월	2.25(화)~3.24(월)	3.25(화)~3.31(월)
4월	3.25(화)~4.22(화)	4.23(수)~4.30(수)
5월	4.23(수)~5.22(목)	5.23(금)~5.30(금)
6월	5.23(금)~6.23(월)	6.24(화)~6.30(월)
7월	6.24(화)~7.22(화)	7.23(수)~7.31(목)
8월	7.23(수)~8.22(금)	8.25(월)~8.29(금)
9월	8.23(토)~9.22(월)	9.23(화)~9.30(화)
10월	9.23(화)~10.22(수)	10.23(목)~10.31(금)
11월	10.23(목)~11.24(월)	11.25(화)~11.28(금)
12월	11.25(화)~12.22(월)	12.23(화)~12.29(월)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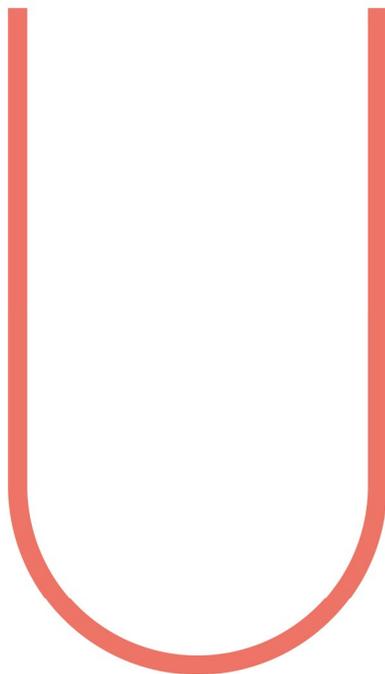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M  
I  
N  
I  
S  
T  
R  
Y  
O  
F  
H  
E  
A  
L  
T  
H  
&  
W  
E  
L  
F  
A  
R  
E



# 공통서식



# 01

##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서식

서식 1

[1 면]

가입연도		<b>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b>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처리기간 - 희망저축 30일 - 희망저축II 70일 - 청년내일 100일
가입기수						
가입은행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 I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 II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input type="checkbox"/>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비상연락	신청자와의 관계		성 명	연 락 처	
	직 업		근무지명		근무기간	~
	근무형태	<input type="checkbox"/> 상용직(정규직) <input type="checkbox"/>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아르바이트(사건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b>※ 신청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기재(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와 가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b>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적립 및 기타정보	<b>1. 월별 저축액</b>					
	약정금액	최소 100,000 원 (* 100,000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생생) ※ 저축기간 <input type="checkbox"/> 최대 36개월 <input type="checkbox"/> 최대 60개월(가입 후 군입대 예정인 경우)				
	<b>2. 저축액 사용계획</b>					
	저축목적	<input type="checkbox"/> 주택구입·임대 <input type="checkbox"/>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input type="checkbox"/> 창업·운영자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개인자산형성(ISA·일반적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돌봄비용 <input type="checkbox"/> 결혼자금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자립·차탈				
향후 자립·자활계획	(자유롭게 기술)					
<b>※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미작성 및 중복참여 여부 확인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b>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input type="checkbox"/> 참 여(사업명: _____, 참여기간: _____, 수령액: _____)					
희망·내일기움통장 등 재가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최 초 <input type="checkbox"/> 재가입(사업명: _____, 참여기간: _____)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가입 이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정해진 프로그램(교육 이수 등)에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내 입금하여야 당월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2 면]

## 저축 동의서

### □ 동의

- 나는 희망저축 I · 희망저축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 매월 저축할 것입니다.
- 지원금은 목적 달성 시에만 지급(지원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 조건

#### 1. 공통

- 가입 첫 월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적금을 납입하여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각 사업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됩니다.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월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2. 사업별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 I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매월 본인 적금 적립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하한 기준 이상 발생
- 환수사유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일부지급 후 재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 지원금 지급 요건	3년 이내 <u>탈수급</u> ※ 생계, 의료급여 모두 벗어나야 하며, 본인 포기로 인해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 탈수급으로 인정하지 않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저축 동의서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통장)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매월 본인 적금 적립
- 환수사유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시, 용도증빙 못한 경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금 지급 요건	3년 이내 통장 유지 + <u>교육(총 10시간) 이수</u> + <u>자금사용계획서 제출</u>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매월 본인 적금 적립
- 환수사유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압류·가압류, 3년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본인 사망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등
- 지원금 지급 요건	3년 이내 통장 유지 + <u>교육(총 10시간) 이수</u> + <u>자금사용계획서 제출</u>

계약

나는 위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 의 합 니 다.**

년      월      일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성명)      (서명/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참고 1

## 〈『희망저축계좌 I』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희망저축계좌 I』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	---	---	---	--------	------

구분	점검 내용	선택체크														
필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입니까?	예, 아니오														
	2. 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기준 <b>이하</b> 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구구분</th> <th>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원/월)</th> </tr> </thead> <tbody> <tr> <td>1인 가구</td> <td>956,805</td> </tr> <tr> <td>2인 가구</td> <td>1,573,063</td> </tr> <tr> <td>3인 가구</td> <td>2,010,141</td> </tr> <tr> <td>4인 가구</td> <td>2,439,109</td> </tr> <tr> <td>5인 가구</td> <td>2,843,277</td> </tr> <tr> <td>6인 가구</td> <td>3,225,922</td> </tr> </tbody> </table>	가구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원/월)	1인 가구	956,805	2인 가구	1,573,063	3인 가구	2,010,141	4인 가구	2,439,109	5인 가구	2,843,277	6인 가구	3,225,922	예, 아니오
	가구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원/월)														
	1인 가구	956,805														
	2인 가구	1,573,063														
	3인 가구	2,010,141														
	4인 가구	2,439,109														
5인 가구	2,843,277															
6인 가구	3,225,922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 소득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3. 귀하는 현재 <b>근로활동****</b> 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4. 귀하가 <b>금융채무불이행 상태</b> 이면 <b>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b> 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예'로 선택	예, 아니오															
5. 귀하는 가입기간 중 생계·의료수급(수급권 포기 제외)에 벗어난 경우만 <b>정부 지원금 지급</b> 이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6. <b>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b> 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	------	------	--

참고 2

###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	---	---	---	--------	------

구분	점검 내용	선택체크														
필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생계·의료 비수급 가구입니까?	예, 아니오														
	2. 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기준 <b>이하</b> 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구구분</th> <th>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원/월)</th> </tr> </thead> <tbody> <tr> <td>1인 가구</td> <td>1,196,007</td> </tr> <tr> <td>2인 가구</td> <td>1,966,329</td> </tr> <tr> <td>3인 가구</td> <td>2,512,677</td> </tr> <tr> <td>4인 가구</td> <td>3,048,887</td> </tr> <tr> <td>5인 가구</td> <td>3,554,096</td> </tr> <tr> <td>6인 가구</td> <td>4,032,403</td> </tr> </tbody> </table>	가구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원/월)	1인 가구	1,196,007	2인 가구	1,966,329	3인 가구	2,512,677	4인 가구	3,048,887	5인 가구	3,554,096	6인 가구	4,032,403	예, 아니오
	가구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원/월)														
	1인 가구	1,196,007														
	2인 가구	1,966,329														
	3인 가구	2,512,677														
	4인 가구	3,048,887														
5인 가구	3,554,096															
6인 가구	4,032,403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 소득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3. 귀하는 현재 <b>근로활동</b> ***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4. 귀하가 <b>금융채무불이행 상태</b> 이면 <b>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b> 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예'로 선택	예, 아니오															
5. 귀하는 가입기간 중 <b>교육 총 10시간</b> 이수, <b>자금사용계획서 제출</b> 하여야 <b>정부 지원금 지급</b>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6. <b>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b> 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	------	------	--

참고 3

〈 희망저축계좌 II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 〉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	--	--------	------	--------------	---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li> </ul> </li> <li>○ (근로상황)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소득은 인정)</li> </ul> </li> <li>○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적격처리</li> </ul> </li> <li>○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적격</li> <li><input type="checkbox"/> 부적격</li> </ul>									
심사 기준	가구특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정 또는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li> </ul>	<table border="1"> <tr><td>구분</td><td>배점</td></tr> <tr><td>충족</td><td>20</td></tr> <tr><td>미충족</td><td>0</td></tr> </table>	구분	배점	충족	20	미충족	0			
	구분	배점										
	충족	20										
	미충족	0										
	취업지원 참여 여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창업 했는지 여부</li> </ul>	<table border="1"> <tr><td>참여</td><td>5</td></tr> <tr><td>미참여</td><td>0</td></tr> </table>	참여	5	미참여	0					
	참여	5										
	미참여	0										
가구여건 등 지원 필요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수급자 경험 여부</li> <li>■ 자가, 전·월세 등 자산 상황 등</li> </ul>	<table border="1"> <tr><td>높음</td><td>15</td></tr> <tr><td>보통</td><td>10</td></tr> <tr><td>낮음</td><td>5</td></tr> </table>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사업지침에 대한 동의 정도, 재무 등 교육 참여 의지 등</li> </ul>	<table border="1"> <tr><td>우수</td><td>10</td></tr> <tr><td>양호</td><td>8</td></tr> <tr><td>보통</td><td>6</td></tr> <tr><td>미흡</td><td>4</td></tr> <tr><td>불량</td><td>2</td></tr> </table>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저축지속 가능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액 총당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이해도</li> <li>■ 활동능력 및 고용상태: 나이, 건강, 현 고용상태의 지속성 등</li> <li>■ 가구 총 소득* 중 신청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li> <li>*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한함</li> </ul>	<table border="1"> <tr><td>우수</td><td>20</td></tr> <tr><td>양호</td><td>16</td></tr> <tr><td>보통</td><td>12</td></tr> <tr><td>미흡</td><td>8</td></tr> <tr><td>불량</td><td>4</td></tr> </table>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자립성공 가능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실현가능성</li> <li>* 저축목적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li> </ul>	<table border="1"> <tr><td>우수</td><td>20</td></tr> <tr><td>양호</td><td>16</td></tr> <tr><td>보통</td><td>12</td></tr> <tr><td>미흡</td><td>8</td></tr> <tr><td>불량</td><td>4</td></tr> </table>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기타평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자 의견</li> </ul>											
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결과 총점 7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li> <li>* 동점일 경우 ①가구특성, ②저축지속가능성, ③자립성공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li> </ul>										

참고 4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	---	---	---	--------	------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연령 및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합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가구구분</th> <th colspan="4">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원/월)</th> </tr> <tr> <th colspan="2">50% 이하</th> <th colspan="2">100% 이하</th> </tr> <tr> <th>소득인정액</th> <th>연령</th> <th>소득인정액</th> <th>연령</th> </tr> </thead> <tbody> <tr> <td>1인 가구</td> <td>1,196,007</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만 15~39세</td> <td>2,392,013</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만 19세~34세</td> </tr> <tr> <td>2인 가구</td> <td>1,966,329</td> <td>3,932,658</td> </tr> <tr> <td>3인 가구</td> <td>2,512,677</td> <td>5,025,353</td> </tr> <tr> <td>4인 가구</td> <td>3,048,887</td> <td>6,097,773</td> </tr> <tr> <td>5인 가구</td> <td>3,554,096</td> <td>7,108,192</td> </tr> <tr> <td>6인 가구</td> <td>4,032,403</td> <td>8,064,805</td> </tr> </tbody> </table>	가구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원/월)				50% 이하		100% 이하		소득인정액	연령	소득인정액	연령	1인 가구	1,196,007	만 15~39세	2,392,013	만 19세~34세	2인 가구	1,966,329	3,932,658	3인 가구	2,512,677	5,025,353	4인 가구	3,048,887	6,097,773	5인 가구	3,554,096	7,108,192	6인 가구	4,032,403	8,064,805	예, 아니오
	가구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원/월)																																
			50% 이하		100% 이하																														
		소득인정액	연령	소득인정액	연령																														
	1인 가구	1,196,007	만 15~39세	2,392,013	만 19세~34세																														
2인 가구	1,966,329	3,932,658																																	
3인 가구	2,512,677	5,025,353																																	
4인 가구	3,048,887	6,097,773																																	
5인 가구	3,554,096	7,108,192																																	
6인 가구	4,032,403	8,064,805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2. 귀하는 현재 <b>근로활동</b> <sup>*,**</sup> 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3. 귀하가 <b>금융채무불이행 상태</b> 이면 <b>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b> 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귀하는 가입기간 중 <b>교육 총 10시간</b> 을 이수하고 <b>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정부 지원금 지급</b>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5. <b>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b> 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	-----------	------	------	--

참고 5

〈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 〉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	--	--------	------	--------------	---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소득기준) ① (차상위이하) 기준중위소득50% 이하 가구원 중 월 소득 10만원 이상이면서 15세~ 39세인 자 ② (차상위초과)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원 중 월 소득 50만원 초과~ <b>250만원</b> 이하이면서 19세~ 34세인 자  ○ (근로상황)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소득은 인정)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적격 <input type="checkbox"/> 부적격
		기준 중위소득 (40점)	50% 초과 ~ 100% 이하(C)  30점	40% 초과 ~ 50% 이하(B)  35점	40% 이하(A)  40점
심사 기준	가구특성 (20점)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20) <input type="checkbox"/> 비해당(0)
		0점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② 한부모가정 ③ 조손 ④ 다문화 ⑤ 북한이탈주민 ⑥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⑦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⑧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20점		
	저축지속 가능성 (30점)	■ 최근 3년간 총 경제활동 기간이			<input type="checkbox"/> A(30) <input type="checkbox"/> B(25) <input type="checkbox"/> C(20)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C)  20점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B)  25점	12개월 이상(A)  30점	
	대상연령 (10점)	만 15세 이상 ~ 만 19세 이하(C)  3점			<input type="checkbox"/> A(10) <input type="checkbox"/> B(5) <input type="checkbox"/> C(3)
		만 20세 이상 ~ 만 29세 이하(B)  5점		만 30세 이상 ~ 만 39세 이하(A)  10점	
합계	* 심사결과 총점 4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 동점일 경우 ①기준 중위소득, ②가구특성, ③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서식 4

자산형성지원사업 [ ] 해지 신청서  
[ ] 해지철회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 I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 II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해 지 유 형

- 희망저축계좌 I :  지급  일부지급(만기성공)  환수

- 희망저축계좌 II :  지급  환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급  환수

나는 \_\_\_\_\_ 사유로 희망저축 I·II·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위와 같이 해지(철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해지 신청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통장 해지할 경우 작성 필수

[용어정의]

\* 환수: 개인사정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저축액만 수령할 수 있는 해지 유형

\* 지급: 지원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인저축액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해지 유형

\* 해지철회: 개인사정 등으로 해지를 신청하였으나, 통장 유지를 희망하여 해지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해지철회로 체크하여 해지 승인이 나기 전 관할 지자체로 제출 필수이며, 이미 해지승인 처리가 된 경우 철회 신청 불가

## 서식 5

##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II / 청년내일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 I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II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성 명:

■ 생년월일:

■ 지급액 총액:

- 본인적립금:

- 지원금:

구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서식 6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구분	항목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필수	성명,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직업, 근무지명, 근무기간, 근무형태,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소득	사업참여 종료 후 10년
	선택	국적, 집 전화번호, 비상연락(관계, 성명, 연락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 종료 후 10년

※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연구 등	건강, 병력, 장애여부	사업참여 종료 후 10년

※ 위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서식 7

<b>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유지확인서</b>			
요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 외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통장유형		가입기수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용도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 신청용, 기타 등		
<p>위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가구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5px;">직인</span></p>			
<p>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현장 발급 불가, 자산형성포털(온라인) 본인 발급 원칙</p> <p>2. 현재 통장유지가구만 발급 가능(사업기간 3년)</p> <p>3. 중도환수 대상자의 경우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p>			

## 서식 8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 확인서

요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 외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통장유형		가입기수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해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지급: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input type="checkbox"/> 일부지급: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input type="checkbox"/> 환수: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해지일	년   월   일			
용도				
<p>위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p><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b>      직인</p>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현장 발급 불가, 자산형성포털(온라인) 본인 발급 원칙				

서식 9

##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성 명: ■ 생년월일:
- 지급액 총액: - 지원금:
- 본인적립금: - 사용용도 계획

구분	세부분류	금액(원)
주택 구입·임대	<input type="checkbox"/> 자가구입 <input type="checkbox"/> 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대출상환(전세자금) <input type="checkbox"/> 주택 유지 및 보수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본인·재년의 고등교육·기술훈련	<input type="checkbox"/> (자녀)학비 <input type="checkbox"/>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input type="checkbox"/> 대출 상환(학자금) <input type="checkbox"/> 각종 시험 응시료 <input type="checkbox"/> 교육·기술훈련을 위한 학원비 등 <input type="checkbox"/> 자격증 취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창업·운영자금	<input type="checkbox"/> 운영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본인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의료보장구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요양원, 재가요양 등 돌봄 비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금융자산형성	<input type="checkbox"/>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put type="checkbox"/> 적금상품 가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자녀양육·보육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결혼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밖의 자립·자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총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10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	일시간 오전	: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 일		
		주 근로시간	: 총 시간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3 서식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2)</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sup>(3)</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_\_\_\_\_년 \_\_\_\_\_월 \_\_\_\_\_일

##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제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 제6항, 「간접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인등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획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20호** 고용·임금확인서

<b>고 용 · 임 금 확 인 서</b>						
피 고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 로 시 간		일시간 오전 :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 일 주 근로시간 : 총 시간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기 본 금	월분	월분	월분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입 <input type="checkbox"/>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02

# 희망·내일 키움 통장 관련 서식

## 서식 1

##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취소·해제) 신청서

- 희망 I·II / 내일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I(생계·의료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II(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input type="checkbox"/>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input type="checkbox"/>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가구 청년)	

■ 구 분:  신청  취소  해제(철회)

■ 중 지 유 형:  일반 적립중지(최대 6개월)  
 군입대 적립중지(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만 가능)

■ 성 명:

■ 생 년 월 일:

■ 중지요청기간: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 적립분까지( 차)

■ 은행계좌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나는 \_\_\_\_\_사유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_\_\_\_\_개월간 중지(취소·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

###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 희망 I·II / 내일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I(생계·의료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II(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input type="checkbox"/>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input type="checkbox"/>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가구 청년)	

■ 성 명:

■ 생년월일:

■ 지급액 총액:

- 본인적립금:

- 지원금: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희망공제금					
민간매칭금					

■ 사용용도 증빙 금액\* :

원

내역**	설명	규모/수량/기간	금액(원)

\* 증빙금액 : 지원금의 50% 이상

\*\* 증빙내역에 대한 붙임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교육훈련비·의료비 영수증, 창업에 필요한 영수증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자활센터장 귀하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서식 4

<b>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확인서</b> - 희망 I·II / 내일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요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		가입기수		
	유형	<input type="checkbox"/> 희망 I <input type="checkbox"/> 희망 II <input type="checkbox"/> 내일 <input type="checkbox"/> 청년희망 <input type="checkbox"/> 청년저축		가입기간	~    년    월	
	구분	희망 I	희망 II	내일	청년희망	청년저축
	근로소득장려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희망공제금						
민간매칭금						
용도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용					
위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이 적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b>지역자활센터장</b>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직인                     </div>	
1. 현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탈수급 등)만 발급 가능 2. 환수 대상자의 경우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